

제1부 OECD 개요

I. OECD 개요

1. 개 관	3
2. 설립 배경 및 연혁	6
3. 주요 활동	8
4.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	10
5. 회원국의 의무	13

II. OECD 조직 및 예산

1. 조직 개요	15
2. 이사회 및 보좌기구	16
3. 위원회 및 작업반	18
4. 사무국	18
5. 예 산	24

III. 관련기구 및 포럼

1. 준독립기구	26
2. 민간자문기구	32
3. 협력 기구	33
4. OECD 포럼	35
5. OECD 센터	36

제2부 OECD 주요 활동

I. 분야별 주요 논의이슈

1. 경제성장과 안정	39
가. 논의 개요	
나. 경제정책위원회	
다. 경제검토위원회	
2. 국제무역	41
가. 논의 개요	
나. 국제무역	

다. 수출 신용	
라. 조선작업반	
마. 철강위원회	
3. 개발원조	50
가. 논의 개요	
나. 개발원조위원회(DAC)	
다. 공적개발원조(ODA)와 DAC	
라. DAC의 비회원국과의 협력	
마. 개발원조 관련 한국과 OECD와의 협력	
4. 금융·다국적기업·투자	55
가. 논의 개요	
나. 금융시장위원회	
다. 투자위원회	
라.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마. 뇌물방지작업반	
바.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사. 경쟁위원회	
5. 조세 정책 및 행정	66
가. 논의 개요	
나. 재정위원회	
다.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6. 노동사회	74
가. 논의 개요	
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다.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	
7. 공공행정, 규제개혁 및 지역개발	83
가. 논의 개요	
나. 공공행정위원회	
다. 규제정책위원회	
라. 지역발전정책위원회	
마. 지역경제고용개발협력프로그램(LEED)	
8.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91
가. 논의 개요	
나. 환경위원회	

다. 최근 작업 동향	
라. 지속가능발전	
9. 과학기술산업	102
가. 논의 개요	
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다.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라. 산업혁신위원회	
마. 관광위원회	
바. 소비자정책위원회	
10. 농수산	121
가. 논의 개요	
나. 농업위원회 논의현황	
다. 수산위원회 논의현황	
11. 교육	123
가. 논의 개요	
나. 사업 추진체제	
다. 분야별 주요 사업	
12. 통계	128
가. 논의 개요	
나. 조직	
다. 주요 논의동향	
13. 對비회원국협력	131
가. 논의 개요	
나. 비회원국과의 관계강화(Enhanced Engagement)	
다.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	
라. 글로벌 포럼	
마. 비회원국 회의 참여 제도	
14. 기타	136
가. 미래연구프로그램	
15. 수평적 논의	137
가. 녹색성장	
나. Going for Growth	
다. OECD 혁신전략	

II. OECD의 주요 규범

1. OECD의 규범	146
가. 규범의 종류 및 효력	
나. 규범의 이행방식	
2. OECD 양대자유화 규약	147
가. 규약의 성격	
나. 주요 내용	
다. 주요 원칙	
라.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과의 관계	
마. 자유화규약상의 각종 안전장치(Safeguard)	
3.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153
가. 성격 및 주요내용	
나. OECD 투자규범상의 내국민대우(투자규범의 부속서)	
다.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투자규범의 부속서)	
라.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상충요건(투자규범의 부속서)	
마. 투자유인제도 및 투자 제한적 조치(투자규범의 부속서)	
4. 기업지배구조 원칙	166
가. 제정 및 개정 경위	
나.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요 내용	
다.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5. 뇌물방지협약	169
가. 배경 및 연혁	
나. 주요 내용	
6. 모델조세협약	171
가. 배경 및 연혁	
나. 역할 및 중요성	
다. 주요 내용	

제3부 우리나라와 OECD

I.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및 연혁	
1. OECD 가입추진 배경	177
2. 가입조건 교섭결과	178
3. OECD 가입 추진 연혁(78-96.12.)	185
II. 우리나라의 OECD내 활동현황	
1. 회의참가	189
2. 의장단 진출	189
3. 사무국 진출	191
4. 통계로 본 OECD내에서의 한국	192
III. OECD 활용을 위한 국내저변 확충	
1. 한-OECD 공동세미나 개최(서울)	201
2. 월간OECD 정책포커스 발간	208
3. 주간OECD 정책브리핑 발간	209
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9
5. OECD 포럼 참석	211

부 록

I.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영문)	217
II.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가입초청 협정(영문)	226
III. 녹색성장 선언문(영문)	264
IV. 약 어	268



제 1부 OECD 개요

- I. OECD 개요
- II. OECD 조직 및 예산
- III. 관련기구 및 포럼



I . OECD 개요

1. 개 관

가. 명 칭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홈페이지 : <http://www.oecd.org>

나. 설 립 : 1961. 9. 30

다. 목 적(OECD 협약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
-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라. 회원국(34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1996), 한국(1996), 슬로바키아(2000), 칠레(2010), 에스토니아(2010), 이스라엘(2010), 슬로베니아(2010)

마. 사무총장 : Angel Gurría(멕시코 前 외무장관/재무장관)

※ 임기 : 2011.6월~2016.5월 (2006.6월 취임후 5년 재임, 2010.9월에 연임 결정)

바. 사무차장 (4인)

- Aart Jan de Geus(네덜란드), 前 사회고용장관(2007.3.5 취임)
- Pier Carlo Padoan(이태리), 前 IMF 상임이사(2007.6.1 취임)
- Mari Amano(일본), 前 KEDO 사무차장(2007.6.14 취임)
- Richard Boucher(미국), 前 미국무부 차관보(2009.11.5 취임)

《 한눈에 보는 OECD 회원국 경제 (2009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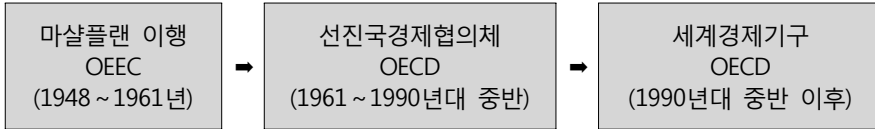
국가	가입 연도	GDP (10억 \$)	1인당 GDP(\$)	인구 (천명)	수입액 (백만\$)	수출액 (백만\$)	실업률 (%)	재정현황 (%/GDP)
호주	1971	869.7	39,172	21,244	193,938.00	212,156.10	5.6	-4
오스트리아	1961	320.9	38,368	8,366	138,050.6*	134,816.4*	4.8	-4.3
벨기에	1961	391.1	36,245	10,542	284,786.90	283,895.40	7.9	-5.7
캐나다	1961	1,280.30	38,923	33,368	400,983.60	392,667.10	8.3	-4.8
체코	1995	264.6	25,236	10,271	123,389.40	126,296.30	6.7	-5.7
덴마크	1961	203.6	35,869	5,473	86,865.48	95,912.78	6.1	-2.5
핀란드	1969	185.3	34,716	5,327	64,367.13	68,951.72	8.3	-2.3
프랑스	1961	2,172.10	33,679	62,149	590,458.80	517,888.00	7.4	-8.2
독일	1961	2,969.60	36,270	82,807	1,094,501.00	1,302,501.00	7.8	-3.2
그리스	1961	334.7	29,724	11,252	60,077.74	22,623.25	8.9	-12.7
헝가리	1996	197.8	19,765	10,021	87,132.15	93,356.84	10.1	-4.3
아이슬란드	1961	12	37,573	304	3,617.82	4,578.02	3	-15.7
아일랜드	1961	179.3	41,116	4,298	61,890.23	111,089.10	12	-12.2
이탈리아	1962	1,921.60	31,887	58,934	472,027.30	447,779.50	7.9	-5.5
일본	1964	4,139.60	33,850	127,395	636,509.60	728,223.90	5.1	-7.4
대한민국	1996	1,324.40	27,169	48,747	422,383.20	464,287.00	3.6	-1.8
룩셈부르크	1961	41.7	83,802	475	22,079.62	16,819.53	4	-2.3
멕시코	1994	1,535.20	15,233	107,551	301,481.80	298,361.20	5.2	-
네덜란드	1961	675.2	40,852	16,418	428,522.90	485,305.00	2.8	-4.5
뉴질랜드	1973	124.9	29,176	4,224	29,349.04	31,829.63	6.2	-1.2
노르웨이	1961	266.5	55,187	4,735	73,877.80	132,372.40	3.2	+9.6
폴란드	1996	727.1	18,125	37,863	170,238.00	162,267.00	8.2	-6.4
포르투갈	1961	261.2	24,568	10,625	72,430.66	48,826.78	9.5	-6.7
슬로바키아	2000	121.6	22,446	5,397	64,438.11	64,620.24	12.1	-5.9
스페인	1961	1,499.60	32,650	44,511	314,855.10	253,118.50	18.1	-9.6
스웨덴	1961	352.6	37,747	9,198	148,853.60	160,362.50	8.3	-2.0
스위스	1961	348.8	44,725	7,628	178,525.60	195,598.10	4.1	-0.7
터키	1961	1,040.30	14,469	75,643	177,272.00	120,952.00	14	-
영국	1961	2,256.80	36,538	61,858	560,810.30	409,795.60	7.7	-12.6
미국	1961	14,043.90	45,674	307,212	1,935,739.00	1,288,662.00	9.3	-11.2
칠레	2010	243.2	14,560	16,970	54,998.68	71,337.91	7.8	+5.3
에스토니아	2010	26.3	19,636	1,340	11,970.91	11,686.92	5.6	-
슬로베니아	2010	56	27,405	2,020	25,557.46	24,301.05	4.4	-5.8
이스라엘	2010	206.6	27,764	7,170	57,952.00	11,686.92	6.1	-2.4

※ OECD 2011 YEARBOOK의 통계(2009년) 참조

※ 수출액, 수입액은 2010년 OECD 통계 사용 (*오스트리아는 2009년)

※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2. 설립 배경 및 연혁



가. OEEC 설립(1948.4월)

- 1) 2차대전 직후 미국은 유럽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마셜플랜을 실시하고,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1948년에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파리)를 설립
- 2)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그리고 화폐가치 안정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기능 수행
 - 군사적 측면의 집단안보체제 기능을 수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의 양대 지주 형성

나. OECD 설립(1961.9월)

- 1) OEEC 설립 이래 미국과 유럽간의 협조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OEEC 개편의 필요성 대두
 - 전후 경제회복 기간 동안 유럽의 달러 부족 현상이 극복되고, 1958년 대부분 유럽국가의 통화가 태환성을 회복함으로써, 유럽내 지역적인 무역자유화 촉진만을 규정한 OEEC 규정의 개선이 필요
 - 전후 자유세계에 대한 원조를 단독으로 수행해 오던 미국의 국제 수지적자가 50년대 후반 급증하게 되고, 서유럽국가들도 후진국

원조에 참여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피원조기구로 출발한 OEEC의 성격변화가 불가피

- EEC(1958)와 EFTA(1960)의 발족으로 이들 그룹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서유럽과 북미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 형태로의 OEEC 개편 필요성 증대

- 2) 1960년 12월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협정에 서명(1961.9월 협정문 발효)

다. OECD의 확대·발전

- 1) 1964~73년간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가입
- 2) 1989년 이후 비선진국권으로 협력관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중남미의 중진국 및 구공산권의 전환기 경제들과의 정책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비회원국 협력사업(outreach programme) 실시
 - 1997.9월 「비회원국협력위원회(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CCN)」 설치
 - 1998.1월 「비회원국협력센터(Centre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 CCNM)」 설치
- 3) 1994년 이후 신흥공업국 영입 및 동구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멕시코(1994.5월), 체코(1995.12월), 헝가리(1996.5월), 폴란드(1996.11월), 한국(1996.12월) 및 슬로바키아(2000.12월) 등 6개 국가가 신규가입
- 4) 구리아 사무총장 취임 이후 OECD의 외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칠레(2010.5월), 슬로베니아(2010.7월), 이스라엘(2010.9월), 에스토니아(2010.12월) 등 4개 국가 신규 가입

3. 주요 활동

가. 설립 목적 및 핵심 관심분야

- OECD의 설립 목적은 설립 협약(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과 무역 확대에 기여
- OECD는 설립 50주년인 2011년을 향후 OECD가 나아가 할 방향을 재설정하는 전기로 보고,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fe”라는 슬로건 하에 4가지 주요 영역을 핵심 관심분야로 선정
 - － 금융위기 이후 시장과 제도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 회복
 - － 지속가능성장의 기초가 되는 각국 정부재정의 건전화
 - － 혁신, 환경친화적인 ‘녹색성장’, 개도국 발전 등 신성장동력 강화
 - － 직업능력의 강화

나. 최근 OECD의 주요 활동 현황

-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발간 및 G20 정상회의 참여 등을 통해 세계 금융위기 극복에 적극 기여
 - － ‘OECD Strategic Response to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2009)’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발간
 - －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9)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Framework, 국제통화체제 개편, 개발협력, 반부패 등 G20 정상회의 논의에 기여
-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 － 각료이사회회의 ‘녹색성장 선언문’(09.6월 채택) 이후 25개 위원회가 2년간 노력한 결과인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발간(11.5월)
 - － 향후 OECD 녹색성장전략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UN, World Bank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
 - － 화석연료보조금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전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OECD 비회원국의 세계경제 비중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한층 더 높아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0년에 개정된 동 가이드라인을 개정
 - 인권(Human rights) 관련 새로운 장(Chapter) 신설, 공급사슬(Supply chain)에 관한 다국적기업의 책임 강화 및 노동권 보호 등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 보완
 -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국내 연락사무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절차규정을 강화하고 회원국간 동료평가를 정책권고 사항에 포함
-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Innovation)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2007년 각료이사회에 OECD 차원의 혁신전략 개발을 의결
 - OECD 과학기술산업국을 중심으로 분야별 14개 상설 위원회 및 사무국 8개국 Directorate, 비즈니스계, 노동계,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
 - 2010.5월에 최종 보고서 제출
- OECD가 진행해온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책함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Skills Strategy를 진행중이며 2013년 'Skills Outlook'을 발간할 예정
 -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OECD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식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주제검토(Learning for Jobs), 중등단계 이후의 직업교육 검토(Skills Beyond School) 등을 실시

참고 : OECD 활동의 유형

- 1)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공통관심 쟁점의 파악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와 대응방안의 도출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회원국간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여 결론을 도출
- 2)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정책연구 : 경제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정책대화를 운영. 이에 따른 정책처방도 학제적이며 특히 경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 3) 실증적·전문적 분석 : 정책대화의 근거와 방향 및 결론은 회원국들의 경험과 이에 대한 사무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의해 제시되고 유도
- 4) 공동보조의 모색 : 공통된 가치관과 정책대화에서 도출된 기준에 입각해 상호 정책 개선 촉구 및 국제적 정책조정 추진
- 5) 동료압력(peer pressure)의 행사 : 정책지침, 정책권고 혹은 국제협약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해 개별 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상호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함으로써 정책개선 혹은 정책조정 유도
- 6) 비회원국으로의 전수 : 개발도상국 및 전환기 경제국들과도 다양한 형태로 정책대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OECD내 누적된 정책경험과 OECD가 추구하는 가치관 및 각종 기준을 전수
 - 국제 정치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흥경제국 등 비회원국과의 적극적 인 관계강화를 통해 OECD 및 OECD 정책의 적실성 제고 추진
- 7) 시민사회로의 전파 : 회원국내의 기업, 노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주요 국제 NGO들과의 정책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보고서의 광범위한 보급을 통해 OECD의 기준과 정책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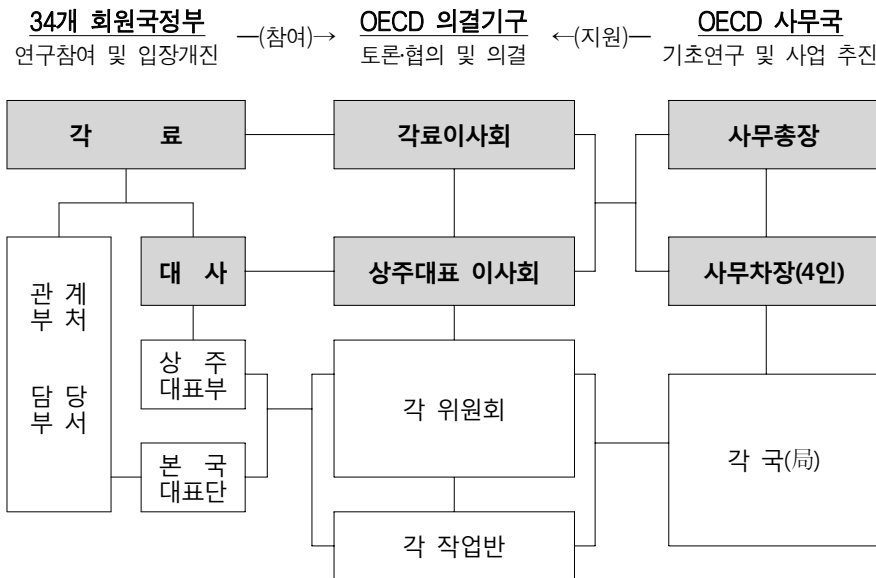
4. 의사결정 과정과 방식

가. 의사결정 과정

- 원칙적으로 34개 회원국 정부의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하며, 최종 의사결정체인 이사회는 산하 위원회들로부터의 건의 및 그에 대한 심사에 입각하여 결정

- 2006년 OECD 거버넌스 개혁(2006.6.1부터 시행)을 통해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OECD 이슈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사결정방식(컨센서스, 가중다수결 등)을 적용
- 사무국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집행부서이자 하부구조이나 전문적 분석과 각종 문서의 작성 및 회원국간 중개자역할을 통해 큰 영향력을 행사

《 OECD 의사결정 흐름도 》



나. 의사결정 방식

- 의사결정방식은 컨센서스 방식인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2004년 도입한 조건부 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QMV) 메카니즘 및 'a' point 방식으로 분류
 - mutual agreement : 어떠한 국가의 반대도 없는 상황(각 회원국이 제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수준까지도 포함한 컨센서스(침묵도 동의로 간주 가능)를 의미)

- QMV : Part I 예산의 60%를 분담하는 회원국들의 찬성으로 결정이 채택될 수 있으며, 최소한 Part I 예산의 25%를 대표하는 3개국 이상의 반대가 없어야함.
- ‘a’ point 방식 : 이사회 직속 기관의 제안으로 상정된 제안이 이사회에서 토론없이 채택될 수 있는 방식
 - ※ 이사회 토론절차를 거치는 방식은 ‘b’ point라 함.
- 의사결정 대상을 아래 4개 이슈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
 - 특정 이슈의 해당 카테고리 여부 해석은 일반 사안(normal case)으로 운영함(카테고리별 구체 이슈 목록 명시)
 - ① 근본 이슈(fundamental issue)
 - 정치적 성격 또는 회원국에 의무 부과 등 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
 - 상설위원회, 소그룹 또는 이사회 스스로 제안 가능
 - 대부분 이사회 토론을 거치는 ‘b’ point 방식으로 상정
 - ② 위임 및 상호합의 이슈(delegated & mutual agreement issue)
 - 상설위가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컨센서스로 최종 결정하는 사안
 - ③ 특별 사안(special cases)
 - 이사회 및 관련 상설위에서 조건부 다수결을 통해 결정 가능한 사안과 상설위가 위임을 받아 조건부 다수결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안(2004년 허용시보다 범위가 대폭 확대)
 - ④ 일반 사안(normal cases)
 - 상기 3개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사안으로서, 상설위에서 상당한 지지 확보 후 ‘a’ point 방식으로 이사회에 상정
 - 회원국 보호를 위해 “전체 회원국의 15% 이상이 요청시 이사회의 재토론 메커니즘” 및 “회원국의 중요한 이익 침해시 특별 이사회를 통해 논의하는 안전장치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 도입
 - ※ 과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PWB)과 분야별 위원회 유지/폐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컨센서스로 결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안은 fundamental

issue와 delegated & mutual agreement issue를 제외한 모든 사안을 사실상 컨센서스 이외의 방식으로 결정

이슈 \ 기 관	이사회	상설위	분야별 위원회
Fundamental Issue	토론후 mutual agreement로 결정	제한 없음 (mutual agreement 예상)	mutual agreement로 결정
delegated & mutual agreement issues	-	mutual agreement로 최종 결정	
Special Cases	조건부 다수결로 최종 결정	조건부 다수결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상정	
Special Cases (위임이슈)	-	조건부 다수결로 최종 결정	
Normal Cases	15% 이상의 회원국이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특정국이 특별회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 토론없이 채택 ('a' point 방식) → 재논의 또는 별도 회의 개최시 mutual agreement로 결정	상당한 지지 획득후 이사회에 'a' point 방식으로 상정	

5. 회원국의 의무

가. 신규회원국 가입관련 규정

- OECD 협정문 16조에 의거,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에 초청에 의하여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하며”, 가입효력(정식 가입)은 “가입서를 프랑스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발생

나. 회원국의 의무

1) OECD 가입을 위한 기본자격요건

-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pluralistic democracy)로서
-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를 보유하고
- 인권을 존중하는(respect for human rights) 국가

2) 회원국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

가) 일반적 의무

- OECD 설립 목적의 지지
- OECD의 규정범의 원칙적 수락
- 예산의 분담

나) 권고적 의무

- GATT 제 11조국 및 IMF 제 8조국으로의 이행
 - GATT 11조는 수출입에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1990.1월 GATT 11조국으로 이행
 - IMF 8조는 경상외환 지급에 대한 제한 폐지, 복수 환율제도의 적용 등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 자국통화의 교환의무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1988.12월 IMF 8조국으로 이행
-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 GNP의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의무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님.

다) 자유화 의무(제2부, II “OECD의 주요 규범” 참조)

-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소위 양대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다만 가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일부 규약의 유보 또는 면제가 가능

II. OECD 조직 및 예산

1. 조직 개요

가. 이사회 및 부문별 위원회

- 이사회(Council)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급 이사회는 연 1회 개최
 - 세계경제의 주요 동향 진단과 OECD 회원국들의 정책적 대응과제 및 비전 제시
 -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상주대표이사회는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감독 담당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25개)
 - 개별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약 200여 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 운영
 - 작업반은 담당부문의 세계동향 및 회원국 동향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주요 주제에 관한 정책 대화 실시

나. 사무국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을 지휘
- 일반사무국과 14개 국(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지원
- 직원 : 2,750명(2010.12월 현재)

다. 준독립기구

- 원자력기구(NEA)
- 국제에너지기구(IEA)
- 개발센터(DC)

라. 자문기구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마. 협력 기구

- 구주이사회(Council of Europe)
- 국제교통포럼(ITF)
- 금융정보분석 태스크포스(FATF)

2. 이사회 및 보좌기구

가. 이사회(Council)

- 주요 정책문제 토의, 기구 설립, 예산 승인 등 기구 활동 전반에 걸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

1)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1회(5~6월경) 개최되며,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외교, 통상 및 경제장관 중 1~3인)
- 세계경제 및 회원국경제의 주요동향을 진단하고 정책적 도전과 대응 과제, OECD의 향후 사업비전 제시

2)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 OECD 사무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OECD 주재 각 회원국 대사로 구성(매월 1회 이상 개최)
- 차기 각료이사회 개최시까지 1년간 각료이사회의 대리 기능을 수행하며, 각 회원국의 입장 및 각료이사회로부터의 위임사항에 입각하여 그 위원회의 활동 및 사무국의 운영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검토·승인
- 사업계획과 예산심의 등을 통해 OECD 운영계획을 심의·채택하는 역할 수행

나. 이사회 직속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 의장은 회원국 대사 가운데서 선출

1)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 이사회를 보좌하여 이사회 결정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기구

2)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 OECD 작업계획 및 예산(PWB) 작성, 예산 및 재정사항 집행, OECD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재정규정 등에 대하여 이사회를 보좌

3)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 비회원국과의 협력 전략 등의 수립에 관하여 이사회를 보좌

다. 이사회 직속 자문기구

- 이사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로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홍보위원회(Committee on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 청사개축 비공식 그룹(Group on the Site Project), 연금예산적립금관리위원회(Pension Budget and Reserve Funds Management Board),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

라. 특별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ECSS)

- 1972.10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회원국의 OECD 담당 고위급(차관 또는 차관보급) 또는 주OECD 상주대표가 참석하여 OECD 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
 - 연 2회 개최(봄 회기에는 각료이사회에 대비하고 가을 회기에는 그 해의 OECD 업무 정리 및 명년도 OECD 운영 방향을 설정)

3. 위원회 및 작업반(Committee and Working Party)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전문분야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회원국 정책 당국자간 정기적 대화 실시
- 개별위원회 산하에는 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 혹은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이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 중
 - 현재 약 250여개의 위원회, 작업반 활동 중

4. 사무국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사무총장 1인이 4인의 사무차장의 보좌를 받아 사무국을 지휘, 감독

가. 사무총장 및 차장

- 사무총장 : Angel Gurría(멕시코)
 - 임기 5년 (2001.6월~2016.5월) * 2010.9월에 연임 결정

《 역대 사무총장 》

기간	이름	국가
1948~1955	Robert Marjolin	프랑스
1955~1960	Rene Sergent	프랑스
1960~1969	Thorkil Kristensen	덴마크
1969~1984	Emiel van Lennep	네덜란드
1984~1994	Jean-Claude Paye	프랑스
1994	Staffan Schilman(임시)	
1994~1996	Jean-Claude Paye	프랑스
1996~2006	Don Johnston	캐나다
2006~	Jose Angel Gurría	멕시코

- 사무차장(4인)
 - Aart Jan de Geus(네덜란드), 前사회고용장관(2007.3.5 취임)
: 각료이사회/특별집행위원회, 정치경제 개혁 담당
 - Pier Carlo Padoan(이태리), 前IMF 상임이사(2007.6.1 취임)
: OECD의 미래 전략 수립 및 타국제기구와의 관계 담당
 - Mari Amano(일본), 前KEDO 사무차장(2007.6.14 취임)
: 개발클러스터 및 정책 일관성 담당
 - Richard Boucher(미국), 前미국무부 차관보(2009.11.5 취임)
: 대외 관계(회원국 가입, 관계강화 등) 담당

나. 사무국 조직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산하에 전문분야별로 총 14개의 국(Directorate)이 있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분담 지원

《 OECD 조직표: 위원회와 사무국 》

OECD 이사회 및 위원회		사무국	OECD 위원회	사무국
이사회				
이 사 회 직 속 기 구	(상임위원회) - 집행위원회 - 예산위원회 - 대외관계위원회 (자문기구) - 감사위원회 - 연금예산적립금관리 위원회 - 홍보위원회 - 평가위원회 - 청사개축비공식그룹 - 연례지속가능발전 전문가회의	일반사무국 - 이사회사무국 - 법률국 - 대외관계 및 홍보국 - 학제적연구자문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산업혁신위원회 해운위원회 철강위원회 육송운송연구분야의 협력프로그램	과학기술산업국
		집행총국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고용노동사회국
	특별집행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국
경제정책위원회 경제동향검토위원회		경제국	무역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무역농업국
환경정책위원회 화학제품규제관련 특별프로그램		환경국	통계위원회	통계국
개발원조위원회		개발협력국	LEED Programme 관광위원회	기업가 정신 · 중소기업 · 지역개 발센터
공공행정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공공관리지역개발국	특별기구	
			원자력기구(NEA)	
투자위원회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경쟁위원회 뇌물방지작업반 기업지배구조위원회		금융기업국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D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재정위원회 유해조세경쟁포럼 조세행정포럼		조세정책행정센터	국제교통포럼(ITF)	
			사헬 및 서아프리카 클럽	

부 서			담당 업무 / 위원회
사무총장실 및 부속기관	비서실	Ms. G. Ramos(실장)	• OECD 미래연구 프로그램 추진 • 대외관계위원회 • 이사회 및 집행위 • OECD 협정 및 규약의 해석 • 신규회원국의 가입조건 협의 • 감사위원회
	학제적 연구자문반	Mr. M. Osborne(국장)	
	비회원국협력국(CCNM)	Mr. E. Burgeat(국장)	
	이사회·집행위원회 사무국	Mr. R. Harmel(국장)	
	법률국(LEG)	Mr. N. Bonucci(국장)	
	감사국(IA)	Mr. D. Pannier(국장)	
집행총국 (Executive Directorate)	총국장	Mr. P. Van Haute	• 사무국 행정 관리 • 사무국 직원 채용 및 관리 • 사무국 컴퓨터 관리 • OECD 예산 운용
	인적자원관리국(HRM)	Ms. M. Page	
	운영국(OPS)	Mr. D. Johnson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서비스부(ITN)	Mr. L. Rodrigues	
	재정기획(PBF)	Mr. A. Rottier	
	회의, 보안, 통역부(CSL)		
대외관계 및 홍보국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 Directorate)	담당 국장	Mr. A. Gooch	• 홍보위원회 • 대외홍보 담당
	공보과(AFF) 언론과(COM) 인터넷과(COM/INT) 출판과(PUB)		
경제국(ECO) (Economics Department)	선임이코노미스트	P. Padoan	• 경제정책위원회(EPC) •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 회원국 경제동향에 대한 정기적 검토 • 세계경제현황 분석 등
	국별연구부	A. Dean	
		국별연구1-6과	
	정책연구부	J. Elmeskov	
		구조정책분석과(SPAD)	
		구조정책감시과(SSD)	
		거시경제분석과(MAD) 거시경제정책과(MPD) 공공경제과(PED)	

부 서			담당 업무 / 위원회
통계국(STD) (Statistics Directorate)	국장	Mr. M. Durand	● 통계위원회(CSTAT) － 각 위원회 및 회원국의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통계 제공 － 사회발전 측정, 세계화, 혁신 등과 관련한 새로운 통계 개발
	통계정보관리·지원과(SIMS) 국민계정과(NAD) 구조경제통계과(SES)		
환경국(ENV) (Environment Directorate)	국장	Mr. Simon Upton	● 환경정책위원회(EPOC) － 화학제품규제관련 특별 프로그램
	환경보건안전과(EHS) 환경경제통합과(EEI) 환경성과정보과(EPI) 기후변화생물다양성발전과(CBF)		
개발협력국(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국장	Mr. Jon Lomøy	● 개발원조위원회(DAC) － 회원국 대외원조정책 정기 검토 － 대외원조통계 종합분석 －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회원국 원조정책 조율 등
	정책조정과(POL), 검토평가과(PEER) 빈곤퇴치성장과(PRG) 정책효과성과(EFF) 통계모니터링과(STAT) 원조체제지원과(AAF)		
금융기업국(DAF) (Directorate for Financial &Enterprise Affairs)	국장	Ms. C. Ervin	● 투자위원회 ● 금융시장위원회(CMF) ●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IPPC) ● 경쟁정책위원회(COMP) ● 뇌물방지작업반(WGB) ● 기업지배구조위원회(CGC)
	투자과(INV), 반부패과(ACD) 민간부문발전과(PSD) 금융업무과(CA), 경쟁과(COMP) 재무과(FIN) 자금세탁 방지 사무국(FATF)		
조세정책·행정센터 (CTP) (Centre For Tax Policy & Administration)	국장	Mr. Jeffrey Owens	● 재정위원회(CFA) － 국제 과세지침 제·개정 － 조세분야 국제협력사업 ● 유해조세경쟁포럼(FHTP) －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촉진 ● 조세행정포럼(FTA) －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강화
	국제협력조세경쟁과(ICA) 글로벌협력과(GR) 조세정책통계수평협력과(TPS) 조세조약이전가격금융거래과(TTP) 조세투명성정보교환포럼(GF)		
고용·노동사회국 (ELS)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 Social Affairs)	국장	Mr. John Martin	●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ELSAC)
	국제이주과(IMD) 사회정책과(SPD) 통계지표과 보건과(HD) 고용분석정책과(EAP)		

부 서		담당 업무 / 위원회
과학기술산업국 (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국장	Mr. Andrew Wyckoff
	정보통신소비자정책과(ICCP) 과학기술정책과(STP) 경제분석통계과(EAS) 구조정책과(SPD)	
교육국(EDU) (Directorate for Education)	국장	Ms. B. Ischinger
	지표분석과(IA), 교육훈련과(ETP) 비회원국협력과(MME) 교육경영시설과(EMI)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무역농업국(TAD)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국장	Mr. K. Ash
	무역정책연계서비스과(TPLS) 농산물 무역시장과(ATM) 농업코드체제과(COD) 농업정책환경과(PE) 개발과(DD), 수산정책과(FISH) 생물자원관리연구프로그램(PROG) 농업 정책 및 무역과(PTA) 수출신용과(XCR) 농업정책무역과(PTA)	
공공관리지역개발 국(GOV)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국장	Mr. R. Alter
	규제정책과(REG) 예산공공지출과(BUD) 공공부문 관리성과과(PSMP) 혁신통합과(IID) 지역경쟁력가버넌스과(RCG) 지속가능발전지역정책과(RSD)	
기업가정신·중소기 업·지역개발센터 (CFE)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 Local Development)	국장	Mr S. Arzeni
	중소기업기업가정신과(SME) 관광과(SME) 지역경제고용개발과(LEED)	

5. 예 산

가. 예산의 구분

- 회계연도는 매년 1.1~12.31이며, 복년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
 - Part I :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부속예산 : 퇴직 사무국 직원 연금재정을 위한 연금예산과 출판비용
충당을 위한 출판예산 및 투자예산으로 구성
 - 비정규 예산 : 특정 개별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한 예산
- ※ 수입은 회원국분담금 및 출판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구분

나. OECD 예산 및 분담금

1) 2011년 예산 : 342 백만 유로

《 OECD 예산(백만유로) 》

구 분	2009	2010	2011
Part I	161.9	166.8	179.7
Part II	59.7	63.4	66.8
연금예산	47.9	48.9	49.1
출판예산	1.4	1.4	1.4
투 자	1.8	1.9	1.9
총 액	272.7	282.4	298.9

2) 분담률

-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
 - 회원국의 경제규모(최근 3년간($t-2 \sim t-4$)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을 결정
 - ※ 2008.6월 각료이사회 결정으로 Part I 분담금의 경우 2009년부터 전체 분담금의 30%는 전회원국이 균등부담(base fee)
 - Part I 분담금의 경우 상한선 24.975%(미국) 설정
 - Part II 및 기타 예산은 상한선 24.975%와 하한선 0.1% 설정
- 신규회원국 가입시에는 회원국 분담률을 비례적으로 인하하되 기존 상·하한선은 조정한계를 설정
-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2011년 Part I 승인예산 기준 2.40%(34개 회원국 중 9위)

《 우리나라의 2011년 분담금 》

(단위 : 백만유로)

	Part I	Part II	연금예산	출판예산	투자	합계
OECD 분담금 (백만 유로)	179.7	66.8	49.1	1.4	1.9	298.9
우리나라 분담금 (천 유로)	4,307	1,987	1,226	36	47	7,603
분담률(%)	2.40	2.97	2.49	2.49	2.49	2.54

※ Part I: 예산중 회원국 분담금을 기준

※ Part II: 총25개 프로그램중 우리나라 가입 19개 사업기준

III. 관련기구 및 포럼

1. 준독립기구

개요

- OECD내 독립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3개 주요 부속기구 존재
 - 이들 기구への 가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기구의 장은 OECD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해 OECD 이사회가 지명

가.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

1) 설립 연혁

- 1957년 12월 유럽원자력기구(European Nuclear Energy Agency, ENEA)로 설립
- 비유럽국인 일본, 호주의 가입을 계기로 1972년 12월 NEA로 명칭 변경

2) 목적 및 기능

-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을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원자력에 대한 회원국간의 주요정책 협의
 - 회원국간의 협력을 통한 원자력의 개발·이용 연구
 - 원자력 국제 공동연구사업 운영 및 지원
 -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적 지원

3) 회원국 현황

- OECD 34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을 제외한 29개국
 - 우리나라는 '93.5월에 가입
 - IAEA, 러시아, 중국 등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4) 조직 구성

- 운영위원회 : NEA 최고 정책심의 및 결정기구
 -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정책결정 및 상설기술위원회 활동 조정
- 산하 7개 상설기술위원회 : 사무국 지원을 받아 사업 집행
 - 각기 산하에 Working Party, 전문가그룹 등을 구성·운영
- 사무국
 -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 Luis Echavarri (스페인)
 - 안전 및 규제,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개발, 원자력과학 및 Data Bank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
 - 정규직원과 cost-free 전문가 80명 근무

5) 위원회별 활동

- 원자력 시설안전 및 규제 활동
 - 원자로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습득한 과학기술 지식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발전
 - 미래의 원자력 안정성 확보, 원자로의 안전 연구, 위험평가, 사고 분석과 관리, 운영경험과 인적요소, 연료의 안전성, 규제의 효과성 등
- 방사성 폐기물 관리
 - 사용후 핵연료, 장반감기 방사성 폐기물, 원자력 시설의 해체로 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안전관리전략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

- 방사성 폐기물 관리전략, 지층처분의 안전성, 회원국의 처분 안전성 평가, 원자력 시설의 해체, 이해당사자간 신뢰 구축 등
- 방사선 방호
 - 회원국의 방사선 방어 체계의 적용과 규제를 지원
 - 방사선 방어 규제, 의사결정의 사회적 측면, 원자력응급사항의 계획·준비 및 관리, 원전작업자의 선원노출에 대한 분석 등
- 원자력 에너지 개발
 - 원자력 에너지 데이터(Brown Book), 우라늄 자원 및 수급(Red Book) 및 Nuclear Energy Outlook 발간
 - 전력원 선택 정보 제공, 원전투자,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원자력의 경제성 분석, 원자력 인허가 절차 등
- 원자력 관련 법령
 - 원자력에 의한 손해배상협약인 파리협약 및 브뤼셀 보충협약을 작성하고 보완작업 수행
- 원자력 분야 국제공동연구 수행
 - 원자력 안전, 방사성 폐기물관리,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 중대사고 조건에서 원자로 및 원자로 격납건물 내의 수소·요오드 및 핵분열생성물의 거동 분석
 - 다국적원전설계평가 프로그램(MDEP) 및 제4세대 원자로(GEN-VI) 개발사업

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1) 설립배경

-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회원국인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를 위한 협력 촉진을 목표로 1974. 11월 설립

- 목적 : 석유비상시에 대비한 대응체제 구축, 석유시장 및 산업분석, 석탄·원자력·가스 등 전반적인 에너지관련 수급 및 기술 관련 동향 협의

2) 회원국 구성

- OECD 34개국 회원국 중 2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우리나라는 2002. 3월 가입), 칠레는 가입심사 진행중

3) 사무국 및 조직체계

-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 Maria van der Hoeven(네덜란드), Nobuo Tanaka(11.8.31 임기종료)
- 사무차장(Deputy Executive Director) : Richard Jones(미국)
- 기구운영체계 : 이사회(Governing Board)가 회원국간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며 IEA 각료이사회는 2년마다 1회 개최
 - 위원회 및 standing group의 경우 각각 연 2~3회 개최

4) 위원회별 활동

- 석유비상대응 상설그룹(SEQ)
 -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의 석유비축현황, 석유비축체제에 관한 국별 검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 석유공급차질에 대응한 회원국별 비상대응체제 구축 및 IEA 차원에서 공동대응방안(비축유 방출 및 회원국간 share 등) 모색 (2004.10월, 제3차 비상대응훈련 실시)
 - 장기협력 상설그룹(SLT)
 - 에너지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과 회원국의 에너지정책 검토·평가
- ※ 06년에 작성된 '에너지정책 검토보고서: 한국' 개정판 발간(12년) 준비를 위해 전문가 그룹 방한(11.4월말) 등 작업 진행중

- 각국의 전력사업 구조개편 동향 점검과 발전방향 논의
- 지구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방향
- 석유시장(SOM)
 - 세계석유시장의 수급현황 분석
 - OPEC와의 협력관계 증진(공동 워크샵 등 개최)
- 글로벌에너지협력상설그룹(SGD)
 - IEA 비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 분석·검토
 - Partnership 회의 개최를 통해 비회원국과의 협력사업 추진
 - ※ 09년 각료이사회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와의 업무협력 공동성명서 발표
-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CERT)
 - 신생에너지 및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체제 구축(한국은 IEA가 운영중인 43개 이행협정 중 24개에 참여중)
 - ※ 11년 스마트그리드 관련 이행협정을 신설(ISGAN), 한국이 간사국 담당
 - 에너지기술과 기초과학기술과의 연계

다.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1) 설립 목적

- 개발센터는 참가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정책 경험과 지식을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별도 예산 및 기구 운영)
- 각종 연구작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OECD의 전략적 관심사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핵심 파트너들과의 정책대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OECD와 Non OECD 국가들간 가교역할을 수행

2) 회원국 : 총 42개 국가

- OECD 회원국(25) : 오지리, 벨기에, 체크,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한국(1990년 가입),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박,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2007년 재가입), 폴란드(2008년 재가입)
- OECD 비회원국(17) : 브라질, 콜롬비아, 카보베르데,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 세네갈, 남아공, 태국, 베트남, 아르헨티나(2011년 재가입)

3) 조 직

- 운영이사회(Governing Board)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연 4~5차례 회의가 개최되며, 개발센터의 사업 및 예산 등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의장 : Chris Hoornaert 벨기에대사)
- 사무국
 - 국장 겸 수석개발이코노미스트: Mario Pezzini(이태리)
 - 3명의 Head(연구, 지역데스크, 전략) 및 지역데스크 산하에 아프리카/중동, 남미/카리브해, 아시아/태평양 등 3개 데스크 운영
 - 지난 40년간 세계은행 및 선진국, 개도국의 연구소와 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
 - 개발원조위(DAC), OECD 여타 부서의 전문성도 활용하여 개발 이슈 정책 분석

4) 최근 주요 사업

- “Flagship” 출판물 발간 : 글로벌개발전망(GDO, 2010년 제1판) 및 3대 지역경제전망보고서(AEO, LEO, SAEO) 매년 발간(동남아시아 경제전망은 2010년 최초 발간)
- 특히, GDO 사업은 외부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여 北/西에서 南/東으로의 세계경제 중심의 이동("shifting wealth")이 글로벌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녹색성장을 특별주제로 하는 2011년 동남아경제전망(SAEO: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동남아 국가들의 녹색성장 정책 개발현황과 더불어 한국 사례 연구를 소개할 예정
- 동 주요 발간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Development Finance(DeFiNe), Emerging Markets(EmNet), Development Communicators (DevCom) 등 3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

2. 민간자문기구(Advisory Body)

개 요

- OECD의 이사회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국제 NGO로서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가 있음.
- BIAC/TUAC과 OECD는 사무총장 주재하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업무 협의를 실시
 - OECD의 상설위원회 개최시마다 의견청취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BIAC/TUAC과의 토의시간을 갖고 있음.

가.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1962.3월, OECD에 대해 기업 및 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식 협의 하는 자격을 갖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로 설립
- 총 31개국의 38개 전국단위 경영자단체가 가입(10년 기준)
 - ※ 우리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FKI) 가입, 류진 풍산회장이 BIAC 부회장(7명)으로 활동중
- 조직은 사무국(파리소재), 총회(Plenary Meeting), 이사회(Executive Board)로 구성
 - ※ 사무총장 : Tadahiro Asami(일본), 의장 : Charles Heeter(미국)
- 무역, 환경 등 26개 정책그룹에서 실무적 정책검토 담당

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1948년 유럽부흥프로그램의 노조자문기구로 설립되었으나 1962년 OECD 설립 이후 OECD의 노조 자문기구로 전환
- 총 30개국의 58개 전국노조단체가 가입하고 있고 대표하는 노조원 수는 모두 약 6.6천만명
 - ※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가입
- 조직은 사무국(파리소재, 8명 상근) 및 총회로 구성
 - ※ 사무총장 : John Evans(영국), 의장 : Richard Trumka(미국 노총 위원장)
- 1996년 우리나라 OECD 가입시 노동법 모니터링을 주도하였으며, 우리 노사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3. 협력 기구

가. 구주이사회(Council of Europe) 및 NATO 의원연맹 경제분과 회의

- 각료위원회, 의원총회 및 산하 상임위원회 그리고 16개 일반위원회로 구성
 - 의원총회는 유럽국가간 경제·사회발전 및 정치적 통합을 위한 유럽 국회의원의 모임
- 매년 9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되는 의원총회는 OECD 관련 의제도 토의하며, OECD 아·태 회원국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확대 의원총회형식의 세션도 개최
- 아울러 “NATO의원연맹 경제분과 회의”를 매년 2월 파리에서 NATO회원국, Non-NATO OECD 회원국, OECD 사무국과 합동 개최
 - 경제, 사회, 거버넌스, 개발 등 OECD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

나. 국제교통포럼(ITF)

- 범유럽권의 경제적·기술적 교통시스템의 통합, 관련국가들의 교통 정책 이슈분석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던 유럽교통장관회의(ECMT)를 2007년에 global forum 형태로 확대·발전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ITF 확대개편에 따라 2007년부터 정회원국으로 활동 중
- 52개 정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매년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각료가 참석하는 정례포럼(annual summit, 매년 5월말), 운영이사회(연 3~4회) 및 OECD/ITF 통합 교통연구센터(JRTC)를 통해 활동

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은행시스템 및 금융기구가 테러자금을 위한 자금세탁(Money laundry)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FATF (Finacial Action Task Force)설립
 - 회원국 : 34개국(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 등), 및 2개 국제기구(EC 및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우리나라는 2006. 8월 준회원, 2009. 10월 정회원 가입
- 자금 세탁과 대테러자금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제정 및 이행 권고
 -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수법에 대한 연구 및 대응 수단 개발
 - 회원국에 40(자금세탁관련) + 9(테러자금관련)개 권고안 제시
 - 회원국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한 상호평가 실시
 - * 현재 약 180여 국가에서 자금세탁 방지의 표준으로 채택,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 확보
 - * 우리나라는 정회원 가입 이후 2011. 4월 현재, 권고사항 이행경과를 4차례 총회에 보고

4. OECD 포럼

- OECD에 대한 개방요구에 대응하여 OECD와 시민사회간의 대화증진을 위해 2000년부터 연례적으로 OECD 각료회의와 연계하여 개최
 - 정부·업계·학계·언론계 인사 등이 연사 혹은 패널리스트로 초청되고 일반에게 세미나가 개방되는 공개세미나 형식으로 열리며, 매년 1,000여명 이상의 기업인·학생 등이 참가
 - ※ 10개 분야별(농업, 경쟁, 거버넌스, 국제투자, 지식경제, 지속가능개발, 조세, 무역, 교육, 개발 등)로 별도 개최되는 글로벌 포럼과는 다른 행사
- OECD 포럼 개최 연혁

개최 시기	주 제
2000. 6.26~28	Partnership in the New Economy
2001. 5.14~16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New Economy
2002. 5.13~15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 Security, Equity, Education and Growth
2003. 4.28~29	Grow, Develop and Prosper
2004. 5.12~13	Health of Nations
2005. 5.2~3	Fueling the Future : Security, Stability, Development
2006. 5.22~23	Delivering Prosperity
2007. 5.14~15	Innovation, Growth and Equity
2008. 6.3~4	Climate Change, Growth and Stability
2009. 6.23~24	The Crisis and Beyond : For a Stronger, Cleaner, Fairer Economy
2010. 5.26~27	Road to Recovery : Innovation, Jobs and Clean Growth
2011. 5.24~25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

5. OECD 센터

가. OECD 4개 센터

- 홍보국에 의해 직접 업무지휘를 받는 해외주재 OECD 사무국 조직으로서 홍보, 출판물 판매를 주로 담당
- 현재 워싱턴, 도쿄, 베를린, 멕시코의 4개 도시에 소재

나. 분야별 센터

- OECD의 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전파하기 위해 일부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과의 합의에 의해 파리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기관
- 2011.5월 현재 아래와 같은 분야별 센터가 운영 중
 - － 지역개발 : 이태리 트렌토
 - － 민간부문개발 : 터키 이스탄불
 - － 동남아 유럽 투자 :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몰도바
 - － 경쟁정책 : 헝가리 부다페스트
 - － 국제조세 : 헝가리, 오스트리아, 터키, 멕시코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기존의 한국소재 4개 센터(경쟁, 보건·사회정책, 공공 거버넌스, 조세센터)를 통합하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운영
 - ※ 홈페이지 : <http://oecdkorea.org>

제2부

OECD의 주요 활동

- I. 분야별 주요 논의이슈
- II. OECD의 주요 규범



I. 분야별 주요 논의이슈

1. 경제성장과 안정

가. 논의 개요

- OECD는 회원국 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하여 각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
 - 회원국들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경제정책 방향 권고

나. 경제정책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Economic Policy Committee, EPC)는 회원국 경제 정책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세계경제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
- 산하에 3개 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위원회를 상 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개최하여 각 작업반 회의결과를 종합/정리
 - 구조개선 작업반(WP1) : 중기적 관점에서 OECD 회원국들의 성장, 물가, 고용 등을 위한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 연구 및 토의
 - 단기경제전망 작업반(STEP) : 회원국의 당해년도와 차년도의 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
 - 국제수지균형 협의반(WP3) : 국제수지균형을 중심으로 G7국가를 포함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11개국이 참여하여 분기별 경제동향을 논의
 - * 우리나라는 WP1과 STEP 작업반에 참여중

- 경제정책위원회의 주요업무
 - OECD 회원국들의 중기적 구조개혁 이슈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토의함으로써 정책대안 발굴
 - * 2010년 의제 : 재정건전성 강화 전략, 구조개혁 정책과제, 통화정책 기조
- 구조개혁 보고서(Going for Growth) 발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의 구조개혁 과제를 회원국별로 선정하여 매년 상반기 Going for Growth 보고서를 통해 발표
 - * 2011. 4.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 :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농업 생산자 지원 축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간접세 비중 확대, 여성의 노동참여율 제고
-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 회원국별 경제상황 평가 및 거시경제 전망, 정책권고 사항을 매년 두 차례(5월, 11월) Economic Outlook을 통해 발표

다. 경제검토위원회

- 경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EDRC)는 국가별로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분야 검토회의 개최(연간 20개국 내외 검토)
 - 각국별로 1년 반 ~ 2년 간격으로 회의 개최
- 주요업무
 - 회원국 및 EE(Enhanced Engagement : 인도, 브라질,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국가의 거시경제동향과 전망, 통화·재정 등의 경제정책 분석 평가 및 정책권고 실시
 - 주택, 노동,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녹색성장 등 국가별 주요 이슈도 검토
 - 검토결과를 「OECD Economic Survey」 책자로 발간

- 우리나라와 EDRC
 - OECD 가입 이후 10차례의 한국경제 검토회의 개최
 - 최근 회의(2010.5.19)에서는 주요의제로 경제위기 극복, 출구전략, 금융시스템, 의료, 녹색성장 등을 논의
 - * 차기 검토는 2012. 3.로 예정
 - 우리나라 경제검토회의의 주검토국은 호주와 이스라엘이며 우리나라는 프랑스, 뉴질랜드 경제검토회의의 주검토국으로 참여

2. 국제무역

가. 논의 개요

- OECD 무역위원회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초로 하는 무역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각국 무역정책 수립에 기여
 - 무역활동에 관련되는 조직은 무역위원회 산하 작업반, 무역·환경, 무역·농업 합동작업반, 수출신용보증작업반 등으로 구성되며 무역자유화 기반을 강화하고 민감한 통상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
- OECD 수출신용분야 활동은 수출신용협약 개정 작업과 이행 관련 이슈 논의, 협약 운용으로 구성
 - OECD 공적 수출신용기관들의 2년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이 주요 적용 대상
- 조선 및 철강 분야에 있어서의 OECD 차원의 규범 제정 노력
 - 조선분야는 2010.4월에 05.9월 중단된 신조선협정 협상 재개를 결정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2010.12월 논의 종결 결정
 - 철강분야는 고위급 회의 및 동 고위급회의 산하에 설비감축작업반, 규범수립작업반을 통해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 6월 고위급회의에서 협상의 일시 중단에 합의

나. 국제무역

1) 논의 개요

- 무역관련 논의는 무역위원회관련 회의 이외에도 매년 상반기 개최되는 연례 각료이사회의 통상장관 세션, 무역을 주제로 하여 개도국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글로벌 포럼, 비정부 민간 기구들과의 대화, 각종 국제세미나 등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무역정책방향을 모색하고, WTO 협상과정에도 기여
- 또한, 개발원조위원회(DAC)와 협력하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분야에서도 모니터링 및 good practices 발굴사업 등을 추진

2) 최근 주요 작업 분야

- 도하라운드(DDA) 협상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옹호하는 OECD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중기전략 4대 중점추진 분야

- 세계화의 혜택에 대한 이해증진 및 무역자유화 확대방안
- 서비스교역 자유화 방안 : 서비스 교역 제한 지수 개발
- 국제교역과 국내정책간의 상관관계
- 수출신용 규범 지속 개선

-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 개발 작업 : 1차적으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개발작업을 진행중

* 각 서비스분야, 부문에 대한 정부 규율(regulations)의 교역제한 정도를 계량화한 것

- 현재 시범적으로 컴퓨터, 건설, 통신, 전문직 등 4개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지수 도출을 추진
- 추가로 교통, 소포, 영상서비스, 유통 분야 추진
- 보호무역주의 대응 : 경제위기 지속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도입을 다자적으로 저지하고,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각국의 정부개입조치의 무역왜곡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동료압력 등)을 모색
 -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분석 작업을 통해 G20 등 논의에 기여
- 기타 추진중인 작업 분야
 - < 무역자유화 분야 >
 - 개방과 비교우위 변화 패턴 등 세계화와 동태적 무역패턴 변화
 - 무역정책과 혁신전략
 - 지역 및 양자간 무역협정 :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RTAs의 다자화 등)
 - 주요 산업원자재의 수출제한 조치 DB 구축
 - < 서비스교역 및 무역과 국내정책 분야 >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 교역에 미치는 영향, NTMs 디자인과 효과성, NTMs 자유화와 소비자
 - 무역원활화의 비용과 혜택
 - 2010년 G20와 협력을 계기로 10개 국제기구간 공동프로젝트(ICITE)로 무역과 고용관련 연구 확대

3) 공동작업반 논의 주요 이슈

- 무역·환경 공동작업반 : 지역무역협정(RTA)과 환경, 무역과 기후변화 (특히, G20논의 기여 차원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경적으로 민감한 제품의 불법교역 문제 등
- 무역·농업 공동작업반 : 지역주의화(지역무역협정 등)가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공된 농산품의 교역패턴 변화 등

다. 수출 신용

- OECD는 1963년부터 수출신용 작업반 활동을 통하여 수출신용 (직접금융, 대출보증, 수출보험 등) 제공시 OECD 국가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환경에 대한 공동지침, 뇌물방지지침, 지속가능대출 가이드라인¹⁾, 구속성(tied) 원조 원칙 등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 여부를 검토
 - 특히 공적자금 사용에 대해 민간사회단체로부터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 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압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일반여론을 수렴하여 수출신용제공 규범에 반영
- 이러한 OECD의 노력은 보조금적 성격의 수출신용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의 조성을 목표로 하는 OECD 공적 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의 제정(1978년) 및 동 약정의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한 개정 작업으로 지속
 - 2010.2월 Buyer's risk를 감안한 최저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정에 합의하였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수자원 프로젝트 부문별 양해 적용범위를 기후변화감소 및 에너지 효율부문으로까지 확대·개정 하는 작업을 진행중
 - 또한 2011. 2월 민간항공기 수출신용 양해를 개정하여 항공기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합의
- OECD는 수출신용협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비회원국(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들이 수출신용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OECD 가입국(이스라엘,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공정경쟁조건 준수 및 향후 수출신용 협약 가입을 목표로 OECD 수출신용회의 옵저버 참가초청 등을 통한 Outreach 활동을 강화

1)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Promote Sustainable Lending Practices in the Provision of Official Export Credits to Low Income Countries ('08.1월 합의)

- 한편, OECD 수출신용 작업반은 수출신용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환경심사 원칙을 규정한 2007년 수출신용과 환경권고안²⁾의 개정 작업은 진행 중
- 최근 OECD국가들의 공적 수출신용 제공 금액규모는 매년 1,486억 미불 내외이며, 대부분의 수출신용자금이 개도국의 중장기 산업 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어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

라. 조선작업반

1) 논의 개요

- 1970년대 이래 OECD를 중심으로 조선시장에 있어서의 공정 경쟁 여건을 확립하기 위한 별도의 규범 마련 노력 지속
 - 조선산업은 일반 상품과 달리 편의치적(便宜置籍)의 상관행, 국 내외(國內外) 시장을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로 세계시장이 단일 시장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일반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규범(특히 반덤핑 규범)의 적용이 곤란
 - 1969년 「선박수출신용양해」, 1972년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 여건장래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일반협정」, 1976년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지도원칙」 체결
- 1994년 12월 미국 주도로 조선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해 OECD 조선협정(1994년 조선협정) 타결
 - 동 협정은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조치 철폐, WTO 반덤핑 제도와 유사한 피해가격제도(Injurious Pricing Code) 도입 등이 주요 내용
 - 1995~1996년간 한국, 일본, EC 및 노르웨이 등이 이행법률의 국내 비준을 완료하여 1996년 1월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2) Council Recommendation on Common Approaches on the Environment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07. 6월 이사회 승인)

비준 거부로 결국 발효되지 못한 바, 미국 의회는 동 협정의 발효시 자국연안 항해선박의 국내 건조의무 폐지 등으로 자국 조선산업이 불리해진다고 판단하여 비준을 거부

- 2002년 들어 세계 조선산업의 과잉생산능력(overcapacity)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범의 도입 필요성 제기
 - 1994년 이후 세계 조선시장의 변화 규명 및 새로운 조선협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공청회(2002.4) 개최 결과, 新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각국 조선업계가 동의
 - 2002년 9월 제101차 OECD 조선작업반(WP6) 회의에서 세계 조선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新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미국을 제외한 OECD 조선작업반 회원국 및 중국, 크로아티아 등 비OECD 회원국이 새로운 조선협정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2002.9월 OECD 이사회 mandate

1.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개시, **2005년 말까지** 협상 종결 추진
2. 새로운 조선협정은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불합리한 가격관행** 등 시장 왜곡요인을 검토하여 대응방안 강구
3. **특별협상그룹(Special Negotiating Group, SNG)**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2004.6월 말까지 협상
4. 비회원 조선국이 회원국과 동등하게 협상에 참여토록 노력
5. 사무국이 매 3개월마다 협상 진전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

- 2002.9월 OECD 이사회 mandate에 따라 2002.12월 이후 2005년 초까지 9차에 걸쳐 공식 특별협상그룹(SNG) 회의가 개최되고, Industry Consultation(2003.10, 동경), 가격관행관련 전문가회의(2004.3), 보조금관련 전문가회의(2004.5) 등 비공식회의도 개최
- 2005.9월 고위급 회의에서 선가규제 부문에 대한 현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의 잠정 중단에 합의

- 다만, 향후 시장여건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장동향분석 작업의 지속을 위해 조선작업반의 활동을 지속(Part II 사업)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선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일본, EU 등이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신조선협정 협상 재개 지속적으로 요청
 - 09.7월 조선작업반 회의시 협상재개를 위한 사전단계로 조선시장 왜곡요인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기로 합의
 - 09.12월 워크샵에 중국이 불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조선시장을 왜곡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함에 따라 합의도출 실패
- 10.4월 조선작업반 회의에 참석한 중국이 OECD 회원국이 주도하는 조선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도 신조선협정 협상 재개에 합의(일본, EU도 찬성)
 -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 및 조선산업 선도국가로서 더 이상 협상 재개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데 조선업계도 동의
- 10.12월 OECD 이사회는 조선작업반에서 신조선협상 mandate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신조선협상 논의 종결을 결정
 - 신조선협상 mandate 관련 pricing(가격관행)을 포함시키자는 EU측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의 팽팽한 논리대결로 합의도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선작업반 Neple의장은 신조선협상 종결을 이사회에 건의, 이사회는 이를 수용

2) 주요 의제별 우리의 기존 입장

-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간 특별협상 그룹(SNG) 회의시 합의된 원칙에 입각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현 WTO 보조금협정보다 강화된 규율(WTO plus)을 선호
 - 세부 이슈별로는 상이하지만 EU와 일본도 전체적인 보조금 규율 원칙에는 우리와 유사한 입장이나, 중국은 자국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에 대한 규율 강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

- 가격관행에 대한 규율 관련, EU 및 일본 등이 가격관행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가격관행 규율은 조선 시장의 특성상 신조선헌정에 포함되지 말아야 하며, 세계 조선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조치의 철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
- 이전까지 협상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우리나라는 협상재개의 실익(merit), 지속가능성(durability) 및 이행가능성(possibility of enforcement)을 주장하였던 바, 이들 선결조건을 협상 과정에서 명확하게 진단해야 함
 - － 특히, 우리 조선업계의 잠정적인 경쟁상대인 중국의 입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 협상재개에 대비하여 선가규제, 보조금 등 주요 이슈별 우리측 입장의 사전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신속히 구성·운영한 결과 최종적으로 협상논의 종결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됨

마. 철강위원회

- 세계 철강시장의 초과공급 및 미국 등의 보호주의 확산을 계기로 OECD 철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철강시장의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한 다자간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추후 협상 중단에 합의(04.6월)
 - －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회원국과 중국, 브라질 등 비회원국을 포함하여 38개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모두 참여
 - － 2002.12월 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03년 수차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2004.6월 고위급회의에서 시장 호황을 이유로 협상의 일시 중단에 합의
- 보조금 협상 중단이후 철강위원회에서 세계 철강산업의 주기적·구조적 문제인 과잉설비, 공정거래질서 등에 대한 정책 토의
 - － '08.10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OECD 철강위원회의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철강시장 투명성 제고 차원

에서 작성하기로 합의한 정부지원조치 등에 대한 인벤토리 보완 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향후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 철강설비의 증설과 예상보다 낮은 수요 회복에 따라 설비 과잉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임
 - 특히, OECD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추가적인 설비 증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철강시장에서의 노후설비 퇴출 등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논의 지속중
- 한편, 철강원료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등 자국이익을 강화하는 보호 무역조치로 전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강수요산업과의 정례적인 협의 지속
 - 철강분야의 지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철강수요 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계속 수정하는 동시에, 희토류를 포함한 철강원료에 대한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 지속
- 철강시장 모니터링 : 철강 공급, 수요 및 설비능력 동향 등 철강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 지역별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주요 철강 공급/수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철강시장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 추진
 - 아울러, 노후 철강생산 설비에 대한 시장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 know-how 공유
- 세계 철강교역 및 각국의 정책 동향 분석 : 지역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철강수요 회복속도에 따른 철강교역 패턴 분석 및 각각의 철강분야 보호무역조치 등 도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신흥개도국 및 일부 OECD 국가들의 철강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철강교역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교역 추세를 분석
- 철강원료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및 해상운송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 중국, 인도 등 철강원료 수출국가에서 도입한 수출세 등 수출제한 조치 및 철강원료의 해상 운송 관련 연구보고서를 World Steel Association과 공동 작성

- 철강과 환경, 철강 관련 반덤핑 제소 현황 등 철강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지속
 - OECD의 수평적 프로젝트인 녹색성장전략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철강 분야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한 철강시장 유지를 위한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

3. 개발원조

가. 논의 개요

- DAC 개혁방안, 새천년개발목표(MDG) 이행을 위한 OECD 기여방안, 취약 및 분쟁국가(fragile states and conflict situations)에 대한 지원방안, 2005년 합의한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통합성 강화방안 등 논의 중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준비: 개발효과성 프레임워크 도입, 파리선언의 미완작업에 대한 이행방안, 포괄적인 개발재원 및 개발 임팩트 제고방안 등 논의 중

나. 개발원조위원회(DAC)

1) 조직

- 설립일자 : 1961.9.30
- 의 장 : Brian Atwood (미국/2011 초 임기시작)
- 회원국 : 23개 OECD 회원국과 EC
 - 우리나라는 2010.1.1부터 회원국으로 참여(2009.11.25 가입 결정)

- 읍저버
 - OECD 회원국으로서 DAC 비회원국인 7개국(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멕시코, 폴란드, 터키, 슬로바키아)과 IMF, 세계은행, UNDP

2) 기능

-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정책에 대한 상호 협의 및 조정
- ODA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침 개발 및 권고
- 회원국들의 ODA 정책 및 사업현황 검토, 권고

3) 주요 성과

- 21세기의 개발 협력 목표 제시
 - 1996년에 “Shaping the 21st Century :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보고서 채택
- 회원국들의 ODA 사업이행에 관한 정책지침 채택 및 이행 권고
 - 개발도상국들과의 원조조정 지침
 - 원조사업 평가 원칙
 - 빈곤해소 지침
 - 개발을 위한 무역역량 강화 지침
 - 분쟁예방 지침
 - 원조구매에 관한 반부패 권고 등
-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및 공공자본의 흐름에 관한 통계 작성
-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공여국의 원조관행 모범사례 이행
- 2005년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함으로써 개도국 원조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

4) 산하 작업반

작업반/네트웍	기 능
통계작업반 (WP-STAT)	통계와 관련한 정책 이슈들인 청정개발메카니즘(CDM) 처리 여부, 세금 감면, 할인율, 공공/민간재원 흐름 등을 협의
원조효과작업반 (WP-EFF)	원조의 비구속화(Untied) 추진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이행 점검
개발평가네트웍 (EVALUNET)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해 합동평가, 새로운 평가 도구의 개발, 성과 위주 접근방식에 대한 평가 등
성평등네트웍 (GENDERNET)	성평등과 개발이슈(빈곤해소, 능력 배양 등)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
환경네트웍 (ENVIRONET)	개발협력 정책과 프로그램에 환경과 지속발전 이슈를 통합 OECD 회원국의 환경정책과 개발정책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빈곤감소네트웍 (POVNET)	민간분야, 농업, 인프라와 빈곤해소와의 연관 관계를 분석 무역역량 강화, 중소기업과 개발, ODA와 FDA간의 관계, ICT와 개발 등 광범위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토의
거버넌스네트웍 (GOVNET)	거버넌스가 구비되지 못한 개도국에 대한 분석 개도국에서의 부패방지, OECD 뇌물방지협약의 개발 측면에서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
취약국가 및 분쟁상태에 관한 네트웍(INCAF)	평화정착 및 국가형성에 대한 연구

다. 공적개발원조(ODA)와 DAC

1) 2010년도 개발원조 규모 (OECD DAC 회원국)

- 총액 및 ODA/GNI 비중 : 1,287억불, 0.32%
 - 2009년 : 1,196억불, 0.31%
- 10대 공여국들의 순ODA 규모 및 한국

국 가	2010		2009	
	ODA(\$ Mil)	ODA/GNI(%)	ODA(\$ Mil)	ODA/GNI(%)
미 국	30,154	0.21	28,665	0.20
프랑스	12,916	0.50	12,431	0.46
독 일	12,723	0.38	11,982	0.35
영 국	13,763	0.56	11,505	0.52
일 본	11,045	0.20	9,480	0.18
스페인	5,917	0.43	6,571	0.46
네덜란드	6,351	0.81	6,427	0.82
스웨덴	4,527	0.97	4,546	1.12
노르웨이	4,582	1.10	4,086	1.06
캐나다	5,132	0.33	4,013	0.30
한국	1,168	0.12	816	0.10

* 2010년 통계는 2011.4월 발표된 잠정치

2) 2010년도 ODA 추세

- 2010년 전세계 ODA는 전년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ODA/GNI 비율도 1992년 이래 가장 높았던 2005년 수준에 도달
- 2010년도 규모면에서 최대 공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순
- UN의 GNI 0.7% 목표를 초과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미국은 순ODA로 302억불을 제공한 최대 공여국으로 2009년 대비 5.2% 증가(GNI 대비 0.20% → 0.21%로 증가)
- 일본은 순ODA가 전년 대비 16.5% 증가(GNI 대비 0.18% → 0.20%로 증가)
- EU 회원국인 15개 DAC 회원국들의 ODA 총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702억불 (GNI 대비 평균 0.46%)
 - DAC-EU ODA는 전체 DAC ODA의 54%를 차지

3) 2011년 ODA 전망

- OECD에서 실시한 각국의 향후(2013년까지) ODA 기여계획에 따르면, 증가세가 1%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DAC에서는 공여국들의 원조확대 약속(2005 G8 글렌 이글스 공약) 이행을 재확인시키고 UN 권고수준인 ODA/GNI 0.7%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EU의 경우, EU 회원국들에게는 ODA/GNI 0.7% 이상을 비회원국들에게는 0.33% 달성을 촉구할 계획임.

라. DAC의 비회원국과의 협력

-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의 원조 확대추세에 비추어, DAC은 DAC 비회원국인 신흥공여국 국가들과 원조정책에 대한 정책대화를 적극 추진중
- 이는 신흥공여국의 국제 원조 기준 및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에 부합되지 않는 ODA 제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

마. 개발원조 관련 한국과 OECD와의 협력

- 우리나라는 2007.7월에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설정한 후 2009.11.25까지 가입프로세스를 거친 후 2010.1.1자로 회원국으로 가입
 - 우리나라는 가입 이전에도 2007.9월 OECD와 Non-DAC 공여국 정책대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조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DAC 회의 및 산하 작업반회의에 읍저버로 적극적으로 참여
 - 새로운 DAC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개혁그룹(Reflection Group)에 비DAC회원국으로 유일하게 회원으로 참여
- 우리나라는 향후 3년간 세계개발원조정책방향을 정하는 개발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부산, 2011.11.29~12.1) 개최 예정

- 예상 논의주제: 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반 원칙과 행동 계획의 성과 점검 ② 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개발원조 패러다임 모색 ③ 서울 G20 개발컨센서스 및 다년간 행동계획, OECD 각료이사회 개발의제 등 주요 국제포럼에서 제시된 ‘포괄적 개발(broader development)’의 국제규범화 및 이행·평가 방안 ④ 국제사회가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무역, 투자, 조세, 환경, 녹색성장 등을 포괄한 ‘광범위한 개발효과성’을 정책 패러다임으로 채택하는 문제 등

4. 금융·다국적기업·투자

가. 논의 개요

- OECD는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제적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설립시부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1961.12월 OECD 이사회 결정으로 양대자유화 규약(자본이동 자유화규약,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채택
- 한편, 투자의 자유화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개도국에서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1991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2011년 개정) 하고, 투자위원회를 통해 이의 이행 정착을 위한 점검활동 수행
- 또한, 기업의 투명성 개선과 이해당사자간 합리적 관계 규정을 위해 각 회원국들의 관행을 비교 검토하여 1999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정하고,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이행을 관리
-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및 후진국 진출 및 거래 과정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제정하고, “뇌물 방지작업반”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강화

나. 금융시장위원회

1) 설립목적

- 회원국의 금융감독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시장동향과 정책 분석, 데이터 수집 및 회원국의 모범관행 검토와 논의를 통해 주요 금융이슈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이해제고를 도모
 - － 회원국과 비회원국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건전한 금융시장의 조성 및 발전을 지원

2) 주요활동 내용

- OECD는 금융자유화 시장동향 점검과 정책 및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최소화와 구조조정에 기여
- 금융시장의 효율성·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지원
- 저축, 투자 및 성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지원
- 금융서비스의 국제거래 및 시장접근에 대한 자유화 촉진
- 금융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금융시장 법규의 정착 도모
- 금융시장 통계의 개선과 국가채무 관리정책의 개선에 기여
- 개발도상국의 개방된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비회원국들의 국제금융시스템 통합도 지원

3) 최근 주요 이슈

-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 진단 및 이와 관련된 구조적 이슈 (건전성 규제 개선, 정리기금 조성 등)

- 금융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금융교육 및 금융소비자보호
-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역할 제고

다. 투자위원회

1)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운영

- 2011.5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투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별 연락관(NCP : National Contact Point)을 구성
 - 매년 6월 NCP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동 개정 가이드라인의 이행 정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지속
- 가이드라인 이행 관련, 개도국 진출 다국적 투자기업의 활동에 대한 NCP 문제 제기 등을 계기로 최근 인권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등 기업책임을 강조하는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확정(11.5월)
 - 콩고에서의 다수 다국적기업의 천연자원 갈취 및 노동력 착취 사례, 과테말라 진출 한국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등을 계기로 OECD 차원의 개정안 실무논의는 투자위원회에서 진행

2) 투자, 자본 이동 관련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 프레임 유지 및 확대

- '투자자유화(Freedom of Investment) 라운드테이블'
 - 회원국 투자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검토, 표준 설정을 위한 포럼으로 회원국의 투자조치에 대한 보고 및 동료검토 실시
 - 자연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녹색성장투자와 국제투자법규 등과 같이 관심 높은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토론 실시
-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 OECD 비회원국의 투자자유화 라운드테이블 동등한 참여(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OECD Plus'모델 제시를 통한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추진

3) 국제투자협정과 중재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국제투자협정과 중재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합성 제고 추진
 - UNCTAD 및 ICSID(중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OECD 및 비회원국에서 도입한 국제투자협정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공통분모 도출
 - 국제투자분쟁 메카니즘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연구하고, 투자협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2012년 G20 정상회의에 보고

4) 최근의 국제투자 동향 관련 통계 및 분석 개선

- 국제투자통계 작업반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 IMF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통계측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신규 OECD 가입 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 가입후 외국인투자 통계의 변동여부에 대한 보고서 작성

라. 기업지배구조위원회

1) 설립목적

- 1999년 각 회원국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을 중심으로 ‘OECD기업 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제정한 이후 동 지배구조원칙의 확산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수행
 - 2010.4월 조정그룹(Steering Group)에서 위원회(Committee)로 격상
 -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2001년 미국 엔론사태 이후 부각된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2004년에 한 차례 개정

2) 주요 활동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당국자들이 중심이 되어 통상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되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과 회원국의 지배구조개선 모범사례를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outreach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추진
- 아시아지역에는 1999년부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Asia Roundtable을 매년 개최(201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

3) 최근 주요 이슈

- 상호평가(Peer Review) 작업
-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보완 문제 검토
- OECD내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예 : 조세, 경쟁, 규제 등 이슈 관련) 강화
- Enhanced Engagement 국가를 포함한 非OECD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4) 공기업 민영화 및 지배구조 작업반(Working Group on Privatiza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Assets)

-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공기업과 관련된 지배구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룸.
- 2005년 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
- 공기업작업반 회의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와 별도로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마. 뇌물방지작업반

1) OECD 뇌물방지협약 및 권고 현황

- 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공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OECD는 1997. 12월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한바, 2011.4월 현재 38개 회원국
 - 34개 OECD 회원국 및 4개 OECD 비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공)이 가입하였고, 러시아는 2009.2월 가입 신청
- OECD는 1994년 뇌물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한 이래, 동 권고를 1997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
 - 2009년 권고는 소규모 급행료(small facilitation payments)에 관한 사항, 외국뇌물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뇌물방지협약의 특정조항 집행에 관한 모범관행 지침”(Annex 1)과 “내부통제, 기업윤리 및 순응에 관한 모범관행 지침”(Annex 2)을 추가

2) 뇌물방지작업반 설립 및 활동

-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은 1994년 이사회권고(Recommendation)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OECD 뇌물방지협약 제12조에 의거하여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점검하고 증진
 - 협약 이행 점검은 강력한 동료검토(peer review)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며, 효과성, 동등대우, 효율성, OECD 내부 및 여타 국제 기구와의 조율 등 원칙하에 3단계에 걸쳐 진행
- 제1단계 심사는 회원국들이 뇌물방지협약 기준 및 1997년도 이사회 개정권고(Revised Recommendation)에 부합하게 국내법을 제정하였는지 평가
 - 1999.4월부터 시작하여 38개국에 대한 심사를 완료
 - 우리나라는 1998.12월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고, 1999.7월 1단계 심사를 수검

- 제2단계 심사는 국별 현장방문을 통해 각 회원국별 관계법의 실제 국내 적용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국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
 - 2001.11월 핀란드가 처음으로 2단계 심사를 받았으며, 38개국에 대한 심사를 완료
 - 우리나라는 2004.6월 호주와 핀란드를 주심사국으로 하여 2단계 심사를 수검
- 제3단계 심사는 항구적인 동료검토를 위해 2009.12월 도입된 절차로, 국가별 이슈(2단계심사시 지적된 취약점 개선정도와 2단계 심사 이후 제도적 변화)와 공통이슈(집행노력과 성과 등)에 대해 검토 및 평가
 - 2010.10월 핀란드 및 미국이 처음으로 3단계 심사를 받았으며, 2014년말까지 전 회원국에 대한 3단계 심사를 완료할 예정
 - 우리나라에 대한 3단계 심사는 2011년 중 실시 예정으로, 주심사국(lead examiner country)은 핀란드와 이스라엘

제3단계 심사 개요

- 2009.12월 “포스트 2단계 심사 절차: 3단계 심사 수행” 채택
- 심사 과정
 - ① 질문서에 대한 답변 ② 심사대상국 현장방문 ③ 예비보고서 작성
 - ④ 뇌물방지작업반 심사 ⑤ 심사보고서 발간 및 보도
- 심사팀은 주심사국(2개국) 전문가 및 사무국 직원(1~2명)으로 구성
- 질문서는 공통 사항을 담은 표준 질문서와 국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충 질문서로 구성

- OECD는 ‘공정한 경쟁의 장’ 구축을 위해 뇌물방지협약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UN, G20 등과 협력을 강화
 - UN은 2003.10월 규율 대상 범위가 포괄적인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체결하고, 2009.11월 도하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 이행 점검 메커니즘을 도입기로 합의

- G20는 2010.6월 토론토 정상회의부터 반부패작업반을 설치하고,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채택

바.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1) 설립목적

-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개방된 건전한 보험 및 사적연금시장의 발전 도모

2) 주요 활동 내용

- 보험 및 사적연금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과 회원국의 정책 사례 등 논의
- 보험과 사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제고 및 교육강화 방안 논의
- 보험·사적연금 관련 금융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 고령화에 대비한 사적연금 시스템의 강화 도모
- 대규모 자연재해 등과 같은 대형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관리 시스템 확충 방안 논의

3) 최근 논의 동향

- 보험 및 사적연금시장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장기적인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 및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보험의 기여
 - 금융위험의 증가와 동 위험의 가계로의 이전과 관련한 정책적/규제적 이슈

- 고령화, 연금, 장기저축, 연금지급 등에 관한 정책
- Enhanced Engagement 국가를 포함한 非OECD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4) 사적연금 작업반(Working Party on Private Pensions)

- 사적연금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를 목적으로 설치
-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와 연계하여 연 2회 개최

사. 경쟁위원회

1) 설립배경 및 목적

-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수렴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장의 세계화, 자유무역·투자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

2) 연혁

- OECD가 설립된 1961년부터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한적 거래관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Restrictive Behavior Practices Committee, RBP)에서 주로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논의
- 1988년 RBP를 「경쟁법·정책 위원회」(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 CLP)로 격상
 - CLP는 경쟁법·정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논의 기구로 논의내용도 경쟁법·정책의 효과적 수립 방안,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경쟁주창, 경제발전과 경쟁정책간의 관계 논의 등으로 확대
- 2001년에는 경쟁법·정책 위원회라는 명칭도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를 지나치게 기술적인 범위로 제한한다는 회원국들의 지적이 있어 현재의 명칭인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 COMP)로 개칭

3) 조직 및 운영체계

- 본회의, 제2작업반 및 제3작업반으로 구성
- 제2작업반(Working Party No.2 on Competition and Regulation)은 개별 산업분야별로 규제와 경쟁의 문제를 논의하며, 제3작업반(Working Party No.3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경쟁정책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큰 카르텔과 합병을 중심으로 논의
- 위원회 운영 개요
 - 회의개최 횟수 : 연 3회 (2, 6, 10월)
 - 논의방법
 - 사무국 문건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논의결과와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
 -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본회의 및 각 작업반회의 마다 1~2개씩 설정하여 사무국 보고서와 각국 제출 보고서를 함께 토의
 - 통상 월요일과 화요일에 작업반 회의를 진행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본회의를 개최(매년 2월회의에는 비회원국들도 참여하는 GFC(Global Forum on Competition)도 함께 개최)

4) 경쟁위원회 주요사업계획(2011~12년도)

- 가) 모범관행(Best Practice) 확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 경쟁위원회, 2개의 작업반(working party 2, 3) 및 글로벌경쟁포럼(매년 2월에 개최)은 최신의 경쟁법·정책 이슈에 관한 약 11~13개의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할 계획
- 나) 경쟁영향평가 툴킷(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및 이사회 권고문, 입찰담합 가이드라인의 이행(Implementation) 강화
 - 권고문의 이행상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2012년말에 있을 예정. 툴킷 및 가이드라인의 개선작업도 향후 2년간 진행

다) 이사회 권고문의 개정

- 경쟁위원회 소관 2개의 이사회 권고문(경성카르텔 방지, 구조적 분리)에 대한 검토 및 (필요시) 개정작업이 2011~2012년에 있을 예정
 - 전자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을 하거나, 공공조달에서의 담합과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하에) 새로운 권고문을 만들 예정
 - 후자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챕터를 추가할 예정

라)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작업

- 금융위기나 녹색성장과 같이, OECD 전체 차원에서 우선순위(Organisation-wide priorities)를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 다른 위원회와 합동으로 토의를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 비정기적 합동회의(ad hoc joint meeting), 경쟁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관계자의 참여, 경쟁위원회 대표단 또는 사무국 직원의 다른 위원회 참여 및 보고서에 대한 검토 등

마) 국가별 검토보고서(Country reviews)

- 경쟁위는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에 의한 국가별 검토보고서에서 면밀한 경쟁정책 분석과 권고를 통한 지원을 계속. 또한 경쟁위원회, 글로벌경쟁포럼, 라틴아메리카 경쟁포럼 등을 통해서 경쟁위 자체적인 국가별 검토작업도 병행

바) 비회원국과의 협력강화

- 경쟁위의 확산활동(outreach activities)은 지금까지 많은 비회원국들에게 도움. 주요 프로그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글로벌 경쟁포럼, 라틴아메리카 포럼, OECD-한국정책센터 경쟁프로그램 및 부다페스트 경쟁지역센터를 통한 세미나 개최 등

- 또한, 신흥경제국(EE)들의 중요성과 그들의 경쟁이슈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쟁법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5. 조세 정책 및 행정

가. 논의 개요

- OECD는 재정위원회를 통해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조세정책 및 집행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국제적 조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
- 국제적인 이중과세와 탈세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한편, 조세경쟁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흐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 정립

나. 재정위원회

1) 목적 및 체계

가) 위원회의 목적

- 국제적인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통일적인 과세지침 제정과 과세당국간 공조강화
- 경제적 자원의 국제적·국내적 배분 및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정책 및 집행 기준의 제시 및 상호협력

나) 위원회 운영체계

- 본회의와 10개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 Sub-Group 회의, 글로벌 포럼 및 조세행정포럼(FTA) 회의로 구성

- 각 작업반 산하에 주요 논의 주제별로 소그룹(subgroup)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작업 진행
- 필요시 소그룹 산하에 기술자문그룹 (TAG : Technical Advisory Group)을 회원국 정부대표, 기업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 기술적 의견 수렴

다) 산하작업반 활동체계

- 각 작업반별로 년 2~4회 개최, 과장급 이하 실무 대표 참석
 - 제1작업반('71) : OECD모델조세협약 및 동 주석 개정
 - 제2작업반('71) : 조세정책, 조세통계 및 수평협력사업
 - 제6작업반('73) :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실무 적용방법
 - 제9작업반('93) :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과세 논의
 - 제10작업반('10) :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 유해조세포럼의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기존 제8작업반을 확대 재편
 - 유해조세포럼('96) : 유해조세경쟁 규제 및 개선작업
 - 조세범죄TF('10) : 조세범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조세상의 대응
 - * 기존 8작업반 subgroup이었던 TCML 그룹을 작업반 수준으로 확대
 - TRACE('10) : 비거주자 원천징수 조세조약 혜택 적용 개선 방안
 - 조세행정포럼('98) : 납세자의 순응촉진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조세당국간 공동지침 작성 및 현안과제 협력논의
 - 비회원국위원회('96) : 비회원국 협력사업(global relations)
 - 정부간 재정관계 네트워크회의('03) : 지방정부 재정 이슈
- 2009.9월 OECD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구로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 설립
 - OECD 회원국은 물론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등 97개 국가가 참여(2011년 1월 현재)하며, CTPA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

2) 최근 논의사항

가) OECD 모델조세협약 및 주식 개정작업 관련

- 2008년 고정사업장 소득 귀속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 발간
 - 기존 모델협약 및 주식서 등에 명시된 고정사업장 과세지침이 신중거래의 출현 등 경제상황 변화의 반영이 미흡하고, 국가별로 구체적인 해석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 등이 있어 1998년부터 산업분야별 세부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음
 - 그동안 Part I (일반원칙), Part II (은행), Part III (글로벌 트레이딩), Part IV (보험) 4개 분야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성하였는데, 기본원칙은 고정사업장에 자산·기능·위험의 귀속 정도에 따라 정상이익(Arm's Length Profit)을 분배하는 것임
- 상기 「고정사업장 소득귀속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모델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와 주식서에 반영하는 개정작업 완료
 - 개정안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CFA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 권고안(Council Recommendation) 으로 채택
 - 2010년 7월 동 보고서를 반영한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발간
- 제1작업반(Model Tax Convention)은 2010년부터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 연예인·체육인 과세방식 등에 대한 주식서 개정을 논의 중
 - 모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과 관련,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한 논의를 위해 별도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장소에 대한 처분권한("at the disposal of"), 사업의 하도급(Subcontracting),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 구성요건, Home Office의 고정사업장 구성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WG의 논의결과를 2011년 하반기 WP1 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할 예정
 - 제10조(배당), 제11조(이자), 제12조(로열티) 등에 적용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과 관련 배당금 등의

-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논의
- 연예인·체육인 과세(제17조)와 관련해서는 영세 연예인 등을 고려하여 원천지국 과세의 최저한을 설정하는 방안, 연예·체육 활동의 구체적 범위 명확화 등을 논의

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Transfer Pricing Guidelines) 개정

- 1995년에 제정된 동 가이드라인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분야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이슈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반영, 2010년 7월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간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과 거래이익법(Profit Methods) 논의 (2003~),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에 따른 자산·기능·위험의 재배분 과정에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2006년~) 등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반영
- WP6에서는 2010년부터 무형자산(Intangibles)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 무형자산의 개념, 귀속 주체의 결정, 가치의 평가, 사후에 확인 되는 비교대상의 활용, 연성 무형자산(Soft-Intangibles) 등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초기단계 논의를 진행중

다)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제정

- 국경간 용역거래(Cross-border Services and Intangibles)에서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통일적인 부가가치세(VAT/GST)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 추진
 - 소비자 과세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6.9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자문그룹(TAG)을 운영
 - 기본원칙(Main rule)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1월 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 원칙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 현재 기본원칙을 벗어난 예외 규정(Specific Rule), 조세중립

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다수 사업장(Multiple location), B2C 거래 등에 대해 계속 논의 중

라) 유해조세제도 규제 작업

- OECD는 1996년 유해조세포럼을 설치하여 조세피난처 및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 2000.7월 조세피난처(35개) 명단 발표에 이어 2002.4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7개) 명단 재발표
 - 회원국의 잠재적 유해제도 (22개국 47개 제도)는 2007. 1월에 모두 제거

◆ 조세피난처(Tax haven) 및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regime)의 특징

- i) 비과세 또는 명목적 과세(no or nominal taxes)
- ii) 투명성 부족(lack of transparency) - 예컨대, 은행정보 접근 거부
- iii) 실질적 정보교환 부족(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 iv)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 실질적 활동 결여(no substantial activities)

- 2003년부터는 조세피난처를 포함,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포럼을 개최하여 투명성 및 실질적 정보교환 원칙과 관련한 OECD 기준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매년 평가

◆ 투명성과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OECD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모델협정(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2002)과 OECD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2005) 제26조에 상세하게 규정
-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세범죄 및 일반과세 목적의 모든 정보를 교환(Requires exchange upon request in both criminal and civil tax matters)
 - * 은행비밀보호(bank secrecy) 또는 국내 조세상 이해관계(domestic tax interest)와 같은 제한이 정보교환 거부의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 정보유형: 금융(bank), 소유자(ownership), 신원(identity) 및 회계(accounting)

- 유해조세경쟁포럼은 2010년부터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는 WP8을 개편한 WP10으로 이관하고 유해조세제도 분석 및 방어 조치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 90년대 후반 이루어진 회원국 유해조세제도 분석 작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2011.1), 회원국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비회원국으로 검토 대상을 확대할 예정

다.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1) 진행경과

- 2000년 이후 2009년 4월 G20 런던정상회의까지 총 65개의 조세 정보교환협정(TIEAs)이 체결되는데 그쳤으나, 동 회의 이후 OECD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조세조약(DTCs) 개정 협상이나 정보교환협정 체결이 급격히 증가
 - * 2010년 9월 현재 540여건 체결
- 2009년 아래 사건들을 통해 OECD 기준이 보편적으로 승인됨
 - (i) 4개 OECD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은 그동안 반대해왔던 OECD 모델조세협약 제26조의 유보(Reservation)를 철회하였음
 - (ii) OECD 기준을 승인하기를 거부해 왔던 3개의 비협조적 조세 피난처(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가 2009.3월에 마침내 이를 승인하였음
 - (iii) 2009.4.2 G20 런던 정상회의 직전까지 OECD 기준의 이행을 확약하지 않았던 4개 글로벌 포럼 국가들(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이 비협조적 지역 명단(NCJs lists) 발표 이후에 곧바로 이를 확약하였음
 - (iv) OECD 모델협약 제26조에 유보 입장(Positions)을 달았던 OECD 비회원국들(브라질, 칠레, 태국 등)이 유보 입장을 철회하였음

- (v) UN도 제26조의 개정 내용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OECD 기준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Internationally agreed standard)으로 간주될 수 있음

2) 글로벌포럼 체계의 전면 개편

- 「투명성과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이하 글로벌 포럼)」은 국제 기준의 이행에서 이룬 성과와 글로벌 포럼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였음
 - OECD, G20 및 기타 지역들(2010년 말 현재 총 96개 국 참여)이 모두 참여하도록 OECD Part II 프로그램으로 개편
 - * 즉, 글로벌 포럼의 운영 비용은 동등한 자격(on equal footing)을 갖는 각 회원국들이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해 조달됨
 -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CTPA)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전담 사무국 조직을 운영
 - 투명성과 조세 정보교환 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In-depth monitoring) 및 동료검토(Peer review)를 수행함
 - 정보교환 협상을 신속하게(speed up) 하기 위해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s)을 개발함
 - 개도국들이 보다 투명해진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글로벌 포럼은 모든 회원국들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기타 지역들에 대해 동료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기 위해 3년 기간의 임무를 부여받았음
 - 동료검토는 2010.3월부터 시작하여 2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법적 체계(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2단계는 기준의 실질적인 이행(Practical implementation)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당해 지역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권고 사항들이 포함됨

- 모든 지역들은 2012년 6월 이전에 1단계 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2단계 심사는 2014.6월까지 종료될 것임
-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은 포럼 작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15개 지역이 참여하는 Steering Group과 30개 지역이 참여하는 Peer Review Group을 설립함
- 2011년 3월 현재 18개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2011년말까지 약 60여개의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

3) 최근 추진동향

- OECD는 현재 정보교환 이행 절차를 신속화 하고, 적합한 정보교환 네트워크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한 가지 방향은 양자 정보교환협정(Bilateral TIEAs)의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 프로젝트로서, 100개 이상의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예정
 - (i) 카리브해 북부 지역 프로젝트 : 영국의 조울 하에 11개 OECD 국가와 Anguilla, Montserrat, Turks, Caicos Islands 등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
 - (ii) 카리브해 남부 지역 프로젝트 : 네덜란드의 조울 하에 12개 OECD 국가들과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Grenad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Antigu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등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
 - (iii) 태평양지역 프로젝트 : OECD 사무국의 조울 하에 18개 OECD 국가들과 Cook Islands, Marshall Islands, Nauru, Smaoa, Vanuatu 등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을 추진
 - 두 번째 방향은 다자간 협정인 OECD-EC 상호 조세 행정협력 협정(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대한 가입을 확산하는 것으로, 2011년 2월말 현재, 총 19개국이 동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1년 6월 발효하게 되며, 향후 비회원국의 동 협정 가입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 현재 OECD 차원에서 모델조세협약 상 정보교환의 적용요건과 기준 등에 대한 명확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음
 -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자동 정보교환, 다수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정보사냥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이자,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의 요청으로 2009.10월부터 OECD 제10작업반(개편전 제8작업반) 회의에서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 해석의 명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제10작업반은 스위스 등 소수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름이나 주소가 없는 정보 요청, 납세자 집단에 대한 정보 요청 등에 대하여 모델조약 제26조에 부합하는 정보요청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석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6. 노동·사회

가. 논의 개요

- OECD는 고용증진, 노동시장 정책연구, 이주정책, 직업훈련, 사회 보험제도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와 논의를 진행
 - 특히, 회원국들의 높은 실업율을 감안하여 1994년 「Jobs Strategy」를 발간
- OECD는 보건위원회를 통해 회원국들의 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보건분야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수립하여 왔으나, 2007년 가입 11년만에 우리 노동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받고 모니터링 종료

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1) 위원회 개요

가) 연혁

- '61.9.30. 인력위원회(Manpower Committee)로 출발하여 인력 사회문제위원회(Manpower & Social Affairs Committee)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91년부터 현재의 명칭(고용노동사회위원회 ; Emplo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ELSAC)을 사용

나) 설립배경

- OECD 출범과 동시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인력 및 사회정책 분야 이외에 유럽지역 인력동향 파악업무도 담당
- 고용노동사회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로서 노동시장, 국제인력이동,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분석, 정책연구 및 관련통계 DB 구축 등을 수행
- 교육훈련 분야는 교육위원회(EDC)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에서 주로 담당하나, ELSAC과의 공동사업이 증가 추세

다) 주요 기능

- 고용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연구, 각국의 정책경험, 정보교환
- 노동시장정책, 외국인고용 등 이주정책, 직업훈련 및 여성고용 확대 방안 등 분야별 정책 비교분석 및 관련통계 구축
- 연금제도, 사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장애인복지제도 등 사회 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각국의 정책경험 비교분석
- Employment Outlook,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Pension at a Glance, Society at a Glance를 매년(또는 격년) 발간하고 있으며, 연구주제별 연구결과를 Working Paper 또는 책자 형식으로 출간

라) 회의운영 및 참여국가

- 정례위원회 연 2회, 필요시 확대 의장단회의 수시 개최
- 34개 OECD 회원국 및 사안별 observer(가입후보국 및 관계 강화국, Council of Europe, ILO, WHO 등)
- ELSAC 회의 중 1~2개 안건에 대해서는 TUAC/BIAC도 전문가로 참여

마) ELSAC 산하에는 3개의 작업반을 운영 중

① 고용작업반(WP on Employment)

- '76.7.6 설치, 활동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년 「OECD Employment Outlook」 발간
-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용정책 기조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94년의 Job Strategy를 수정한 Reassessed Job Strategy를 2006년 발표
- 고용정책 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의 교류도 매우 활발

② 사회정책작업반(WP on Social Policy)

- '83.12.14 설치되었으며 연금개혁, Welfare-to-work, 가족, 아동빈곤, 공적부조 연구 등을 담당
- 한국에 설치된 OECD 한국센터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연금, 사회정책을 분석하는 작업도 활발
- 작업반 회의는 매년 가을 ELSAC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이 관행

③ 국제이주작업반(Working Party on Migration)

- ELSAC 산하 작업반으로는 가장 먼저인 '67.2.9 설치됨
- OECD 회원국의 노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 회원국의 외국인력 관리 등 국제이주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행함

- 작업반 회의는 6~7월 개최, 수시로 지역별 세미나 개최(일본 세미나는 매년 1~2월 개최)

※ 산하에 국제이주통신원(SOPEMI) 회의를 매년 12월 개최

※ 참 고

- 노사관계 : '92년 노사관계작업반이 활동을 중단하고, '98년 최종 폐지됨에 따라 현재 OECD가 노사관계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노사관계업무는 ILO로 일원화됨
- 여성정책 : 여성(의 경제적 역할) 작업반('74.7.11)이 있었으나 '99년 이후 폐지됨. 현재 별도 작업반은 없고 각 연구 분야 별로 성별 분석을 행함.

2) 주요 사업 내용

가) 개관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강화,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고용률 증진에 초점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가능성 제고 및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 방안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근로자 등 가용인력의 최대 활용과 능동적 노동시장 참여 유도
 - 장기적으로 교육·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 기능형성, 평생학습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노동력 이동을 촉진 하는데 역점
 - 연금개혁 등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 최근 경제위기 이후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완만하고 불확실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위기 극복이 핵심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위기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및 노동력 이동에도 관심

나) 최근 사업내용

○ 고용전망 및 노동시장 정책 분야

- 각국 노동시장 정책,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정책, 실업·장애 급여 정책 등의 발전을 비교·분석하는 고용전망 발간
- 2009년 OECD 노동장관회의 커뮤니케이션에서 mandate를 받은 사항으로, 고령자의 조기퇴직 방지방안, 고령자 고용가능성 제고방안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촉진에 관한 연구
- 2006~2009년 진행된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프로젝트 후속으로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 2007년부터 진행한 실업자 활성화 대책 관련 국가 리뷰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11년 하반기)
- 관계강화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도 근로자와 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심층 분석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력 이동 전망, 이에 대응한 노동시장정책 등 녹색일자리 연구

○ 성인 직업능력개발 분야

- 직업능력 수요 및 기술, 작업조직, 기업전략, 세계화 국가제도 등 직업능력 수요 변화요인에 관한 정보 축적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 개발
-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인적자원 활용 부족 실태 및 활용 증진 정책, 비전형(atypical) 근로의 증가가 훈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향 등 연구
- 2011년부터 이직비용을 최소화하며 실직근로자를 적절한 일자리로 재배치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 등 실직근로자의 전직 지원정책 연구

○ 이민정책 분야

- 국제이주 경향 개관, 국가별 이주정책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국제이주전망(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발간
- 이주자의 사회통합 측정지표 개발, 이주자 통합과 관련하여 이주자의 교육성과, 노동시장성과 검토 등 이주자 및 자녀의 노동시장 통합 연구
- 이민자의 노동시장 성과, 이민 전 학습비용, 재이민 시 사회 보험의 이전가능성 등 이민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 노동이민 관리에 관한 국가 리뷰(스웨덴, 벨기에, 멕시코 등)
- OECD 국가의 이민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DIOC(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업데이트

○ 복지 및 사회통합 분야

- Pensions at a Glance 발간, 연금전망(Pensions Outlook)의 2개 장 작성, 연금 데이터베이스 발간, 인구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개선 연구
-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통합 분석하는 Society at a Glance 발간, 가족 데이터베이스 발간, 아동에 관한 국제데이터의 유효성 평가, 정책변화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
- Tax-benefit 정책 데이터베이스 발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급부 수준과 근로유인과의 관계 분석, 사회적 급여체계에 관한 국제비교 가능성 연구 등
- 빈곤실태(Poverty Profiles)에 관한 국가리뷰, 소득분배에 관한 통계기반 개선, 경제위기가 불평등·빈곤·재분배에 미친 영향 연구, 소득불평등 완화에 관한 연구
- 여성의 경제적 기회확대를 위해 고용(Employment), 교육(Education),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세 가지 분야에서 양성(gender) 평등에 관한 연구('10년 OECD의 중점추진 사업의 하나)

다.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

1) 위원회 개요

- 회원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건프로젝트를 200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 2004.5월 보건장관회의에 종합보고서(Health Report)를 제출하고 사업을 종료
- 2004년 말 활동기한이 종료된 보건특별그룹(Ad hoc Group on Health)을 보건그룹(Group on Health)으로 전환하여 2006년 말까지 후속 보건 프로젝트를 추진
- 2006년 말 이사회에서 보건그룹을 보건위원회(Committee on Health)로 변경함에 따라 2007년부터 정식 Committee로 출범
 - 보건위원회 산하의 회의로서는 보건계정 전문가 회의, Health Data 통신원 회의, 보건의료의 질 전문가 회의 등이 있음
 - ※ 2010.10.7~8 OECD 보건장관회의 개최(주제 : 예산 제약하에서의 보건시스템 우선순위, 예방, 의료의 질 등)

2) 주요 사업 내용

가) 개관

- 보건위원회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음.
 - 의료시스템의 국가간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건 Data수집 및 신뢰성 있는 의료비용 산정을 위한 보건계정 구축 작업
 - 의료·국민건강수준의 향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보건의 질 지표(HCQI) 개발, 보건정보시스템 강화, 등 보건시스템 향상 연구
 - 보건시스템 특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건의료 투입, 산출, 비용 데이터간의 연계 등 보건시스템 효율성 증진

- 만성질환예방, 비만 예방, 알콜남용 예방 등 보건정책에서의 예방의 역할 연구
- 보건의료의 접근성 및 이용에 관한 비교연구
-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의 이주문제, 보건분야 직업수요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 보건 및 보건시스템 모니터링
 - 보건계정시스템에 기초한 보건지출 및 재정 데이터, 현재의 보건 상태 및 위험요인, 보건의료 자원 및 활동, 제약부문, 사회 보호 등에 관한 데이터를 담은 OECD 보건데이터(Health Data)를 인터넷 및 CD-Rom을 통해 배포
 - OECD 보건데이터의 핵심 지표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는 OECD Health at a Glance를 격년 발간
 - 2011년 보건계정시스템(SHA) 매뉴얼 개정판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기초한 새로운 설문서를 작성하고, 2012년 테스트를 거쳐 2012년 말 확정할 계획
 - 보건 구매력지수(Health-specific Purchasing Power Parities) 개발을 통한 보건 산출량 규모 비교 측정
 - 보건의료에 있어서 ICT의 활용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핵심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 모델(model survey)를 개발
- 보건시스템의 질 향상
 - 응급진료, 만성질환진료, 전염성 질환의 예방의료, 정신건강 관련 데이터 수집 외에 환자안전, 환자경험, 예방·건강증진·일차진료 등 보건의료의 질 지표(HCQ) 업데이트
 - 전자의료기록 설계와 성과 관련 데이터 산출을 위한 전자기록의 활용 등에 초점을 둔 각국 보건정보시스템 검토
 - 암 생존율과 각국의 암 진료 구조, 자원, 보건시스템 특성, 사회경제 및 행태 등과의 상관관계 비교연구
 - 장기요양(LTC)의 질 모니터링 및 통제시스템, 질 규제, 종사자 훈련 정책 등 장기요양 시스템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 국가별 의료의 질에 관한 접근방식과 개혁 방안을 리뷰

○ 보건시스템 효율성 증진

- 전반적인 보건지출 및 각 구성부문별 국가간 비교를 통해 보건시스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특히 병원/입원 부문에 있어서 투입(자원), 산출(활동/서비스), 서비스 비용(가격) 데이터 간의 연계 강화 방안 연구
- 2009~10년간 구축된 보건시스템 특성(Health system characteristics)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범위 확대, 일부 측정방법 개선, 자료 업데이트 등
- 의료 관행의 지역별 차이와 원인 분석을 통해 보건시스템의 질과 효율성 향상 방안 연구
- 공공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미개척 분야인 정신건강 영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정신건강 지불 시스템 혁신, 일차 진료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정신질환 치료 저해 원인 및 극복, 예방 등)

○ 보건정책에서의 예방의 역할 강화

- 기존 CDP(만성질환예방) 모델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만성질환 분야 대책간의 효과적인 조합을 찾기 위한 평가모델로 확대
- 비만 예방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CDP 모델을 활용하여 알콜 남용 예방 정책 검토

○ 보건의 형평성 제고

- 소득 또는 교육 수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이용 가능성과 이용률의 불평등 조사,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간의 관계 등 보건의료 접근성에 관한 비교연구

○ 보건인력정책

- 보건분야 직업능력 및 일자리 현황, 향후 직업능력 및 자격요건 전망,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등 보건분야의 직업 수요와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인력 이주 모니터링, 의사의 지역적 분포에 미치는 정책 분석 등

7. 공공행정, 규제개혁 및 지역개발

가. 논의 개요

- OECD는 경제활동의 심판자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여 창립시부터 회원국들의 공공행정 발전, 지역개발 및 규제개혁을 위한 다방면의 작업을 수행
 - 특히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추구와 함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등 핵심가치 유지를 위한 노력도 논의되고 있는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반부패 내지 청렴성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음
 - 아울러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역차원의 개발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도 논의
- 이러한 논의를 위해 OECD내에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와 지역개발정책위원회(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가 각각 활동 중이며, 각 위원회 산하에 세부 아젠다별로 다양한 작업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사무국에서도 부서를 두고 있음(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나. 공공행정위원회

1) 개요

- 설립배경 및 목적
 - 회원국의 공공부문 관리정책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상호 공유 및 논의함으로써 공공부문 운용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
 - '61년 설립시에는 PUMA(Public Management Committee)로 지칭되다가, 시장의 역할과 시민참여가 확대되면서 '04년부터는 PGC

(Public Governance Committee)로 개칭

- OECD 34개 전회원국이 참여하며, 당초 옵저버인 4개국(브라질, 우크라이나, 이집트, 모로코) 외에, '11년부터는 13개국이 추가로 임시옵저버(ad hoc observer)자격으로 참여 예정(러시아, 튀니지, UAE,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주요 정책이슈 및 대응

- OECD의 핵심 우선 순위인 위기 대응, 혁신, 녹색성장, 반부패, 글로벌 협력, 50주년 기념행사 등의 맥락을 수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공행정분야 아젠다에 대해 논의 중
 - Integrity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경주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정직성 내지 청렴성, 반부패는 정책성과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므로 핵심주제로 논의
 - Assessing the results of reform : 경제위기 극복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정부운영 등 회원국의 공공부문 혁신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Government at a Glance'라는 형태의 보고서로 공표('11.5월 발표 예정)
 - Open & Inclusive Policymaking : 정책결정 과정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는데, 특히 시장의 참여 및 시민단체와의 대화 강조
 - Improving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 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지방 등 각급 정부단위 간 대화와 정보공유 및 협력촉진을 위한 제도적 수단 모색
 - Global cooperation : 기존의 34개 회원국 외에 러시아 가입심사가 진행중이며, 북아프리카·중동지역(MENA), 남미지역(LAC) 및 아프리카 지역과 개발협력을 강화
- 2011/2012 사업 및 예산계획은 ① 긴축재정 시대에서의 공공 서비스 제공 ② 역동적인 공공 부문(통합적 성과지향적 접근, 인력 관리와 역량 형성을 위한 정부간 협동,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 협조 및 전자정부를 통한 공공부문의 개조 등) ③ 전략적·개방적 정부 ④ 정부성과 지표(Government at a glance), ⑤ 국가 리뷰(아일랜드, 핀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에 중점을 두어 집행
- 동 위원회는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지역 개발정책 위원회(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등 위원회와 수평적 협조 체제를 강화
 - 이외에 공공관리 개선, 인적자원관리 개선, 전자정부 촉진, 공직윤리 제고 등 분야별로 사업을 지속 추진
 -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공공거버넌스 개혁사업’ 추진
 - 비회원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분야별 6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5년간(2011~15년) 추진 계획안을 마련
 - ※ 우리나라는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작업반(WP2)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1년 하반기에 OECD-MENA 고위급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 예정임
 - 위원회의 각종 회의 및 작업반활동에 우리나라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하여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학습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개혁성적을 홍보·공유

다. 규제정책위원회

1) 규제정책위원회 설립 배경

- 2009년, 규제정책그룹(GRP, Group on Regulatory Policy)을 폐지하고,
 -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산하 규제개혁 작업반(REG, 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을 규제정책위원회로 격상
- 2009.11월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제1회 회의~2011.4월 제4회 회의 개최

2) 주요 사업계획(2011~2012년도)

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기반(Regulatory found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 국제적 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a forward-looking project)과 관련하여서는, 초국가적, 글로벌 접근을 요하는 복잡한 이슈들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적 관리도구, 기관, 지표 및 관행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
- 정책일관성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to policy coherence)나 증거에 의한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과 같은 핵심도구들(core tools)에 대한 공헌도 계속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규제영향평가(RIA)를 보다 강력하게 통합하게 되면,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적응적인 해결책(adaptive solution)을 설계하고, 갈등적인 정책목표를 조정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접근법은 예컨대 환경이슈에 대한 OECD 위원회간의 수평적 협력기회를 제공
- 미래규제개혁(future regulatory reform)은 기업과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서류작업을 줄이는 노력이며, 행정간소화(administrative simplification)는 각종 행정부담(비용)을 감소하는 노력으로 이해 가능함.
 - 기업에게 중요한 혜택을 주는 간소화 프로그램은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음. 각국은 지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준수 비용이 드는 이러한 관행을 확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초안(the draft programme of work)은 위험을 수반한 집행(risk-based enforcement)의 잠재력과, 준수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안

나) 규제관리의 트렌드(Trends in regulatory governance)

- 각국 정부는 책임성, 투명성 및 개방성(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openness)에 대한 증가된 수요에 직면하고 있음. Web 2.0과 기타 웹베이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관계를 변화(modify)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다) 규제개혁과 경쟁력(Regulatory Reform and Competitiveness)

- 규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이행은 경쟁력을 강화시킴. OECD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분석적 작업, 의사소통 및 규제정책커뮤니티의 전문성을 통한 권고를 습득하도록 도와줌. 현재 이러한 노력은 특히 멕시코와 그리스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접근은 어느 회원국에게도 가능한 것이며, 규제정책을 다른 분야별 정책에 연계할 수도 있음

라) 규제정책 원칙 및 주요 방법(Regulatory Policy Principles and Core Methods)

- 위원회는 각국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 방법(core methods)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고, 동료검토교육(peer review learning)에 대한 혁신적 접근을 육성할 것임.
 - － 동료검토과정은 OECD 비교우위의 확고한 원천으로 남아있음. 동료검토는 대상 개별국가에 대한 OECD의 관련성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가에는 광범한 교훈을 제공함
- 위원회는 26개 이상의 검토(reviews)에 따른 원칙들(principles)의 개정과 더불어 EU 15개 국가에 대한 최근의 규제관리능력 평가를 완성하여야 함. OECD 정책커뮤니티에서의 규제정책위원회(RPC)의 폭넓은 관련성을 반영하기 위해, 2005년 OECD 가이드라인(Guiding Principles on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 또한 APEC-OECD 통합체크리스트에 대한 개정도 필요
- OECD 규제정책작업의 폭넓은 관련성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검토와 토론을 요구함. 주요 적극 관여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과의 정책 연계, APEC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네트워크(MENA)와의 정책대화 등이 그 예임

라. 지역발전정책위원회

1) 개요

- 지역경쟁력 제고, 거버넌스 증진, 정책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어 도시·농촌 지역정책을 발전시키고, 회원국간 정책경험을 공유함을 목적('99년 1월 설치)
 - 회원국 외 읍저버 3개국(칠레, 남아프리카, 모로코)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포럼·지역정책리뷰·정책보고서 발간 등 활동
- OECD 지역정책 논의기조(paradigm)
 - 보조금 위주(subsidies)의 지역정책보다는 지역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investment)에 중점
 - 분야별 연계 및 지역에 기반한(multi-sectoral place-based) 정책
 - 지역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역·민간 등의 다차원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형성

2) 주요 정책이슈 논의동향

- 지역발전 핵심요인인 '지역혁신, 다차원적 거버넌스'를 위주로 지역리뷰(review)를 통해 사례검토 및 정책권고 제시
 - 지역의 경쟁력 우위 및 지역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혁신활동(innovation)을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논의
 -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다차원적 거버넌스 증진이 정책효과성의 주요수단
 - ※ 한국 관련 지역정책검토 사례
 - 한국 지역리뷰('00~'01), 부산리뷰('03~'04), 서울리뷰('04~'05), 동북아지역 도시들간의 초국경적 연계('09), 한국 도시정책리뷰('10 진행 중)
- 최근에는 “효율성, 형평,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책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마련에 논의 중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문제 악화 등 사회적 이슈 부각, 시대적 요구인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경제” 등에 대응 필요
- 한편, 재정긴축 및 고령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투자의 효율화제고방안 논의도 주요이슈

마. 지역경제고용개발협력프로그램(LEED)

1) 설립배경

- '73년 및 '79년 2차례의 석유파동 과정에서 실시된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OECD 회원국 실업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회원국간 협력을 통해 고용증진에 관한 정책경험을 공유할 필요성 증대
 - 동시에 '70년대 후반부터 다수의 OECD 회원국이 지방자치제를 본격 실시함에 따라 지역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 제고
- '82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주창에 따라 지역고용 문제를 전담할 프로그램(Programme for Local Employment Initiatives)을 설립
 - 그 후 지역고용문제를 경제와 연관시켜 전체적으로 연구·검토할 목적으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참가자들도 경제, 고용 및 산업정책 담당자들로 전환
- LEED는 현재 회원국의 자발적 분담금(연 27천~150천유로)에 의해 운영

2) 회원국 참여 및 운영

- 총 34개 회원국 및 3개의 국제기구(EC, World Bank, EBRD)가 참여 중
 - 한국은 OECD 가입 당시부터 2007.12월까지 불참하여 오다가 2008년에 가입

- 주요 정책결정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Directing Committee)에서 행하며 OECD 사무국(CFE)은 연구 및 행정활동을 지원
 -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되며 동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연중 세미나 및 조사 활동 추진
 - 한편, LEED의 특성을 감안, 회원국 정부 차원의 활동 이외에 지방정부, 지역고용·경제와 관련을 가진 각종 연구단체, 민간기업 등 100개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및 정보교환 등을 실시하는 『Partners Club』과 4개의 Forum을 운영 중
 - ※ 4개 포럼: ① Forum on Partnerships and Local Governance ② Forum on Entrepreneurship ③ Forum on Social Innovation ④ Forum on Development Agencies and Investment Strategies
- 사무국은 CFE(Center for Entrepreneurship, SMEs and Local Development)로서 ① 중소기업 및 기업혁신과 ② 관광과 ③ LEED로 이루어져 있으며 LEED 분야의 인력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
 - ※ LEED는 이태리 Trento에 지역센터를 두고 운영위원회 이외의 회의는 Trento에서 수시 개최

3) 주요 사업 내용

- LEED는 지역차원의 자발성, 창의성에 바탕한 지역개발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
 - 지방 차원의 고용 및 직업훈련 증진 방안 모색,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경제성장, 고용증진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 분석을 행함
- 지역의 시각에서 구조적 실업, 소외, 주변화, 빈곤 등 문제를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
- 최근 LEED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역 고용과 직업능력, 기업가 정신, 지역공동체 개발, 사회적 혁신

8. 환경,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

가. 논의 개요

- 1970년 환경위원회 설립이후 OECD는 환경분과에서 3~5년 주기로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환경논의를 강화
- OECD 환경논의는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
- 또한, 환경관리분야에서 화학물질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유해성 평가, 실험실 관리, 사고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9.6월 녹색성장선언문 채택에 따라 OECD 전위원회 차원에서 해당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와 함께 녹색성장과의 관련 업무를 진행
- 한편, DDA의 무역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무역위와 공동작업반을 설립, 무역정책과 환경정책간 관계를 논의

나. 환경위원회

1) 환경정책위 및 작업반 개요

- OECD의 환경논의는 환경정책위(EPOC), 화학물질위(CC), 산하 7개 작업반과 화학분야 작업반 산하 6개 실무작업반, 농업·무역 관련 3개 공동작업반 등에서 진행중
- 환경정책위(EPOC)는 기후변화, 물 문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한 전망 및 대응 방안 모색,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기술 혁신과 확산, 환경자산 보존, 정보 및 경험 교환, 회원국의 환경성과 평가, 국제 기구와 개도국 및 NGO와 협력 사업 등을 전개. 현재 산하 주요

작업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기후, 투자, 개발 작업반(WP on Climate, Investment and Development)
 - 환경정보 작업반(WP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 환경과 경제 정책 통합작업반(WP on Integrat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Policies)
 - 환경성과 작업반(WP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 생물다양성, 물, 생태계 작업반(WP on Biodiversity, Water and Ecosystems)
 - 자원생산성과 폐기물작업반(WP on Resources Productivity and Waste)
 - 화학물질, 농약, 생명공학 작업반(WP on Chemicals, Pesticides and Biotechnology) :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s Committee)와 합동회의(JM) 개최
- 조세, 무역, 농업 등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세와 환경 전문가, 무역과 환경, 농업과 환경 공동회의 등 3개의 공동회의를 운영
 - IEA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전문가그룹회의(CCXG)를 운영하며, 사무총장 직속의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그룹과는 협력관계를 구축
 -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화학물질 위원회(Chemicals Committee)와 산하에 제조나노물질 작업반(WPMN), 우수실험실 작업반(WGGLP), 농약 작업반(WGP), 화학사고 작업반(WGCC), 실험 가이드라인 국가조정자 작업반(WNT), 생명공학규제조화작업반(WGHROB)이 운영중이며, 이외 배출량조사, 위해성 및 유해성평가 T/F를 둠

2) 환경정책위 주요 활동

- EPOC의 주요 의제는 크게 장기 환경전망 및 환경전략 수립, 환경 및 경제정책과의 통합,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세계화와 환경, 환경성과 평가, 화학물질 관리, 비회원국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

- 2004년 4월 개최된 환경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의 OECD 환경전략 이행 상황을 점검, 2008.4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의 환경 전망을 예측한 「OECD 환경전망 2030」 보고서의 주요 도전 요소를 논의하였으며, 2012년에 차기 환경장관회의 개최 예정
- 2009년 2월 환경정책위(EPOC) 정기 회의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환경적 측면을 논의하여, 2009.6월 OECD 각료 이사회(MCM)에서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에 기반을 조성
- 2009년 5월 개발과 환경(DAC-EPOC) 고위급 회의(HLM)를 개최 하여 ①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 ②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및 역량 개발, ③ 상하수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④ 녹색성장과 개발 문제를 논의하여, 개발과 환경 분야의 통합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사업 진행
- 2010.4월 EPOC 논의에서는 산하 작업반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현행과 같이 개편하여 2011년 1월부터 적용
- 2011.2월 EPOC 회의시에는 러시아 환경분야 가입심사, 환경전망 2050 작성방향, 21세기 첫 10년간의 OECD 환경전략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 작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고위급 정책 토론회 개최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그간의 참여 현황
 - 우리나라는 1993년 7월부터 동 위원회에 옵저버로 참여하였고 '96년 12월 OECD 가입이후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 OECD 가입시 60개 환경관련 규정중 12개 규정(화학물질 10개, 폐기물 2개)을 조건부로 수락하였으나, 2002년까지 이행을 완료 하고 '03년 11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정 이행에 관한 최종보고를 마쳤음
 -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 환경정책 전반에 관하여 두 차례 환경 성과평가를 받았음

- 1997년 OECD 가입 직후 제1차 환경성과평가
- 2006년 2차 환경성과평가 완료
- 2009년 2월, 2차 환경성과평가의 중간평가 완료
 - ※ 2013~14년경에 제3차 환경성과평가 예정

○ OECD 참여 활성화

- 환경정책위, 화학물질위와 산하 작업반, 실무작업반에 본부 국장급 또는 과장, 사무관, 전문가 등이 활발하게 참석
- 아울러 의장단, 전문가 지원, 공동사업 진행, 자발적 기여금 제공 ('08년 4.9만 유로, '09년 4.6만 유로, '10년 6.6만 유로), OECD 관련 세미나 개최(매년 1회) 등 OECD와 협력중
- 중국 환경성과평가에 자발적 기여금 기여, 일본 환경성과평가시 전문가 지원,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도권총량제, 수자원 관리 우수 사례 작성 제출 등 OECD 사업에 적극 참여

다. 최근 작업 동향

1) 회원국 평가, 환경지표 및 전망

○ 환경성과 평가

- OECD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비회원국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 1차 환경성과 평가는 1993~2000년간, 2차는 2001~2009년간 실시하였으며, 3차 평가는 일본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실시
 - ※ 1993년부터 현재까지 35개 국가에 대해 60회 이상의 평가 완료
- 우리나라는 1997년에 1차 평가(환경시설 설치, 환경기준 강화 등 55개), 2006년에는 2차 평가(환경친화적 조세 개편 등 54개 권고)를 받았으며 2009.2월에는 중간평가를 받았음
 - ※ 2011년 평가 대상 :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 ※ 2012년 평가 대상 : 슬로베니아, 독일, 멕시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 환경정보 및 지표

- 국내 및 지구적 차원의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 환경 정보와 지표를 제공하는 작업 수행
- OECD 지표는 환경에 대한 압력(Pressure) - 환경 상태(State) - 정책 대응(Response)의 PSR 체계로 구성되어 정책당국자 및 대중들의 이해를 제고

- 환경 전망

- 2008.4월 OECD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OECD ENV- Linkage 모델을 이용하여 2년간 작업을 통하여 2030년까지 환경전망 예측치를 발표
- 2012년 OECD 환경장관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4대 과제(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보건)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환경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작업중(2010년부터)

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 글로벌 차원의 효율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전망, R&D 영향, 경쟁력, 보조금, 무대응 비용, 저감 비용 등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방향을 제시
- 2009.9.18일 「기후변화 저감의 경제학 - 2012년 이후 지구적 실천을 위한 정책과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상, G20 정상회의 등에 영향을 미침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편익과 비용 분석, 적응 분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 개발, 개발협력에서 기후대응 통합 방안 등 기후변화 적응의 경제적 측면에 관해 연구
- 2009.5.28~29일 OECD 「개발과 환경 고위급회의(HLM)」에서 「개발협력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통합을 위한 정책 선언」 및 정책 지침서를 채택

○ 도시와 기후변화

- 도시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진행
- 2010년도에 인도 뭄바이, 덴마크 코펜하겐의 홍수 위험도 평가 및 대응 방향, 지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정책 사례 보고서 발간 예정

3) 생물다양성과 물

○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손실은 2030년 OECD 환경전망 보고서에서 최우선 대응 과제(red light)중 하나로서, OECD는 생물다양성의 가치 추정 및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지속가능이용 측면이 포함된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측면의 연구를 진행중
-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비용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산림 훼손과 벌채 방지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REDD)과 관련한 인센티브,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중임

○ 물에 관한 수평적 협력사업

-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 목표(MDG)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OECD에서 2007년부터 수평적 협력사업(HWP)으로 물 사업을 진행
- OECD는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경제적 측면,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응방향을 강조하여 연구하며, 2007~2008년에는 상하수 부문의 재원 조달 방안, 2009~2010년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 2011~2012년에는 물과 녹색성장, 물과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연구 수행중

※ OECD 물 프로그램은 환경국, 개발협력국, 기업금융국, 농업무역국, 통계국 등 여러 부문이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진행(Horizontal Water Program)

4) 환경 혁신

○ 기업에 의한 환경 혁신

- 환경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환경 혁신 촉진을 위하여 OECD는 지난 2년간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개발
- 기업에서 환경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환경정책 시그널(signal) 제공이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에 기반한 탄소 가격 신호 체계 부여가 기업의 대응노력 유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가구와 환경 (Households and Environment)

- 환경 정책이 가정의 폐기물 발생, 물 소비, 교통 이용 형태, 유기농산물 소비, 에너지 사용 등 5개 분야의 소비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1차 사업을 2008~2010년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는 녹색성장촉진과 저탄소 사회발전 등의 이슈를 대상으로 제2차 사업 실시중
- 1차 사업은 우리나라, 프랑스, 캐나다 등 10개국, 2차사업은 우리나라 포함 11개국 대상 각국별 1천 가구에 대한 조사(on-line survey) 실시
- 우리나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폐기물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참여

5) 자원 생산성과 폐기물

○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와 폐기물

- OECD는 폐기물 사전 예방, 최소화, 재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개발과 함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 연구에 중점을 두어 관련 작업을 진행
- 2008.4월 OECD는 '자원 생산성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0.10.25~27일 벨기에에서 「SMM에 관한 글로벌 포럼」 개최

- 물질 흐름 계정 (Material Flow Accounting)
 - OECD는 보다 효과적·경제적으로 천연 자원 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공통의 방법론과 공통 지표를 개발중

6) 환경정책 수단과 평가

- 경제적 수단과 정책의 조합
 - 효율적·효과적인 환경정책 수행을 위해 환경세, 배출권 등 경제적 수단의 사용, 혁신적인 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의 통합 방안을 제시
 -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부과금, 부담금, 환경세 등에 대한 연구와 회원국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한 연구 진행
- 환경정책의 평가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 환경세 부과시 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 가계의 소득 형평성 왜곡 문제 해소 방안 연구 등 환경보전과 사회적 형평성과의 조화 방안 제시
 - 대기오염 등 환경악화에 따른 어린이 건강 피해에 대한 추정 연구를 통한 환경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환경법령 집행의 효율성 제고, 환경 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 규제준수 성과지표 개발, 자발적 준수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인센티브 등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환경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

7) 화학물질, 생명공학, 나노물질의 안전

- 화학물질 안전, 자료의 상호 인정
 - OECD는 화학물질 생산과 화학제품, 생명공학 제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등록(PRTR),

사고 예방, 노출 평가, 환경 기준 설정, 시험 방법 등의 작업을 진행중임

- 화학물질 생산·사용, 수출입시 필요한 시험결과와 상호 인정(MAD)을 통해 기업의 중복 실험으로 인한 비용 절감, 비관세 국제무역 왜곡 해소에 기여

○ 바이오공학, 나노 제품의 안전성

- 유전자를 조작한 생명공학(GMO) 제품과 제조 나노물질의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비관세 장벽 등 국제 무역 규제를 조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8) 지구촌 경제에서 환경

○ 환경과 교통 (Environment and Transport)

- 세계화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의 관점에서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선박에서 오염물질 배출, 수송용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의 경제적, 환경적 효과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

○ 환경, 투자, 무역 및 개발

- 무역, 투자, 혁신 확산과 환경 정책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며, 최근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환경 기술의 개발·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
- FTA 등 지역 경제 협정 체결시 환경규정, 세계화에 따른 환경 영향 고찰, 개발 원조 사업에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자원 관리역량 방안 포함, 상하수도 이용 접근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모색

라.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1) 논의 배경

- 1997년 사무총장에 대한 환경분야 고위자문 그룹이 OECD가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할 것을 권고

하면서 논의가 진행

- 2001년 각료이사회는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작업을 요구하며, 동 작업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특별작업반”을 구성
- 2004년 각료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연례 전문가회의 (AMSDE)”를 통해 계속 추진 중

2) 진전 상황

- OECD가 2001년에 발간한 정책보고서인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le Development」와 분석보고서인 「Sustainable Development : Critical Issues」는 지속가능발전을 현재와 미래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복지(well-being)를 최대화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
- OECD는 2001년 각료이사회 요구와 관련,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선정하고 동 지표를 활용하여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점검하였으며, 정책 개혁을 위해 환경세, 거래권, 환경유해보조금 분야에 대한 작업을 진행
- OECD는 2005-06년 기간에 환경유해보조금 감축, 환경세, 배출권 거래 등 경제적 수단 활용, 물질순환 등 자원의 이용,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사안 등을 검토
- 2007-08년에는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생산과 소비 형태 변화, 지속가능성의 측정,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
- 2009-10년에는 지속가능성 영향 평가, 가치 사슬, 삶의 질 측정 등의 사업과 함께 녹색성장전략 마련에 기여 방안 등을 논의

3) 지속가능발전 라운드테이블

- 지속가능발전 연례 전문가회의와는 별도로 회원국 각료, 국제기구의 장, NGO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지속가능발전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별도로 개최
 - 라운드테이블 전담관을 OECD 사무총장 직속으로 두고 운영 중
 - 의장은 현재 환경국장인 Mr. Simon Upton이 수행중
- 연혁
 - 1998년 설립
 - 2001년 OECD 각료이사회, 지속가능발전 라운드테이블을 “이해관계자 대화를 위한 국제포럼”으로 공식 승인
 - 2002년 OECD 각료이사회, 각료들이 지속가능발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지원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
- 목 적
 - OECD 회원국의 장관들이 주요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들과 cross-cutting 이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공식 대화의 장 제공
- 성격 및 진행
 - OECD 공식 회의가 아니며, 합의도출을 위한 협상회의도 아닌 비공식 토론의 장
 -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대외적으로 발언자를 명시, 공개하지 않는 Chatham House rule을 적용
 - 설립 이래 매년 1~2회 정도 국제적으로 시사성 있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개최하며, 2010.12월에는 녹색성장을 주제로 개최(우리나라 양수길 녹색위원장 참석)
- 소요예산
 - OECD 정규 예산이 아닌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 2008-2010 3년간 캐나다 McCall-MacBain 재단이 연 50만 미불

출연. 출연 재단은 기여금을 온실가스배출 저감정책 이행에 대한
주요장벽 및 기후변화 적응조치 관련 사용토록 규정

- 참석대상
 - 회원국 : 재무, 경제, 외교, 통상, 노동, 개발, 환경 장관 등
 - 비회원국 : 브라질, 칠레, 남아공,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 장관
 - 국제기구 : UNDP, UNCTAD, UNEP, IMO, FAO, WTO, ILO,
WHO, 세계은행 등
 - 민간은 주요 기업 CEO(Shell, Suez 등)와 그린피스 등 참여

9. 과학기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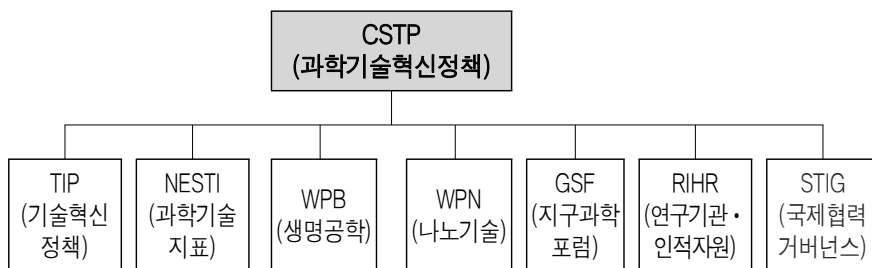
가. 논의 개요

- OECD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과학
기술정책위원회 산하에 기술혁신정책 작업반, 생명공학 작업반, 과학
기술지표 작업반, 지구과학포럼 작업반, 공공연구기관 및 인력작업반,
나노기술작업반, 과학기술혁신의 국제협력거버넌스 운영그룹을 설치
- 특히, 2007.5월 각료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OECD 혁신전략”을 마련
하여 2010.5월 각료이사회에 최종보고서 제출
-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정보
통신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마련해 나감.

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1) 위원회 개요

- 회원국들의 경제·사회·과학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1972. 2. 3 설립)
 -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회원국간 정보교환 확대
 - 인적자원 관리를 포함한 과학연구의 창조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국별 정책비교, 모범사례 도출, 정책권고 등
- OECD 회원국 34개국과 옵저버(러시아, 남아공, 중국, 브라질), EC, BIAC 및 TUAC 참여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이전인 '94년부터 CSTP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참여
- 담당사무국 : 과학기술산업국(국장 : Mr. Andrew Wyckoff)
 - 부국장 : Ms. Yuko HIRAYAMA
- 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운영체계
 - 과기정책위 본회의는 연 2회(통상 3월과 10월), 7개 작업반 본회의는 각각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작업반 산하 소작업반 및 Task Force 회의는 수시 개최
 - 논의방법 : 정기 회의, Workshop,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



2) 최근 주요 이슈

-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과학의 역할
 - 경기침체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과학정책의 역할 확대를 위한 지식 인프라의 구축과 사회·경제적 성과와의 연관관계를 논의하고 분석
 - 보다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혁신의 촉진을 위해 국제협동연구, 지식네트워킹 및 개방형 혁신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
- 녹색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 녹색혁신 및 녹색기술 혁신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 전개

3) 분야별 최근 논의 동향

가) 과학기술지표작업반(NESTI, National Experts on S&T Indicators)

- 혁신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성과와 영향
 - 신생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혁신과 생산성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혁신의 시장 인센티브, 무형 자산과 생산성의 연계성 연구
- 미시 수준의 혁신과 거시경제 성과와의 연계
 - R&D 조사와 혁신 조사, 교육 훈련에 대한 연구, 투자와 사용과의 관계, 미시 단계 근거와의 상호 점검,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 등
- R&D와 기타 지적 재산 생산물의 자본적 측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핸드북을 개발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TF팀 운영
- 공공부문의 혁신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기타 인적자원과 혁신, R&D 성과와 상업화, 흐름(flow)의 새로운 측정, 공공 및 준 공공기관의 R&D와 그 영향에 대한 측정, 최신 기술에 대한 측정을 위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작성 등을 논의
- Oslo Manual(혁신통계), Frascati Manual(과학기술지표), Canberra Manual(과학기술인력), Patent Manual, Blue Sky Forum 운영

나) 기술혁신작업반(TIP,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 혁신의 속성변화와 비기술·서비스분야의 혁신에 대한 특성 분석
- 사회적 수요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수요기반 혁신정책, 글로벌화에 대응한 정책 조정
 - － 혁신정책의 글로벌화 영향, 장기경기순환과 기술변화, 지식시장/지식재산의 글로벌화, NIS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분석
- 평가 및 영향 분석
 - － 평가 및 영향분석의 장·단점, 평가 활용방안 등
- 회원국별 국가혁신체제 진단
 - － 한국, 중국, 러시아, 터키, 일본 등 회원국 혁신체제 진단 완료
 - －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에 대한 혁신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제안 예정
 - － 공공 R&D의 경제사회적 영향평가, R&D 조세지원, 글로벌화와 개방형 혁신, IPR과 국제 R&D 협력 등을 논의

다) 지구과학포럼(GSF, Global Science Forum)

- 자연·사회·기술환경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의 복잡성
- 민간인과 과학자의 대화
 - － 연구 성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과 복지 등 상호 이해를 통하여 과학계와 일반대중 사이의 이해 증진 방안
- 거대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 분석
 - － ITER, ALMA, GBIF, INCF, LHC, ILC 등을 대상으로 과제

및 추진현황, 과제 수정/보완 역사, 인프라구축을 위해 도입된 장비, 연구비 메커니즘의 특징, 후속 조치 등을 분석

- 과학진실성 구축과 과학부정행위 방지
 - 국제연구부정조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행위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 천체입자 물리학, 산업수학,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Global Issue에 대한 협력모델 개발 등 미래 프로그램 운영

라) 생명공학작업반(WPB, Working Party on Biotechnology)

- 융합기술과 신생기술의 촉진, 지식네트워크와 지식시장, 바이오 경제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 바이오안보(Biosecurity)
 - 생물자원센터의 안보성을 위한 모범운영지침의 확산과 활용 증진, 위험평가기법 개발, 새로운 바이오 과학 및 기술과 연계한 위험평가 등
- 생의학 및 보건 혁신(Biomedicine and Health Innovation)
 - 규제시스템, 보건에서의 개방형 혁신모델, 보건혁신을 위한 재정모델, 지식자산 관리, 환자수요 및 요구사항, 보건혁신 기준 및 지표 등
- 환경 바이오테크놀로지(Environmental Biotechnology)
 - 오염된 환경을 생물학적으로 복원하는 Bioremediation과 오염 물질을 발견하고 측량하는 Biosensor 분야 정책 연구
-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 합성생물학의 경제적 가치, 합성생물학의 도구·인프라·정의, 투자자 관점 및 정책적 관점 등
- 바이오마커(Biomarker) 및 맞춤형 치료(Targeted Therapies)
 - 증거기반 구축의 모범지침,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바이오마커 개발 및 이용·진단의 가치, 인적자본 등

- 지식재산권을 위한 협동 메카니즘(Collaborative Mechanism)
 - 협동 메카니즘의 유형화, 협동 메카니즘의 정립·관리·지배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에서의 개방형 혁신탐구, 지식 재산권 교환의 상업화 등

마) 나노기술작업반(WPN, Working Party on Nanotechnology)

- 나노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에의 기여,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 식품과 보건을 위한 나노기술의 활용, 나노의약, 나노기술의 사회적 측면 논의
- 나노기술 통계기반 구축(Statistical Framework)
 - 정책 수요에 기반한 지표의 선정, 설문모델 개발 및 Pilot survey 등을 통한 통계기반 확정
- 나노기술 개발의 현황 조사 및 분석
 - 나노기술 국가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에 대한 사례 조사·연구, 통계자료 및 지표 수집·유지·관리, 대중홍보 등 사례 연구
- 나노기술 고유의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환경과 신생사업분야 발굴 및 정책 제안
-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의 활용
 - 물 부족 및 정화, 건강, 환경,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반 작업 수행
- 국제 나노기술협력
 -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한 포털, 네트워크 및 연구시설 연계 구축 등
- 나노기술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라운드테이블
 - 나노기술과 경제에 대한 정책 협의(대중홍보 및 참여, 변화하는 기업환경, 기술융합, 나노기술의 위해성 등)

바) 연구기관 및 인력작업반(RIHR)

- 과학기술 인력공급 관련 정책
 - 과학교육, 박사과정의 단기화, 연구직업의 선호도 향상, 여성 과학기술자, 인력의 국제 이동)
-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및 공공연구의 효과 및 능률 향상
 - 연구비 Funding system에 대한 국제비교와 Best Practice 도출
- 과학연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제

사) 과학기술혁신의 국제협력거버넌스 운영그룹(STIG)

- 기후변화와 에너지 공급, 전염병과 건강, 식량안보, 개발, 인구의 노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논의

다. 정보통신정책위원회(ICCP)

1) 위원회 개요

- 정보통신정책위원회는 정보사회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점(1982년 설치)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동향과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틀을 마련
 - 구체적인 작업내용으로서 아래 사항들을 추진
 - (i) 디지털경제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형성
 - (ii) 정보인프라의 확충 및 이용확산
 - (iii) 정보통신 규제정책 분석 및 회원국 정책 모니터링
 - (iv)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연구
 - (v)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안전성 제고방안 강구
 - (vi) 정보통신 신기술 동향 분석
 - (vii) 정보사회에 대한 분석·측정 및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 등

-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을 담당하는 4개 작업반을 구성·운영
 - (i) 통신인프라및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Policy)
 - (ii) 정보경제작업반(WPIE: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 (iii) 정보보호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 (iv)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 현재 정보통신정책위원회에는 34개 회원국 외에 6개 옵저버가 참여
 - 옵저버 : 남아공, 이집트,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구주협의회(Council of Europe)
 -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전인 1994년부터 옵저버국으로 참여하였고, 1996년 OECD 회원국이 된 이래 본위원회 및 작업반 의장단 진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
- ※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및 4개의 산하 작업반 부의장국으로 활동

2) 분야별 최근 논의동향

가) 인터넷 경제의 미래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2008년 서울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개최
- 개인 정보의 경제적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 정보의 경제적 가치 측정방법 등 연구
- 최근 ICT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연구

나)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

- 1980년 제정된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기술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보완작업 추진, 프라이버시 법률 집행기관 간의 협력활동 지원
-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복원력 강화
 -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국가전략 비교, 주요 핵심 정보 통신 기반시설(CII: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비교분석
 - 소프트웨어 보안시장의 경제적 연구
 - 스캠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권고안 이행현황 점검 및 워크숍 개최

다) 커뮤니케이션 시장, 정책 및 규제

-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유무선 대체재,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공개 접속현황, 브로드밴드의 보편적 서비스 보고서 등 브로드밴드 접속에 관한 연구

라) 혁신과 녹색 성장을 위한 ICT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효과적인 활용방안 논의
-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 배급 및 보호 방안 강구
- 공공분야 정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및 활용 방안
- 새로운 인터넷 주소자원 체계인 IPv6의 동인과 도전, 정책적 고려사항
- 브로드밴드 Eco-system 구축 등 ICT를 통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 전략

3) 주요 간행물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발간
 -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는 통신·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정책 및 규제동향, 분야별 시장구조 및 발전현황, 네트워크 발전 상황, 국제정보통신요금 비교, 인터넷 관련 현황 등을 담은 “OECD Communications Outlook”을 매 2년마다 발행
- “OECD 정보기술전망(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발간
 -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장 동향, ICT 무역 및 세계화, ICT 기능(skills) 및 고용, 신기술 및 각국의 ICT 정책동향 등을 담은 「OECD 정보기술전망」을 격년 제로 발행(2011년 “인터넷 경제 전망”으로 개편 예정)

참고

《 정보통신분야 OECD 선언문, 권고, 지침, 정책원칙 등 현황 》

연도	명 칭	비 고
1980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데이터의 국경간 유통에 관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5	국경간 데이터 유통에 관한 OECD 선언문 (OECD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	
1992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2002년 개정 (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Towards a Culture of Scurity)
1997	암호정책 지침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1998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에 관한 OECD 장관선언문(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Authentication for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캐나다 오타와, 1998.10)에서 채택
1998	범세계적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OECD 장관선언문(OECD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on Global Networks)	오타와 장관회의에서 채택
1998	전자상거래를 위한 OECD 행동계획 (OECD Action Plan for Electronic Commerce)	오타와 장관회의의 결과물
1999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2002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OECD 지침: 보안 문화를 향하여(OECD 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s: Towards a Culture of Security)	1992년 지침의 개정
2002	온라인 프라이버시: 정책 및 실재에 관한 OECD 지침 (Privacy Online: OECD Guidance on Policy and Practice)	

연도	명 칭	비 고
2003	국경간 상거래의 사기 및 기망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OECD 지침(OECD Guidelines for Protecting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tive Commercial Practices Across Borders)	
2004	브로드밴드 개발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Broadband Development)	
2006	■ OECD 스팸방지 정책 및 조치 권고 툴킷(OECD Anti-Spam Toolkit of Recommended Policies and Measures) ■ 스팸방지법 집행에 있어서의 국경간 협력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against Spam)	
2007	전자인증에 관한 OECD 권고 및 전자인증에 관한 OECD 지침(OECD Recommendation 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OECD Guidance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2007	프라이버시 보호법 집행에 있어서의 국경간 협력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Enforcement of Laws Protecting Privacy)	
2007	소비자 분쟁해결 및 피해보상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2008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 선언문(The Seoul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2008	CII 보호정책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s)	
2008	공공분야 정보의 접근확대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이사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10	ICT와 환경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CT and Environment)	

라. 산업혁신위원회(CIIE)

1) 녹색성장 추진

- 녹색산업 육성
 - 녹색성장 관련 새로운 지표개발, 창업과 혁신관련 기업차원의 자료분석, 녹색혁신에 대한 회원국의 정책 및 특정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제시
- 녹색성장과 혁신에 관한 툴킷
 - 정부와 기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된 혁신정책 handbook 작성, 지속가능한 생산공정 관련 툴킷 마련

2) 혁신관련 활동

- 회원국의 혁신 활동 모니터링
 - 과학기술혁신국이 발간하는 STI Outlook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혁신정책과 성과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통해 STI handbook 작성에도 적극 기여
 - 회원국 혁신정책, 기업가정신 함양, 혁신관련 시장형성, 녹색혁신 촉진관련 글로벌화의 영향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간
- 혁신관련 글로벌 포럼 개최
 - 비회원국이 참여하는 혁신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산업국 연계 위원회와의 공동작업 추진 및 서비스 분야의 혁신, 혁신을 위한 규제정책의 역할 등 관심 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추진

3) 새로운 성장의 원천 및 가치창출 지원

- 새로운 성장 원천과 가치 창출 관련 지표 개발 및 사례 분석
 - OECD의 생산성 데이터베이스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하고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제조서비스업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간의 관계를 분석

- 경쟁력 및 가치 창출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제시
 -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성장, 가치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산업정책과 관련한 권고 사항을 도출

4)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

- 중소기업과 창업확산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 특히, 여성 창업가와 혁신적인 중소기업(무형자산 보유)에 대한 개선된 금융지원 방안 모색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정책효과 분석 정례화 및 비회원국이 참가하는 중소기업·창업 금융관련 OECD글로벌 포럼 창설
 - 회원국의 중소기업 관련 상이한 조세체계가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경우와 비교 분석
- 중소기업과 창업: 녹색성장, 창업 및 고용
 - 녹색혁신 확산과 제조업 분야의 지속가능 생산공정 도입관련 중소기업의 기여 및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등의 인과관계 분석
- 글로벌화와 중소기업 : 신흥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
 - 산업의 글로벌화 관련 이민·여성 창업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신흥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진출 방안 등을 모색

5) 벤치마킹 및 성과평가 실시

- 과학, 기술 및 혁신 스코어보드 작성
 - 혁신, 창업 및 생산성 분야 지표를 통해 회원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스코어보드를 2011년에 발간 (과학기술정책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위원회와 공동 작업)

- 산업 및 창업관련 각국 정책에 대한 평가
 - 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각국별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한 교훈으로 활용

마. 관광위원회

1) 개요

- 설립 배경
 - 경제개발 수단의 하나로 관광을 활용하고 “마샬 플랜” 추진 관련 국가간 협력을 위해 1948년 창설
- 구성
 - 관광위원회는 OECD 전 회원국이 참여(각국 관광부처 고위급 관료로 구성)
 - 위원장 : 이자벨 힐 미국 상무성 부국장
 - * 부위원장 : 모니카 크링거 오스트리아 경제가족청소년부 부국장 등 7명
 - 옵저버 : 이집트, 루마니아, Council of Europe
- 설립 목적
 - 관광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정책연구 : 비자, 여권, 통관편의, 외화소득허용, 관광산업에 관한 정부지원, 관광객 보호정책 등 제반 관광진흥정책 방안 연구
 - 회원국간 관광분야 협력추진 :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제고
 - 국제관광서비스의 자유화촉진 : 회원국의 관광산업 및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검토
 - 관광관련 통계개발 : 관광부속계정을 통하여 회원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

2) 주요 정책이슈 및 대응

- 관광관련 정책 권고안 분석 및 개발
 - 관광 정책 분석 및 평가 준비
 - 관광 관련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 관광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 회원국에 있어서의 관광 서비스 조치 개선, 포럼 개최 등
- 운영 원칙 설정
 - 수평적 프로그램과의 적극적 연계 발전
 - 민간 및 여타 관련 기관과의 파트너십 개발
 -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3) 2011~12년 사업계획

- OECD 관광위원회는 향후 2년간 5개의 세부사업 시행을 통해
 - OECD 전체의 전략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모’, ‘고용 기회 창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등의 실현을 지원
 - 비회원국을 비롯한 관광 정책 관련 요소들과의 연대를 강화
 - 관광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위기 요소와 이들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 대응 방안을 수립 제공하는 등의 제반 목표를 달성할 계획
- 동 위원회의 5개 사업은
 -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 역량 강화
 - 세계 관광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 제거
 - 관광 서비스의 경제 기여도에 대한 측정 방법의 정교화
 - 녹색혁신의 영향 계량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 등
- 2011~12년 주요 사업 우선순위
 - ① 관광분야 경쟁력 평가 및 측정

- 회원국들에 자국 관광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각종 지표 제공

② OECD 관광 동향 및 정책

- 회원국 및 선별된 일부 비회원국들의 관광 전반에 걸친 정책 및 동향을 수록한 책자 발간

③ 관광서비스 분야 녹색혁신

-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관광 분야의 혁신 사례 분석 제공

④ 관광 분야 자유화

- 국제 관광 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소의 식별과 이에 관한 실증적 정보 및 분석 자료 제공

⑤ 국가 / 주제별 관광 이슈 및 정책 분석

- 2개국 및 2개 주제 (음식관광, 헬스관광) 분석

4) 우리나라와 OECD 관광위원회

-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협력강화에 적극 참여 필요
 - 관광선진국의 주요활동 및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관광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필요
 - OECD에서 논의되는 관광이슈는 주로 관광산업의 국가경제기여도 제고, 고용창출, 지역개발, 중소기업육성 등 경제적 측면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가능

OECD 한식세계화 컨퍼런스 개최

- 회의 개요
 - 회의명 : 한식의 세계화 및 음식관광선진화 OECD 국제컨퍼런스
"Korean Cuisine in Tourism : Inter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
 - 일시 및 장소 : 2010. 12. 8(수) - 10(금), 전주 리베라호텔
 - 주요내용 :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위상 제고 방안 논의
 - 참석자 : 끌로드 르베 프랑스 미식평론가 등 국내외 미식관광 전문가, OECD 관계자, 기타 학계 및 업계 등 150여명
- 주요성과
 - 국내외 음식관광 토론 및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식을 통한 한국관광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한국관광 방안 도출 모색
 - 한식을 통한 한국관광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와 국제교류의 장 마련
 - 해외 미식관광 전문가에 대한 개별적 케어를 통한 한국 문화·관광의 이해도 제고·친한(親韓) 인사 육성 및 관광외교역량 강화
 - 컨퍼런스와 전통문화음식체험투어를 병행함으로써 전주·서울 음식문화 관광 홍보, 관광을 통한 지역개발의 실질적 가능성 모색
 - ※ 프랑스 음식평론가 LEBEY의 음식투어 및 한식 셰프(한복려, 임정식 등) 면담 주선을 통해 한식에 대한 고품격 책자 프랑스판 발행 추진(2011년 하반기)

바. 소비자정책위원회

1) 개요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3개 권고안을 제정
 - 1999년에 제정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국제적인 적용기준을 제시
 - 2003년에는 “국경을 넘는 거래와 관련된 사기·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국경을 넘는 사기·기망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시스템, 소비자피해구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2007년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이사회 권고안”을 채택
- 2008.6월 서울에서 개최한 OECD 인터넷 장관회의에서 온라인 아이디 도용에 대한 정책원칙과 모바일 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채택
-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터넷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1999년 제정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개정방안을 검토 중이며, 소비자제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

2) 주요 이슈

가) 인터넷경제에서의 소비자이익 보호

- 2009년부터 위원회는 “이커머스 가이드라인(the E-commerce guideline)” (the 1999 OEC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의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음
- 이커머스 가이드라인 검토를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함. i) 지불안전 및 보호, ii) 디지털상품, iii) 참여적 웹
- 이 작업은 프라이버시, 인터넷중개자, 아동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에서 ICCP 등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하에 진행

나) 소비자정책형성 접근방법 개발 및 정의

- 소비자정책툴킷, 기존 정책도구 검토, 보다 향상된 의사결정을 위한 지표개발 등

다) 소비자제품안전 증진(consumer product safety)

- 2008년 10월에 제품안전당국이 직면하는 도전과제에 관한 분석 보고서가 제출. 이어서 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하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2010년 제79차 세션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워킹파티 수립에 합의(2010.12월 제1차 회의 개최)하였고, APEC, 국제표준기구-소비자정책위원회(ISO-COPOLC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작업을 수행
-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0가지의 단기, 중기, 장기과제가 이행되어야 함. 관련 웹포털의 설정(creation of web portal)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임

10. 농·수산

가. 논의 개요

- 농업분야는 농업 및 농식품의 국제무역 촉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분석과 권고, 농업정책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best practice) 제시 등에 중점
 - － 농정평가·모니터링, 정책이슈 분석 및 논의, 시장전망 등 활동
- 수산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식량안보·식품안전·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이슈 분석과 권고, 정책사례 조사 및 가이드라인·모범사례 도출 등에 중점을 두어 활동
 - － 최근에는 수산자원회복, 수산양식 인증제, 녹색성장 등이 주요이슈

나. 농업위원회 논의동향

- 최근 OECD 농업각료회의('10.2.25~26)에서 중장기 정책원칙과 정책논의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채택
 - － 식량안보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 녹색성장의 기회 활용, 기후변화 대응, 농산품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한 정책, 글로벌 수요공급을 위한 무역 등을 중요한 정책원칙으로 합의

- 농업정책 모니터링·평가 : 2년 주기(중간연도 : At a Glance 발간)
 - 회원국 농업정책 개혁, 정책이슈 등을 평가하며, ‘생산자 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s)’가 주요 비교평가수단
 - ※ OECD의 한국 농업정책리뷰 2회 시행(1998년, 2008년)
 - ‘98년 : 직접지불제도 확대·공공비축제도 도입 등 10개 정책권고
 - ※ PSE(생산자 지지 추정치)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를 측정하는 OECD지표에서 한국PSE는 2009년 52%로서 OECD 평균치 23%에 비해 높은 수준
- 최근 주요정책 논의사항
 - 농산물시장의 구조적 변화, 미국 및 EC의 농정개혁 평가, 개도국의 농업정책설계, 농업분야 위험관리 및 농가단위분석, 주요 농식품 중장기 수급전망 등
 - 농업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한 수질관리, 농업환경지표 개발, 녹색성장전략 등이 주요이슈

다. 수산위원회 논의동향

- 수산자원회복의 경제적 분석(Economics of Rebuilding Fisheries)
 - 성공적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경제·사회·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권고안을 도출할 목적
 - 자원회복 관리기준과 개념, 자원회복 비용편익산출, 정책권고 수준(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등) 등이 주요한 정책이슈
 - ※ 2011.4.14~15일, “자원회복 가이드라인(안)” 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 수산물 인증제(Fisheries and Aquaculture Certification)
 - 수산물 인증제 원칙과 목적, 비용과 편익 등을 분석하고, 회원국 인증제도 및 정책현황 조사를 통해 인증제도 모범사례 발굴
 - ※ 라운드 테이블(’09.4, 네), 회원국 설문조사 등을 실시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양식(Aquaculture) 연구
 - 식량안보·녹색성장 등에 대응한 수산양식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사례 조사, 워크숍(’10.4, 프) 등 진행

- 기후변화와 수산업(Climate Change and Fisheries)
 - 기존 어업 및 양식관리 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적응 및 완화수단의 경제적 비용편익과 비용부담주체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 대응방안을 강구
 - ※ 기후변화 워크숍 한국 개최('10.6.10~11, 부산)

11. 교육

가. 논의 개요

- OECD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형평의 달성에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의 질 향상, 평생학습의 증진, 교육접근에 대한 형평성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사업을 추진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인적자본의 확충과 업그레이드가 개인과 국가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
- 이러한 OECD 회원국들의 관심은 1996년 ‘모든 이들을 위한 평생 학습(Lifelong learning for all)’, 2001년 ‘모든 이들을 위한 능력 발전에의 투자(Investing in competencies for all)’, 2006년 ‘고등 교육 : 질, 효율성 및 형평성(Higher Education : Quality, Effectiveness and Equity)’, 2010년 ‘인적·사회적 자본에의 투자 : 도전’이라는 네차례의 OECD 교육장관회의 주제선정에 반영

나. 사업 추진체제

- 교육정책위원회(Education Policy Committee)
 - 1970년 발족된 교육관련 의사결정기구 중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서, 교육국 전체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각 의사결정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간의 조율을 담당

-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학습, 교원정책 등 국가 전체 수준의 교육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체제지표사업(INES)도 담당
- 교육연구혁신센터(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
 - 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혁신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예로 혁신적인 교육환경, 고등교육의 미래, 교육의 사회적 성과 등이 포함됨

다. 분야별 주요 사업

1) 고등교육의 질 제고

-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글로벌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회원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 개선, 형평성 제고 등이 주요 이슈로서 논의
- 고등교육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 체제 점검, 질 높은 대학 교수방안, 고등교육의 성과 측정,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재조명 등

2) 직업훈련/직업능력개발

-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이 급속하게 보급되는 한편,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근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학습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성인인구의 역량을 유지하고 업그レード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
 -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틀로서 학습자, 고용주, 정부 등의 공동재원 부담, 탄력적이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학습기회 제공, 다양한 학습 성과의 상호 인증 등이 주요과제로 논의
- OECD가 진행해온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에게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책함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Skills Strategy가 진행중이며 2013년 'Skills Outlook'을 발간할 예정

-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OECD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식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 교육에 대한 주제검토(Learning for Jobs), 중등단계 이후의 직업 교육 검토(Skills Beyond School) 등을 실시

3) 교원정책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교원이 중요한 정책요소의 하나로 인식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교직 유치,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 및 이직 방지 등이 주요 정책 이슈로 대두
 - 이에 따라 동 이슈에 대한 주제검토를 통해 2005년 교사의 중요성 (Teachers matter)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 아울러, 동 보고서의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실시
 - 즉 교원에 대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라 교수학습에 관한 제1차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가 실시되었고, 제2차 조사가 2011년부터 실시

4)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 교육 체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OECD는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Without data you are just another person with an opinion.)”는 모토를 내걸고, 교육성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 OECD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연령대인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들에서 성인 생활 준비 정도를 측정하여 음

- 2000년 처음으로 실시된 데 이어 매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 제4차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들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들의 교육 체제들의 강점과 약점 분석
- 우리나라는 역대 PISA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상하 집단 간 격차도 적어 OECD 국가 중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우수 사례로 평가

5) 고등교육성과측정사업(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

- 대학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역량(generic skill), 경제학, 공학분야의 역량을 측정하는 사업
 - 한국은 미국, 핀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쿠웨이트,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이집트 등 9개국가와 함께 일반역량 분야에 참가
- 일반역량의 경우 미국 CAE에서 개발한 수행평가 과제를 평가지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2012년 사이 Feasibility test를 실시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KEDI가 주관기관으로 선정

6) 국제성인역량측정사업(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15세~65세 대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간 성인능력의 분포 및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08~2013년까지 진행될 예정
- 2010년 현장조사를 마쳤고, 2011년 본조사, 2013년 최종 결과물을 발간할 예정이며, 성인역량의 직접측정(literacy, numeracy, component skill, ICT환경하의 문제해결 능력), 직무에서의 역량활용 간접측정, 성인역량과 노동시장 성과간의 상관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

7) 유아교육보육 정책

- 취학전 적절한 성장 환경과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서 결손이 누적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격차가 점점 더 크게

- 벌어져 저학력, 실업, 저소득 취업, 사회적 이탈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하면서 사회 통합을 해치는 원인이 됨
-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노동 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도 기여가 가능
- OECD는 2000-2006년 유아 교육과 보육 정책에 관한 주제 검토를 실시하여 Starting Strong I, II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 네트워크사업(Network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진행

8) 기타

- 교육체제지표(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 교육의 성과, 자원, 기회, 환경 등 각국의 교육 체제를 국제 비교하는 데이터 수집과 지표를 개발
 - Education at a Glance을 매년 9월 발표
- 교육시설프로그램(CELE, Center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 교육 시설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ICT와 교육 시설 정책과의 관계, 지속가능한 환경과 교육시설, 교육 시설 관리와 기획의 우수 사례 보급, 학습이 실행되는 공간인 교육 시설 정책의 효과성 평가, 학교 안전, 시설 지표 개발 등을 담당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초기부터 CELE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고등교육기관관리프로그램(IMHE,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 시스템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지역발전 기여 등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운영·발전방안 논의

12. 통계

가. 논의 개요

- OECD의 핵심 기능인 정책분석과 권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가 필요
 - 이를 위해 OECD는 개별 국가로부터 필요한 통계를 입수하고 동 통계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통계기준과 방법론을 개발
- 한편 OECD의 통계업무는 통계국(Statistics Directorate)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각 부서에서도 직접 소관 통계를 담당하는 분권형 통계작성 구조하에서 수행
 - 통계국은 주요 경제통계(국민계정, 금융통계, 무역 및 서비스교역 통계, 여타 단기경제통계 등)를 직접 담당하는 한편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OECD 여타 부서와의 통계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
 - 개발협력국(DCD), 경제국(ECO), 교육국(EDU), 고용·노동·사회국(ELS), 환경국(ENV), 금융기업국(DAF), 공공관리지역개발국(GOV), 과학·기술·산업국(STI), 조세정책·행정센터(CTP) 등 OECD 여타 부서에서도 소관 통계를 담당
- 이러한 분권형 통계작성 구조는 각 분야의 전문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OECD 각 부서별로 공표되는 통계의 질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같은 내용의 통계라도 기준이 상이하게 공표되는 등 표준성에 문제가 있어 통계품질 제고와 함께 통계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따라 OECD 이사회는 2004년 4월 기존의 회원국 통계기관 고위당직자 회의를 공식 통계위원회(Committee on Statistics)로 전환하여 OECD의 통계정책에 관한 책임을 부여

- 통계위원회는 이 외에도 OECD 통계의 높은 품질수준 유지, 통계국의 업무 및 예산에 대한 감독, OECD 여타 위원회 및 각 부서의 통계업무 관련 조정 및 자문, OECD와 회원국간 통계 및 통계정보(metadata) 교환을 위한 표준방식 승인, 기타 통계국장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주요 임무로 함.

나. 조직

- 본위원회를 연 1회(상반기) 개최하고 산하에 작업반(Working Party) 및 전문가 회의를 운영
- 단기경제통계 작업반, 금융통계 작업반, 국민계정 작업반, 무역 및 서비스교역 통계 작업반 등의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고, 해당 분야 통계에 대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동향, 통계품질 향상 및 국가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제통계기준 제정,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지표 개발 등을 논의

다. 주요 논의동향

1) 사회발전의 측정을 위한 Global Project 추진

- OECD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사회발전지표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를 통해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 주요 지표*를 대체
 - ※ UN은 2015년까지 8개 분야 MDG의 달성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48개 통계지표를 선정하여 활용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
 -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연구 및 동 결과의 공유
 - 통계를 지식으로 전환, 보급하기 위한 혁신적인 ICT 수단 개발 및 활용 장려

-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사회발전 측정을 촉진하기 위한 범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 한편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OECD는 3차례('04.11 이탈리아, '07.6 터키, '09.10 한국)에 걸쳐 세계포럼을 개최
 - 제3차 세계포럼은 우리나라 통계청 주최로 2009년 부산에서 개최
 - 제4차 세계포럼은 인도에서 2012.6월 개최 예정

2) 주요 비회원국 통계의 품질향상 지원

- BRICs 등 비회원국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이들이 신규가입(enlargement) 및 협력강화(enhanced engagement)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통계수요가 크게 증가
- 따라서 OECD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의 통계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동 통계를 OECD의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인 통계정보 시스템(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SIS)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3)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 개발 및 보급

- 세계화 진전, ICT 발전 등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통계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를 개발
 - 다국적기업의 투자서비스 생산·고용·교역 등과 관련한 통계, 각종 정책성과의 종합 측정을 위한 통계(사회복지수준 등), 공공부문의 경제활동(비시장 산출물 등) 측정을 위한 통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통계, 기업 및 가게 등에 대한 마이크로 통계, 저장(stock) 통계, 부동산가격지수 통계, 생산성 통계 등
- OECD 통계자료에 대한 전문가 및 비전문 일반대중의 접근성 제고
 - 알기 쉬운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각종 통계에 대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OECD Factbook 등 새로운 산출물 개발
 - On-line을 통한 OECD 통계의 일반대중에 대한 보급 확대

13. 對비회원국협력

가. 논의 개요

-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냉전이 끝나면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상호의존성이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계획 경제를 운영해 왔던 중·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부각
- OECD 비회원국 협력사업은 90년대 중반까지는 구 소비에트 연방국의 구성 국가였던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에 치중되었고,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은 일부 개발도상국에 제한되었으며, 남미지역 국가에 대한 협력 사업은 1993년부터 시작
- 비회원국 협력사업은 2001년에 주요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사업과 세계적 주요 문제를 논의하는 global forum으로 재구성
 - －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OECD가 이들 신흥국가들과 적극 협력해야할 필요성 대두
- 2007년 각료이사회에서는 OECD의 세계적인 적실성(relevance) 제고 및 정책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 확대 대상국 5개국(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러시아)과 관계 강화 대상국 5개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및 동남아 지역을 선정
 - － 회원국 확대 대상국 중 2010년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이 가입하였으며, 러시아는 현재 가입 협상중
- OECD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ERC)를 중심으로 OECD의 outreach 활동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강화 방안 협의
 - － ERC는 평균 한달에 1회 회의 개최(2011년 현재 의장 : Cristina Narbona 스페인 대사)

나. 비회원국과의 관계강화(enhanced engagement)

- 2007.5월 각료이사회 결정이후 5개 비회원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 EE-5라고 통칭) 및 1개 지역(동남아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OECD와의 협력프로그램을 개발, 시행중
 - 동 협력 프로그램의 핵심은 위원회 등 OECD의 분야별 협의체에 이들 주요 국가들이 직접 활발히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정책방향을 OECD 회원국과 수렴토록 유도
 - 이 밖에, 경제검토(Economic survey) 실시, OECD 규범 참여 유도, OECD의 통계 및 정보 시스템에의 통합, 분야별 동료검토(peer review) 참여 유도, 여타 정책 대화 등이 관계강화 주요 활동
- OECD 관계강화 정책은 OECD가 더 이상 선진국 클럽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탱크이자 국제적 공정경쟁 추진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
- 2007년 하반기부터 대외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 주도로 EE-5 국가들 및 동남아지역에 대해 각각 비공식 토의그룹(Informal Reflection Group: IRG)을 결성,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
 - IRG는 OECD 회원국과 해당 개도국간 정책정보 교류, 상호 이해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토의하는 매우 유연한 비공식 모임으로 OECD 회원국 대사들이 의장을 수행하며, 의장 재량에 따라 다양한 비공식회의 개최(통상 각 IRG 별로 연간 2~3회 회의 개최)
 - 한국 대사는 2011년 3월부터 중국 Informal Reflection Group 의장으로 활동중

다.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

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투자 사업

- OECD는 outreach 활동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에 대하여 미국·영국·일본 주도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2개 사업(투자환경 개선, 공공 거버넌스 개혁)을 시행 중
 - － 2000년 초 MENA 국가들의 OECD 투자정책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에서 출발
 - ※ MENA 참여 국가 : 알제리·바레인·지부티·이집트·이라크·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리비아·모리타니아·모로코·오만·팔레스타인·카타르·사우디·시리아·튀니지·UAE·예멘
- 사업 추진 체계
 - － 2개 사업(투자환경 개선, 공공 거버넌스 개혁)이 독립적으로 추진 중

각료급 회의	· MENA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결정
운영그룹 (Steering Group)	· 프로그램 진행상황, 사업이행에 대한 전반적 감독 등
작업그룹 (Working Group)	· 각 그룹별 사업계획 이행 등 실무담당

2) 유럽 인근 국가 대상 거버넌스 개혁 지원 사업

- OECD는 EU와 공동으로 EU 후보국, 잠재적 EU 후보국 및 유럽인 근국정책(ENP) 협력 대상국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 지원 사업(SIGMA) 운영
 - － SIGMA는 1992년 5개 중유럽 국가에 대한 거버넌스 개혁 지원에서 출발, EU 안정화 확대 및 통합 과정과 병행하여 대상국 확대

- 현재 'EU 가입전 지원 프로그램(IPA)'에 따라 EU 후보국 및 잠재 후보국과 협력 중이며 '유럽 인근국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ENPI)'에 따라 '유럽인근국 정책' 협력 대상국과도 협력 중

※ SIGMA 수혜국: 4개 EU 후보국(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터키), 4개 잠재 EU 후보국(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10개 ENP 대상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조지아, 요르단, 레바논, 몰도바, 모로코, 튀니지, 우크라이나)

- SIGMA는 법적 체계·행정 서비스·행정적 정의 및 청렴, 외부 및 내부 감사 및 재정 통제, 행정조달, 정책 및 규제 제도 등 4대 주요 분야 활동 지원

3)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 OECD는 ASEAN,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 하에 동남아 지역 사업과 특정국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Informal Reflection Group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 개발

4) 유라시아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OECD는 Central Asia Initiative(CAI)*와 South Eastern Europe and South Caucasus Initiative(SEE)**를 운영중
 - CAI와 SEE 모두 해당 지역의 역량 개발, 경쟁력 및 투자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금융조달 및 인적자원 개발 작업반을 구성·운영중
 -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및 사무국의 요청을 감안하여 CAI 인적자원 개발 작업반 공동의장직을 수임키로 결정하고 11.12월초 동 작업반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임
 - * CAI: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쿠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7개국
 - ** SEE: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몰도바공화국 및 우크라이나 등 6개국

라. 글로벌 포럼

-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간의 특별대화를 위해 설치
 - 가급적 많은 비회원국이 참여토록 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
 - 지속개발, 지식경제, governance, 조세, 무역, 국제투자, 농업, 경쟁, 개발, 지속가능발전 등 10개 분야 선정
- 2007년 글로벌 포럼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어 분야별 위원회와의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 사항 채택
 - 현재 상기 10개 분야별로 해당 위원회와 사무국등이 협력, 부정기적으로 글로벌 포럼을 개최중인 바, 조세, 경쟁, 농업, 지속발전 분야 활동이 비교적 활발

마. 비회원국 회의 참여 제도

- OECD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에는 상기의 협력사업 이외에 비회원국이 OECD 전문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직접 참석하여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 존재
 - 초청자(Ad hoc invitation), 옵저버(observership), 정회원(full participation) 3가지 방식 존재
- 초청자(Ad hoc invitation)은 비회원국에게 특정위원회 또는 산하 회의에 한 번 또는 횟수를 정하여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비회원국이 OECD 회의에 참여하는 가장 초기 단계
- 옵저버(observership)은 비회원국에게 특정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통상 2년간 참석이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
 - observership을 획득한 국가는 동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전제로 하며, 적절한 재정적 기여도 필요

- 정회원(full participation)은 OECD 비회원국이 특정 위원회 또는 산하 회의에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석하는 제도
 - － 통상 비회원국 경우 특정위원회의 읍저버 참가기간 동안에 해당 분야의 활동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동 위원회에 정회원(full participant)으로 참가가 허용됨. 단, 어느 경우에도 비회원국은 이사회 참석은 불가능

14. 기타

가. 미래연구프로그램(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 미래프로그램은 OECD의 전략적 미래예측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10~15년내 관심사가 될 미래지향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전략 수립을 목표로 1990년 시작되었으며 OECD 사무총장이 직접 관할
 - － 사무국의 관련 국(Directorates)과 수평 협력프로그램으로 진행
 - － Horizon Scanning 등 미래예측 사업은 사무총장이 계속 관할하되, 2011년부터 Infrastructure, Space 및 신규사업들은 과학기술산업국(STI)으로, Risk 사업은 공공행정국(GOV)으로 이관 예정
- 각국 정부, 연구기관, 기업 및 공익재단 등으로부터의 자발적 기여금 중심으로 운영(1990년 이후 총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13백만 유로를 모금)
 - － OECD Part I 예산에서는 사무국 3명의 인건비만 제공
- 2010년도 주요활동
 - － Future Global Shock
 - － The Space Economy
 - － Household/Families structure to 2030
 - － Risk Management review
 - － Infrastructures to 2030
 - － Horizon Scanning

- 향후 진행계획 프로젝트
 - 변화하는 가족구조가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사회보장, 주거, 평생교육, 장기요양 등)
 - 사이버 공격, 전염병, 금융위기 등 주요 위험요소 및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 분석 등

15. 수평적 논의

가. 녹색성장 (Green Growth)

1) OECD의 녹색성장 논의 동향

- OECD의 녹색성장 논의는 우리나라가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도한 '녹색성장선언문'을 채택('09.6월)하면서 본격화

녹색성장전략 관련 OECD 결정사항

-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당시 현재 34개 회원국의 모든 각료들이 '녹색성장선언문' 채택을 승인(6월)
 - 녹색(Green)과 성장(Growth)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틀인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도록 결정
 - 'Green Growth Strategy(GGS)'는 OECD 25개 위원회가 참여하는 수평적 프로젝트로 '11년 각료이사회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를 2010년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 (5월)
 - OECD 각 위원회의 논의를 정리한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초안(10.3월) 및 수정안(10.4월)을 관련 회원국, 비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보고서로 확정
- 녹색성장 관련 각국 정부 및 NGO 등의 의견을 반영한 '녹색성

- 아울러, 녹색성장 지표 및 식량·농업부문 녹색성장 보고서를 토대로 전세계 이해관계자 워크숍(11.2.10~11) 개최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한 OECD는 경기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원천(New Sources of Growth)에 대한 연구를 일관되게 추진 중

- '07년 각료이사회가 성장의 원천으로 '혁신(Innovation)'을 선정
이후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 종합보고서'를
10년 각료이사회에서 채택
- '09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OECD선언문 형태로
채택하여 2011년 각료이사회는 녹색성장전략 최종보고서를
승인할 계획(5.25일)
- '10년 각료이사회는 녹색성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근로자들의 'Skills(직업능력)'를 새로운 수평적 연구 주제로
선정, 2012년 각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 발간 예정

- 우리나라는 김황식 국무총리 참석, 녹색성장 세션 기조연설

-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 (녹색+성장)
-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 (시장가격, 규제, 소비자 행태 변화 등)
- 녹색성장으로의 이행 촉진 (직업능력 훈련, 국제협력 추진 등)
- 녹색성장을 향한 진전 상황 측정 (20개 지표 제시)
- 녹색성장의 구현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 녹색성장전략 전세계 전파 및 정기적인 녹색성장 진전도 측정
- 농업, 물, 도시 등 주요 분야별 녹색성장 관련 보고서 작성

2) OECD의 녹색성장 논의 관련 이전까지의 우리의 대응 노력

-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관련 우리나라의 검토의견 등 전달
 - 외교부, 녹색위 등 정부부처 및 관련 녹색성장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녹색성장전략 최종보고서’ 초안(11.1월) 및 수정안(11.4월)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을 사무국에 전달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전세계의 모범이 될 녹색성장전략의 대표 사례로 제시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녹색성장전략의 개도국 확산을 위한 파트너임을 명시토록 요청
- ‘녹색성장’ 관련 한-OECD 협력 강화 추진
 - ‘Green Korea’(09.9월, 10.9월), 산업부문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10.3월), 아셈 중소기업과 녹색성장 포럼(10.5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식(동아시아기후변화포럼, 10.6월) 등에 OECD 사무총장(차장) 참석
 - 특히, ‘개도국이 바라본 OECD 녹색성장전략’ 세미나(10.10월) 개최를 통해 중국, 베트남 등 OECD 비회원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입장 전달
 - OECD가 개최한 ‘Roundtable on GG’(10.12월) 및 ‘OECD GGS 워크숍’(11.2월) 후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 및 GGGI 홍보
 - OECD가 주최하고 전세계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후원함으로써 GGGI의 향후 계획 및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진행
- ‘Friends of Green Growth’ 의장국으로 OECD 녹색성장 논의 주도
 - ‘Friends of Green Growth’ (FOGG*) 의장국 수임(10.6월)이후 4차례 회의 개최로 OECD내 녹색성장 논의 주도 및 녹색성장 ownership 제고
 - 각국 대표부는 사무국의 GGS 보고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자국의 녹색성장 진전상황을 공유하며, 사무국은 워크숍 개최

관련 전문가 참석 요청 등 회원국들과의 유용한 녹색성장 논의의 장으로 활용

* FOGG : OECD 사무국 및 각국 대표부 녹색성장업무 담당자(45명)로 구성된 비공식 task force (09.12월 미국대표부 주도로 출범)

3) 향후 계획 : 보다 내실있는 ‘녹색성장’ 협력을 위한 노력 경주

- 대표부의 자발적기여금을 OECD의 개도국 녹색성장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녹색성장전략의 개도국 전파에 기여토록 함
 - 아울러, 자발적기여금을 토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한국인 컨설턴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무국측과 협의 추진
 - 녹색성장 관련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면서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과도 연계토록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 진행
 - 또한, 우리나라가 창설한 GGGI와 OECD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GGGI 담당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및 공동 보고서 작성 등 추진
- OECD 각료이사회와 연계된 포럼 및 OECD 50주년 기념 녹색성장 Summit 개최 관련 사무국과의 생산적인 대화 채널 유지
 - OECD 포럼(5월)에서는 각료이사회 이후 녹색성장 관련 OECD의 입장을 집중 논의토록 하며, 글로벌녹색성장 Summit(6월)에서는 녹색성장전략 outreach를 위한 OECD, UN 및 한국의 협력방안을 모색
 - 각료이사회 이후 OECD 녹색성장전략 최종보고서가 비회원국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다른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
- FOGG 의장국으로서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료이사회 이후에도 ‘녹색성장’ 논의 주도 필요
 - ‘11.11월 부산에서 개최될 HLF-4 등과 연계하여 녹색성장이 개발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 FOGG 회의의 성공적인 운영은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이므로

사무국은 물론 각 대표부의 녹색성장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할 만한 관심있는 주제 개발

나. Going for Growth

1) 개요

- OECD의 Going for growth는 각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의 개발, 권고 및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이며, 2005년 이래 매년 전년도 OECD 경제정책위원회의 구조개혁작업반(EPC-WP1)과 본회의(EPC)에 상정되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차례 발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크게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과제와 노동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
 - 생산성 제고 과제 : 상품시장 규제 개혁, 농업부문 개혁, 인적 자본 개발 등
 - 노동활용도 제고 과제 : 근로소득세 개편, 사회보장제도 개편, 노동 시장 규제 개선 등

2) 2011년 Going for Growth

- 주요 내용
 - 2011년에는 주택시장 정책,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방안, 의료시스템 개선 등을 특별 주제로 다루고, 구조개혁 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각 정책별로 분석
-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개혁 과제 권고내용
 - OECD는 우리나라가 높은 노동활용도로 선진국과의 소득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저조(특히 서비스업)하다고 평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구조개혁정책 추진과 위기 당시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축소를 권고하고 있음.

① 생산성 제고 과제

- 네트워크 산업의 규제 완화 : 규제개혁을 통해 진입규제 추가 완화,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등 FDI 규제 완화, 기업 환경 개선
- 농업분야 생산자 지원 축소 : 가격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간접세 비중 확대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 : 간접세 비중 확대, 직접세의 세원 확대

② 노동활용도 제고 과제

-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 노동시장 전반의 사회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인센티브를 축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지원 : 민간부문 보육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 축소 및 성과급제 확대 등을 통한 성차별 완화 추진

다. OECD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1) 추진 배경

-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영향력 증대
 - 혁신 개념 및 본질의 변화 : 비기술적(non-technical) 혁신 (예: 디자인 혁신, 조직 혁신 등)의 중요성 증대로 인한 혁신 개념의 확대, 서비스 산업의 확대, Open Innovation 확대 등
- 혁신의 세계화 가속
 - 지구적 문제 대응에 혁신의 역할 증대

2) 추진 경과

- '07. 5월 MCM에서 OECD 차원의 혁신전략 개발을 의결
 - 지속적인 성장과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들이 효과적인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요청
- '08. 2월 OECD Innovation Strategy Framework 발표
 - 혁신전략의 목표, 중점 작업분야, 추진체계 및 일정 제시
- '08. 7월 MCM에 진행사항 보고
- '09. 6월 MCM에 Interim Report 보고
 - 혁신의 필요성, 혁신의 증거, 추세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 혁신 촉진전략 등
- '10. 5월 MCM에 최종 보고서 제출

3) 추진 체계

- OECD 과학기술산업국을 중심으로 분야별 14개 상설 위원회(Committees) 및 사무국의 8개국(Directorates), 비즈니스계 및 노동계,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 과학기술산업국에 혁신전략 전담관리팀(팀장 : Miriam KOREEN) 구성·운영
 - 참여 위원회 : 과학기술정책위, 산업혁신위, 정보통신위, 통계위, 공공지배구조위, 지역개발위, 소비자정책위, 무역위, 투자위, 조세위, 개발원조위, 환경위, 교육위, CERl

4) OECD Innovation Strategy의 주요 결과물

- Ministerial Policy Document : 혁신전략의 핵심사항 및 전략의 정책 원칙을 제시

- Synthesis Report : 주 보고서로서 혁신의 최근 동향 및 배경, 분야별 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 제시
- Measuring Innovation : 국가간 비교, 혁신과정의 개발 및 혁신전략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집
- Thematic Reports : 일련의 주제별 상세보고서
 - 기업 내의 혁신, 미시경제적 관점, 세계 혁신, 지식시장 및 네트워크, 혁신과 인적자원, 혁신과 기업가정신, 수요기반 혁신, 혁신의 측정 등
- Policy Handbook : 각 국가가 혁신정책 원칙을 실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종합하여 제시

5) 혁신전략의 핵심 내용

- ① OECD가 제시한 혁신의 5대 정책 원칙(Policy Principles)
 -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
 - 다양한 혁신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혁신과정에서의 참여, 혁신적 기업 문화를 조성
 -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정책 틀 및 환경 조성
 - 신생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증진하고 열린시장,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기업 및 건전한 위험 감수와 창의적인 활동 문화를 장려
 - 지식의 창출, 확산 및 적용은 필수
 - 효과적인 공공 연구 시스템과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의 창출, 순환 및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을 장려
 - 글로벌·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 혁신을 적용
 - 국제적인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증진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하는 혁신을 통해 세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연성 제공

- 혁신 정책의 거버넌스 및 측정 방식을 개선
 - 최고위층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결정 및 정책 신뢰성을 추구

② 혁신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

- 혁신에 대한 전략적 집중과 과학기술을 넘어서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확대
- 사회적 니즈를 반영한 교육·훈련 정책 추진
-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 확대
- 지식의 확산 및 적용 장려 메카니즘 개선
-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협력 거버넌스 체제 수립
- 혁신이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틀 수립

II. OECD의 주요 규범

1. OECD의 규범

가. 규범의 종류 및 효력

- OECD 규범은 크게 OECD 운영에 관한 규범과 OECD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규범 등 두 가지로 구분
 - － OECD의 근간이 되는 규범은 1960년 체결된 OECD 협약과 부속 의정서
 - － OECD 규범의 두 번째 범주는 이사회에서 OECD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되는 규범들인 바, 이를 통합하여 「the OECD Acts」라고 칭하며, 이에는 결정, 권고, 선언 및 협정·양해 등 총 220개 규범이 해당

1) 결정(Decisions)

- 결정 채택시 기권하지 않은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구속
 - － 법률적 성격상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회원국간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바, 회원국은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

2) 권고(Recommendations)

- 권고는 법률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를 대변하는 도덕적 힘을 가지며, 회원국들이 최대한 권고를 이행할 것이 기대됨.

3) 선언(Declarations)

- 정책수행에 대한 약속이 회원국에 의해 승인되지만, OECD의 정식 규범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음.
- 하지만 선언도 역시 이사회를 통해서 채택되고, 그 이행여부는 OECD 관련기구를 통해 점검 실시

4) 협정 및 양해(Arrangements and Understanding)

- 선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OECD의 정식규범은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음.

나. 규범의 이행방식

- 각 회원국의 OECD 규범수락은 가입시 OECD 제 규범*에 대한 수락 및 유보 입장을 가입문서에 표시하여 OECD 회원국 가입초청 협정의 형태로 OECD측과 서명함으로써 발생
- ※ 통상 “OECD acquis”로 지칭
- 가입 후의 규범수락행위는 정책방향에 관한 정치적 공약 행위로 그 규범자체가 조약으로서의 직접적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OECD의 규범이행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국별 검토회의(Country Review)를 통한 동료간 압력 (Peer Pressure) 등 독특한 이행확보 수단을 가지고 있음.

2. OECD 양대자유화 규약

가. 규약의 성격

- OECD는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보장되는 국제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961.12월 OECD 이사회의 결정으로 구속적인

- 규범인 양대자유화규약 즉,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을 채택
- 각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에는 상세한 자유화 의무 항목을 열거한 뒤, 각 회원국들의 자유화 유보 내용을 첨부
 - “원칙적 자유화, 예외적 제한”이라는 negative 방식을 채택
 -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되 각국의 제한조치를 유보라는 형식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기 자유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없는 “Standstill 원칙”이 적용
 - 유보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회의(review)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가 자유화를 유도(“Roll-back Mechanism”)
 - OECD의 양대자유화 규약은 서비스 거래의 비중 증대, 국제자본시장의 통합화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50여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
 - 1989년 5월에는 단기자본거래 및 은행·기타금융서비스를 새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폭적으로 수정·보완
 - 2011년 5월 각료이사회에서는 양대 자유화 규약에 대한 가입을 비회원국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나. 주요 내용

1) 자본이동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그 본문에서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 형태로 직접투자를 포함하여 단기 및 장기자본거래 등 국가간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본거래를 16개 분야, 91개 의무 항목으로 규정
 - 경상거래와 관련된 대외지급의 제한철폐를 의미하는 IMF 협정문 8조보다 자유화 범위가 포괄적

< 본 문 >

- 제1조 : 일반적 약속
- 제2조 : 자유화 조치
- 제3조 : 공공질서와 안전
- 제4조 : 기존의 다자간 국제협정상 의무
- 제5조 : 관리 및 절차
- 제6조 : 송금의 실시
- 제7조 : 적용면제 조항
- 제8조 : 자유화 조치에 따른 수혜권리
- 제9조 : 무차별원칙
- 제10조 : 무차별 원칙에 대한 예외 - 특별관세 또는 통화체제
- 제11조 : 회원국의 통보 및 정보제공
- 제12조 : 제2조 b)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사항 통보 및 심사
- 제13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면제의 통보 및 심사
- 제14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면제의 심사 - 경제개발 도상에 있는 회원국
- 제15조 :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면제에 관한 특별 보고 및 심사
- 제16조~제22조 : 위임사항 및 기타 절차적 규정

< 부속서 >

- 91개 자유화업무 항목을 열거(Annex A)
- 각 회원국의 유보사항을 열거(Annex B)

2)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 규약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 형태로 11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무역거래 및 서비스 거래에 따른 자금의 대외지급 및 이전, 국가간 서비스 거래 관련 계약체결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

규약의 주요 내용

< 본 문 >

-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대동소이

< 부속서 >

- 57개 자유화의무 항목을 열거(Annex A)
- 각 회원국의 유보사항을 열거(Annex B)

다. 주요 원칙

1) 점진적 자유화(Principle of Progressive Liberalization)

- OECD는 자유화규약을 각 회원국에 요구,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자유화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자유화 수용능력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방식을 채택
- 이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이 자유화 규약에 명시된 자유화 항목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화 유보(Reservation) 또는 적용면제(Derogation)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

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내국민대우 원칙은 외국인의 국내시장 진입이나 일단 설립된 외국인 기업에 대한 대우를 내국인이나 내국인 기업의 경우와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자본이동 규약상의 대내직접투자항목에 포함된 회사설립 관련 사항과 경상무역외거래 규약상의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공급 기업의 해외지사와 대리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항목 등에 동 원칙이 명기

3) 무차별대우(Non-Discrimination)

- 무차별대우의 원칙이란 한 회원국의 자유화 조치는 여타 회원국의 자유화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 예외 : ① EU와 같이 관세 또는 통화동맹을 결성하여 해당국가에게 OECD 자유화 규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② 금융 또는 보험서비스분야 등 일부 분야에서의 대내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③ 금융기관 영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건전성규제(Prudential Regulations)도 제한적으로 인정

라.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과의 관계

- 양대자유화 규약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 선언과 함께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보장하는 3대 OECD 규범을 구성
- 다만, 동 선언이 기 설립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이 주요내용인데 반해, 양대 자유화 규약은 비거주자의 신규투자, 기업의 신규설립 또는 기설립된 기업의 신규투자 분야에서의 자유화 및 내국민대우를 주로 규정

마. 자유화규약상의 각종 안전장치(Safeguard)

1) 자유화 규약상 인정되는 안전장치의 의미

- OECD 양대 자유화 규약상의 자유화는 원칙적으로 유보항목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할 수 없는 Negative 방식을 채택
-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
 - － 국가안보, 공중보건,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또는 국제수지악화나 심각한 경제불안이 야기된 경우 자유화 의무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

- 다만, 이와 같이 적용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도 OECD 특유의 성격에 따라 여타 회원국이 이를 인정 또는 승인하는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협의보다 사후 승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³⁾가 있을 것을 요구

2) 안전장치의 종류

- 자유화 항목에 대해 별도의 자유화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보(reservation)를 해 둘 수 있는 권리
 - 가입시 유보한 것 이외에도 회원국간에 합의에 의해 새로 자유화 항목 자체가 추가되었거나 기존 항목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의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유보가능
 - 특히 자본자유화 항목상의 List B의 경우에는 standstill이 적용되는 List A와 달리 일단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시로 재차 유보가능한 항목으로 인정(2조 b항)
 - 우리나라도 가입당시 총 149개의 자유화 항목 중에서 51개 항목에 대해 유보를 인정받고 가입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자유화 조치를 거쳐 현재는 40개 항목 유보
-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규제권리(3조)
 - 공공질서 유지, 공중보건, 도덕 및 안전의 보호를 위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이익 보호를 위한 경우, 세계평화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 일례로 일본은 별도의 유보조치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신 시장의 완전개방을 아직 취하지 않고 있음.

3) “객관적인 사유”는 각 회원국이 회원국간의 신뢰 원칙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자유화 유지를 위한 하나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 또한, 이렇게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후에도 일정기간(6개월, 18개월 등) 마다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적용유보 조치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따라서, 적용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측면보다는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조한다는 성격이 강함.

- 적용면제(Derogation) 조항(7조)
 - 자국의 경제, 재정, 금융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유화 조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이행중인 자유화 조치로 인해 경제, 재정, 금융상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경우 모든 자유화 조치의 철회 가능(7조 a항, b항)
 - 국제수지사정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 자유화 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7조 c항)할 수 있으나 조치 후 12개월 이후에는 적정 수준까지 다시 자유화 하여야 하며, 18개월 후에는 동 규제조치를 철회(본래의 자유화 조치로 환원)하도록 의무화(7조 d항)
 - 여타의 안전장치 발동은 OECD가 승인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 6개월마다 OECD에 의해 그 타당성에 대해 재심사를 받아야 함. (13조)

3.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가. 성격 및 주요내용

1) 성 격

- 대표적인 권고적 성격의 규범이지만, 이에 상충되는 제도나 조치를 회원국에 통고할 의무와 위원회에서의 협의 및 검토(Review) 등의 절차를 통해 본 규범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 본 규범은 기 설립된 외국기업의 영업활동 자유화 문제에만 적용되며, 신규투자 및 기업의 신규설립은 OECD 양대 자유화규약의 적용대상

2) 내 용

- 주요내용
 - 다국적 기업의 영업형태에 관한 지침(Guideline)

- 내국민 대우 부여
- 다국적 기업에 대한 회원국간의 상충되는 규정(Conflicting Requirement) 적용 자제
- 각국의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 유인제도 및 투자 제한적 조치(Incentives and Disincentives)의 인정
- 협의 절차
- 3년마다 정기적인 검토
- 동 선언의 각 항목별 내용(Instruments)에 관한 절차상의 결정(Decisions)을 동 선언의 첨부문서(투자규범 부속서)로 채택(상세 내용은 후술)
 - 내국민대우에 관한 결정(Third Revised Decision of the Council on National Treatment, 1991)
 -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Second Revised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991)
 - 국제투자에 대한 투자 유인제도 및 투자 제한적 제도(Second Revised Decision of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Investment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1984)
 -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상충되는 요건(Decision of the Council on Conflicting Requirements being imposed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1991)
 -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나. OECD 투자규범상의 내국민대우(투자규범의 부속서)

1) 내 용

가) 내국민대우 정의

- 자국 영토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Foreign-Controlled

Enterprises)에 대해 국내법, 제도 및 행정 관행상으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것

- 국내 공공질서 및 안보유지, 국제법상의 평화와 안보관련 의무 준수를 위한 예외적 조치는 인정

※ “불리한 대우” 금지의 의미

- 내국인 기업과 같은 분야의 영업활동 범위에 한정
 - 정책목표에 따른 차별조치의 경우, 동 차별조치가 외국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위배
- 내국인대우에 상응하는 대우(Equivalent Treatment)의 부여(91년도 개정시 추가로 도입된 개념)
 - 금융, 보험, 운송 등의 분야에서 각국간 법적, 기술적인 기준이 상이하여 내국인대우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국별로 상이한 기준(소위 Prudential Measures) 적용 인정
 - 내국인 기업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을 전제조건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
 - 위원회(CIME)에서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각 회원국의 Prudential Regulations의 허용범위를 축소해 나감으로써 점차 내국인대우 수준으로 이행
 -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
 - 회원국별 상이한 여건을 인정하여 상이한 방법 및 상이한 속도로 궁극적인 목표 달성
 - 기 타
 -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적용확대 노력
 - 연방국가의 주정부 관할지역에도 적용 노력

나) 내국인대우가 적용되는 대상 및 영업활동

- 해당국에 유효한 상업적 주재(Effective Commercial Presence)를 하고 있는 외국의 공공기업 또는 사기업

- 모기업, 자회사(현지법인), 자회사의 지사 등
- 단, 비거주 모회사의 지점(독자적인 영업활동 능력이 없는 단순한 대리인 역할)과 개인의 영업활동은 대상에서 제외
- 기 설립된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조치
 - 동 선언은 외국인 투자유입과 외국기업의 설립조건에 관한 각 회원국의 규제권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내포
 - 신규설립, 투자자본의 신규유입, 기설립 기업의 신규투자활동, 비거주 모회사의 지점영업 그리고 금융, 보험, 운송 등 특별한 대상분야는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규약”과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의 적용대상(즉, 일단 설립되고 투자된 이후의 영업활동에만 이 선언상의 “내국민대우”원칙 적용)
-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단체의 내부규정(by-law)에 의해 행해지는 차별적 관행은 내국민대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규약”은 금융분야에서의 정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간 협의체 또는 협의기구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

다) 무차별 원칙

-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가급적 배제하고, 상대국의 조치와 상관 없이 무차별적인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을 권유
 -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자유화 수준에 상관없이 내국민 대우의 수혜권리가 있다는 기본원칙 견지
 - 상호주의는 다자간 자유화 접근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 재정, 금융, 서비스분야의 상호주의 적용은 부분적으로 인정

2) “내국민 대우”원칙 적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91년 이사회 결정 형식으로 강화)

가) 적용분야

- 아래 5개의 중요 영업 관련분야에서 회원국의 국내법, 제도 및 행정관행상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
 - 기설립된 외국기업의 투자(Investment by Established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 공적 지원과 보조금(Official Aid and Subsidies)
 - 조세의무
 - 정부조달
 - 현지금융접근(Access to Local Finance)

나) “내국민 대우”에 반하는 조치의 구분

- 내국민 대우에 명백히 위배되는 현행조치(Exceptions to National Treatment)
 - 승인, 인가요건, 취득과 활동에의 제한, 외국인 소유 한도의 제한, 국내기업의 특정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세금 또는 특별세,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개방되는 공공 프로젝트 등
 - 차별적인 조치이나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기타 조치
 - EU 회원국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내국민대우 조치(로마 협정 제58조 관련사항)
- 명백한 차별은 아니나 외국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소위 “Transparency” 대상조치)
 - 공공질서 및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조치
 - 비차별적이기는 하나 외국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조치
 -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독점분야
 - 공공기업에 대한 원조와 보조금

- 연방형태 국가의 경우 주정부 차원의 차별적 규제제도

다) 통고의무 및 심의, 분쟁해결

- 각 회원국은 내국민대우에 반하는 제한조치를 열거하여 위원회에 통고할 의무부담
 - 각국별 내국민대우 예외사항(National Treatment List of Measures Reported as Exceptions and for Transparency)을 3차 개정선언에 첨부문서로 규정(일종의 offer list 화)
 - 각 회원국은 조치의 변경, 신규조치를 취한 후 60일 이내에 통보할 의무
 - 통보된 조치는 Peer Pressure를 통해 점진적 자유화 추진
- 위원회는 회원국의 통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심사(Examine)하는데, 그 절차는 OECD 양대자유화 규약상의 절차와 동일
- 각 회원국은 타회원국의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위원회에 협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각 회원국에 대해 특정조치의 시정을 권고

라) Standstill 원칙 등의 적용(88.11 투자위원회 결정사항)

- 내국민대우에 반하는 새로운 제한 조치나 관행의 금지
 - 1991년 6월 OECD 각료이사회는 Standstill, Non-Discrimination, Transparency, Roll-back 원칙의 강화를 결정
- 예외적 인정분야
 - 내국민대우원칙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유보 권리의 인정
 - 내국민대우가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를 취할 때(예 : 독점적 공공기업활동을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시 특정형태의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등)

마) 정기적 검토

- 현행 제도와 미적용 대상분야에 대한 새로운 적용 가능성을 정기

적으로 검토

－ 검토결과는 OECD 이사회가 승인·채택

다.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투자규범의 부속서)

1) 개정 경위

- 1960-70년대에는 다국적 기업이 개도국 국내정치에 개입(철레 사회주의 정권 전복에 있어서의 ITT의 개입설 등)하거나 개도국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공여하는 등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점차 세계화 되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확산
- 1991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2000. 6월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지침 채택을 통해 개정
 -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철폐에의 기여, 주재국 경쟁법령 준수, 뇌물 공여금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되었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금운용” 부문은 삭제
- OECD 비회원국의 세계경제 비중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한 차원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
 - － 2000년 이후 급속히 달라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의 양태와 생산 및 소비 패턴의 변화를 포용할 수 있도록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 확정(11.5월 각료이사회)

2) 주요내용(2011. 5월 개정)

- 서 문
 - －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임을 명시하면서도 동 가이드라인 수락국 정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사회

결정을 수용할 것을 의무화

○ 개념과 원칙(제1장)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주재국 법령 준수, 중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국내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필요성 명시

○ 일반정책(제2장)

- 지속가능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환경, 경제분야에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
- 기업활동 관련 인권을 존중할 것
- 지역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긴밀히 협조
- 위험에 기초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기업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추가)
-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지지하고 좋은 기업지배 관행을 개발할 것
- 사업파트너(공급사슬상의 상대방 포함)로 하여금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권유할 것(추가)
- 부적절한 정치활동 개입을 삼가할 것
- 인터넷 자유(온라인상의 표현,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존중 포함)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추가)

○ 정보의 공개(제3장)

- 다국적 기업은 회사의 경영성과, 기업목표, 주요 주식소유관계 및 투표권, 이사회 구성, 향후 주요 위험 요인, 피고용인 및 주주관련 주요 쟁점사항, 기업지배구조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
- 영업에 관한 재무제표, 위기대처 시스템 관련 정보, 피고용인 및 주주관계 정보를 추가로 공개토록 해야 함

○ 인권(제4장)- 신설

- 관련 국내법규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할 것(인권 침해

- 방지 외에 기업관련 침해된 인권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기업활동 관련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인권존중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 회사의 규모와 기업활동의 내역을 감안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적절한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
- 노사관계(제5장, 기존의 employees를 workers로 변경)
 - 노조 등에 의해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
 - 아동 노동의 효과적인 철폐에 기여할 것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철폐에 기여할 것
 -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자 대표에게 편의시설 및 정보를 제공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증진토록 할 것
 - 기업전체의 경영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할 것
 - 노사관계 기준(standards)을 준수할 것
 - 개도국에서 활동중인 다국적기업이 참고할 고용주가 없을 경우 주재국 정부의 정책들 내에서 최대한의 임금을 제공토록 하며, 적어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여야 함(추가)
 - 가능한 한 현지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것
 - 피고용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영업 방침의 변화(철수, 집단해고 등)에 관한 정보는 합리적인 시점에서 사전 통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 단체교섭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위협행위 금지(철수, 근로자의 타국전출 등)
- 환경(제6장)
 - 환경에 관한 시의적절한 정보의 수집 및 평가,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가능한 목표의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는 “환경관리체제”를 구축·유지토록 하며 목표는 관련 국내정책과 환경 부문 국제적인 약속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추가)
 -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주재국의 환경·보건·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할 것

- 영업활동에 따른 심각한 환경 악화 및 건강피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뇌물방지(제7장)

- 다국적 기업은 뇌물을 제공해서도 뇌물요구를 받아서도 안됨
- 뇌물관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통제, 윤리교육 및 순응 프로그램 마련 및 평가 실시
-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적인 약속 및 관리시스템 공개

○ 소비자 보호(제8장)

- 생산제품의 구성·보관·사용방법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소비자 기만, 오해유발, 사기 및 불공정한 기업관행을 피할 것
-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 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투명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과학기술(제9장)

- 주재국의 과학기술정책에 적합한 경영활동을 통해 기술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
- 상업적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주재국의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공동연구에 참여할 것

○ 경쟁정책의 준수(제10장)

- 소비자, 공급자, 지역 또는 상업라인을 구분하는 시장분할, 생산량 제한 또는 쿼터를 설정하거나 가격담합, 입찰공모 등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주재국의 경쟁법에 상응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
- 피고용인들에게 주재국 경쟁법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조세(제11장)

- 적절한 시점의 납세를 통해 주재국의 공공재정에 기여함이 중요
- 기업들은 조세납부 관련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할 것

3) 가이드라인 절차 규정 개정 : 국내 연락사무소(NCP)의 역할 강화

- National Contact Point 조직 확충 및 성과 제고

- (자문 및 감독위원회) 다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 및 감독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와 토론) 이해관계자와 토론을 정례화할 의무
- (동료 학습) 자발적인 회원국간 검토(peer review)를 포함한 동료학습(peer learning) 활동 참여를 권장
- (인적·재정적 지원) 수락국 정부는 NCP에 적절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

라.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상충요건(투자규범의 부속서)

1) 개 요

- 각국의 국내법, 제도, 규정의 역외 적용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1984년 협정(Agreement) 마련

2) 내 용

가) 대상분야

- 경제적 목적을 위한 관할권의 적용
 - 조세, 금융, 증권거래규제, 경쟁정책, 민간항공, 해운 등의 분야에서 빈번히 관할권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공통규범 마련 노력

- 바젤협약(Basel Concordat 79) : 은행업에 있어서의 Prudential Supervision의 원칙 등 규정
- OECD Revised Recommendation concerning Cooperation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1986) : 경쟁정책 조화에 관한 사항
- OECD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 조세분야

-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을 위한 역외 적용
 - 자산규제, 무역제한, 수출규제, 투자금지 등의 조치

나) 회원국간 통보·협의 등 협조

- 양자간 협력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한편, 각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조기 통보장치를 통해 가능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다자간 접근 시도

마. 투자 유인제도 및 투자 제한적 조치(투자규범의 부속서)

1) 개 요

- 각 회원국이 취한 관련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투자 정책 및 지침의 위원회 통보 및 협의
 - 관련 조치의 목적, 추세, 영향에 관한 연구
 - 제한적인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를 억제하는 효과 기대

2) 통고대상 조치

가) 투자 유인제도(Incentives)

- 투자결정 또는 투자이익증대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조치
- Incentive 제공조건을 제한하는 것(가격요건 규정)은 투자 제한적 조치로 간주되지 않음.

- 재정적 조치 : 평가절하, 세금환급, 면세 등
- 금융조치 : 무상제공(Grants), 저리대출, 융자보증
- 비금융적 조치 : 사회간접자본제공, 정보·자본·경영 서비스 제공
- ※ 개도국은 주로 재정적 조치를 중점활용(수출가공구역 지정을 통한 조세특혜, 기본시설제공 등)

나) 투자 제한적 조치(Disincentives)

- 신규 투자설립 허가상의 제한조치
 - 특정조건의 이행요구 등
 - OECD 자유화 규약, 내국민대우상의 보조금, 정부조달 규정 적용대상
- 무역관련 투자제한조치(TRIMs)
 - Local Content 충족
 - 수출, 생산, 판매, 공급, Licensing, 기술 이전, 주식 참여제한, 외환송금, 금융접근제한, 고유 영업과 관련없는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 등
 - 다국적 기업의 주재국 국내경제와의 통합도 향상 등 주재국의 이익확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 문제점
 - 관련 법률·제도·정책방향의 안정성과 투명성 결여
 - 개도국의 규제(Local Content 충족, Export Requirement)가 일반적인 규제 형태

3) 최근의 추세

- 투자 제한적 조치는 각국의 규제완화 경향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무역관련 투자제한 조치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투자 유인제도는 과거 보조금 지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 정부 간섭의 축소, 정부결정에 있어서의 시장기능 존중 경향
- 조세감면에 의한 유인보다는 영업환경 개선방향의 유도
- High-Tech 관련 제조업 분야에 대한 Incentive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영향유도(Horizontal Approach)
- High-Tech 관련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유인(정보통신, 생명공학, 금융서비스 등)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인확대 등

4. 기업지배구조 원칙

가. 제정 및 개정 경위

- 1998.4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999년도 각료이사회까지 제정하기로 결정
 - '98.8 제1차 특별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주요내용을 논의 : 투명성과 공시, 소유와 통제, 주주의 동등대우, 이사회의 역할 등
 - '98.10 제2차 특별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초안 논의 :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 다만, 이해관계자의 권한을 포함, 수준 등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
 - 1999년 2차례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각료이사회('99.5)까지 확정 추진
- '99.5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원칙”을 확정
 -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제정('99.9)시 동 원칙을 반영
- OECD는 2002년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개정작업에 착수, 2005.6월 이사회에서 개정 기업지배구조 원칙 채택
 - 기업지배구조 조정그룹은 2004.2월까지 7차 회의를 거쳐 새로운 문안 확정

나.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주요 내용

- 제1장 : 주주의 권리
 - 주총에 관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제공 등 주주의 권리행사를 촉진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 특정인이 소유한 지분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자본구조나 주주협약 등은 공시되어야 함.
- 제2장 : 주주권의 평등 대우
 - 주주총회의 과정과 절차는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해야 함.
 -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와 자기거래(self-dealing)는 금지되어야 함.
- 제3장 : 여타 이해관계자의 역할
 - 법적으로 보장되는 이해관계자(채권자, 종업원 등)의 권리는 그 규제 장치도 보장되어야 함.
 -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제4장 : 공시와 투명성
 - 공개되는 정보는 회계·재무·감사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전문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감사되고, 공개되어야 함.
 - 공시는 신속하고 저렴한 접근이 가능한 방법(예 : 전자공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5장 : 이사회의 책임
 - 이사회는 구성원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함.
 - 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비상임이사를 두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다.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 제정 경위

- 1999.5월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제정과 2004년 원칙 개정에 발맞추어 2002년부터 공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음.
- 공기업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조정 그룹(Steering Group)과 산하의 공기업 민영화 및 지배구조 작업단(Working Group on Privatisation and Governance of SOEs)을 통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
- 동 작업단은 '02.2월~'05.3월까지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04.10월 작성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각국의 공기업 경영관리 총괄기관, 의회, 지배구조 전문가, World Bank·IMF 등 국제기구, 다수 공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05.3월 기업지배구조 조정 그룹과 '05.4월 이사회를 거쳐 최종 발표

2)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공기업 관리관련 정부기능을 “소유권기능”과 “규제산업정책기능”으로 명확히 분리할 필요
 - ※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 : 공기업의 임원임면, 경영평가, 경영공시, 이사회 등과 관련한 “소유권자”로서의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 “소유권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관의 설립 혹은 동 기능의 집중화(centralization)가 바람직한 방안
- 모든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함.
- 주주 이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이 운용될 필요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유권 행사기능 수행기관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을 권유.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도 필요
- 전략적 자문, 경영진 감시, 경영진 임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권한·능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 이사회에 기능 보완을 위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 필요

5. 뇌물방지협약

가. 배경 및 연혁

- 1989년 OECD는 국제상거래시 부패 문제를 처음 다루기 시작
 - － 이는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1977)’을 제정한 이후 국제상거래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법이 없는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데서 비롯
- 1994.5월 OECD 이사회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행위가 경쟁 조건을 왜곡한다는 인식하에 「국제상거래시 뇌물방지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채택하고,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산하에 뇌물 방지작업반을 설치토록 권고
- 2007.5월 OECD 각료이사회는 구속력있는 뇌물방지협약 제정 추진 결정
- 1997.7월부터 단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뇌물방지협약(정식 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문안에 합의하고, 1997년 12월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협약서명(1999.2월 협약 발효)

나. 주요 내용

- 목적(협약 제1조 1항)
 - 뇌물 수뢰행위(passive bribery)가 아닌 공여행위(active bribery)를 형사처벌
 - 대부분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내 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는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었으나, 외국 정부관리에 대한 뇌물공여는 처벌하지 않았던 문제 존재
- 협약의 규율대상 행위
 - 외국 공무원(foreign public officials)에 대한 뇌물공여에 한정
 - 민간간의 뇌물공여(commercial bribery) 제외
- 외국공무원의 범위(협약 제1조 4항)
 -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자(객관적 정의)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등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행사하는 자와 국제기구 공무원으로 정의(기능적 정의)
- 공기업의 범위
 -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공기업으로 간주하나, 공공기능은 행사하지 않고 시장에서 특혜적 보조금이나 특권 없이 정상적인 경쟁을 하는 기업은 불포함
- 뇌물죄 구성요건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공여 또는 약속하는 모든 뇌물을 포함
- 처벌 대상
 -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
 - 해당법인이 해외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법인의 고위책임자가 뇌물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 뇌물에 대한 몰수추징은 물론 국내뇌물죄에는 없는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까지 몰수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한 처벌은 국내뇌물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부과
- 효과적인 이행
 -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뇌물제공행위의 효과적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포괄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를 규정
- 가입 조건
 - OECD 비회원국에게도 가입이 개방되나, 협약 가입에 선행하여 「뇌물방지작업반」 정회원(full participant)이 될 필요

6. 모델조세협약⁴⁾

가. 배경 및 연혁

-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1950년대 이후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자간 조세협약 제개정시 필요한 통일적인 해석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1963년 협약 초안 제정
 - ※ 1963년 협약 초안은 OECD의 전신인 OEEC(유럽경제협력기구)가 1955.2월 채택한 이중과세에 관한 권고안이 모태가 되었음.
- 이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는 이중과세 방지는 물론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조세규범으로 정립
 - 경제거래의 복잡화, 조세회피 기법의 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전면 개정을 거쳐 1992년에는 외부 이해

4) 소득과 자본에 관한 모델 조세협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현재 형태의 모델협약이 출간

- 또한, 1997년에 이어 2003년에는 전자상거래 등 신종거래의 출현, 자본이동 자유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석서를 대폭 개정하여 협약의 목적과 해석을 명료화
- 지난 10년여 논의 끝에 2008년 발간된 「고정사업장의 이익 배분에 관한 보고서」 결과를 반영한 제7조(사업소득) 개정사항을 2010년 개정판에 포함

나. 역할 및 중요성

- OECD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도 양자 조세협약을 체결 또는 개정할 때 동 모델협약을 참고할 정도로 조세협약의 교섭, 적용 및 해석에 있어 지속력이 있는 지침(guideline)의 역할
 - 동 모델협약의 조문은 회원국의 합의에 의한 단일원칙(a single rule)을 추구하지만, 각각의 조문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은 조문(article)에 대해서는 유보(reservation), 주석(commentary)에 대해서는 이견(observation) 부기 가능
 - 특히, 모델협약 주석서(commentary)는 과세당국은 물론 납세자가 사업 또는 투자를 계획할 때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주 인용될 정도로 중요성이 커져 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음.

다. 주요 내용

- 거주자(resident),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등 중요 개념에 대해서는 협약의 목적·취지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술
 -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협약의 부정 사용(improper use)시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배제 가능
 -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명시

- 소득 유형별 과세권 배분원칙에 관해 규정
 -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거주지국에서 과세
 -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로 과세 가능
 -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 민간연금 등은 거주지국 과세원칙
- 이중과세 제거 방법으로 소득면제 방법(exemption method)과 세액 공제 방법(credit method) 중 체약국이 선택
- 특별규정으로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절차,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조세징수협조 등 규정

모델조세협약 조문

〈제1장〉 협약의 범위

- 제1조 : 적용범위(persons covered)
제2조 : 대상조세(taxes covered)

〈제2장〉 정의

- 제3조 :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
제4조 : 거주자(resident)
제5조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제3장〉 소득의 과세

- 제6조 : 부동산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제7조 : 사업소득(business profit)
제8조 :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
제9조 :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s)
제10조 : 배당(dividends)
제11조 : 이자(interests)
제12조 : 사용료(royalties)
제13조 : 양도소득(capital gains)
제14조 : 삭 제
제15조 : 근로소득(income from employment)
제16조 : 임원보수(directors' fee)
제17조 : 예술인 및 체육인(artists and sportsmen)
제18조 : 연금(pension)

제19조 : 정부용역(government service)

제20조 : 학생(student)

제21조 : 기타소득(other income)

〈제4장〉 자본의 과세

제22조 : 자본(capital)

〈제5장〉 이중과세 제거 방법

제23A조 : 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

제23B조 :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제6장〉 특별규정

제24조 :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제25조 :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s)

제26조 :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제27조 : 조세징수 협조(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제28조 : 외교사절과 영사직원

제29조 : 적용지역 확장(territorial extention)

〈제7장〉 부칙

제30조 : 발효(entry into force)

제31조 : 종료(termination)

제3부

우리나라와 OECD

- Ⅰ.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및 연혁
- Ⅱ. 우리나라의 OECD내 활동현황
- Ⅲ. OECD 활용을 위한 국내저변 확충



I. 우리나라의 OECD 가입 및 연혁

1. OECD 가입추진 배경

가. 세계 정치경제 질서체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 1980년대 말 냉전체제 붕괴이후 국가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우리의 안보·경제외교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
 - 또한 OECD, WTO, APEC, ASEM, EU,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FTAA(범미주자유무역지대) 등 국제협력 확산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개방경제체제 확산에 능동적 대응 필요성 강화
- OECD 가입은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 APEC 활동 적극 참여 및 2000년 ASEM 정상회의 유치 등 보다 광범위하고 중추적인 국제협력체제 참가의 일환으로 추진

나. 선진 경제와의 협력강화 필요성 대두

- OECD 가입을 통해 GDP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9위, 자동차 생산 5위, 반도체 생산 2위 등 경제역량에 상응한 국제적 지위 확보 및 OECD 회원국들과의 유대 및 정책협조 강화 필요성 대두
- OECD 회원국들의 경제·사회정책 경험을 습득·활용하고 새로운 국제경제·무역정책논의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분야 공공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 대두

2. 가입조건 교섭결과

가. 교섭 추진 경과

- 1989년 OECD와의 협력사업 추진
- 1992년 OECD측에 “1990년대 중반 가입의사” 표명
- '95.3.29. 외무부장관 명의 OECD 가입신청서 공식 제출
- '95.11~'96.7. OECD 가입 조건 협의
 - － 심사분야(7) : 자본이동, 금융시장, 투자, 조세, 보험, 해운, 환경
 - － 정책검토(4) : 경제정책, 무역, 농업, 노동
- '96.10.11 OECD 이사회에서 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 초청키로 결정
- '96.10.25 외무부장관이 OECD 가입초청 협정 서명
 - － '96.10.31. 국회에 가입 동의안 상정

나. 주요 쟁점

1) 기후변화협약과 농업부문에서의 우리의 개도국 지위

-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관련, OECD 국가들은 우리 정부가 정회원국이 되면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으로서 부담을 질 것을 요구
 - －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될 당시 OECD 회원국들은 모두 온실가스배출 규제대상국으로 합의되었으나, 한국은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 협약의 부속서 I (Annex I)에 표기된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OECD측은 이제 회원국인 우리나라를 당연히 부속서 I (Annex I) 국가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

- 양측은 논의 끝에 한국이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과 함께 부담을 질 것을 예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선에서 합의
-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한 상황과 농업정책방향을 설명함으로써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확보
 - OECD 가입교섭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없었음

2) 금융자유화

-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91항목 가운데 41개 항목,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57항목 가운데 10개 항목 등 51개 항목에 대해 유보

3) 노동법 개정

- 노동법 개정은 우리정부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취한 문제로 가입심사나 검토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사회와 한국가입에 대한 최종 심의과정에서 노조자문위원회(TUAC) 등이 문제를 제기하여 한국 가입건이 지연됨.
 - 그동안 우리 정부가 ILO, OECD의 ELSAC에서 밝힌대로 노동법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예정이며 1996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노동법 정부개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선에서 합의

다. 분야별 가입조건 교섭 결과

1) 자본이동, 금융 분야

- 「양대자유화 규약」상의 148개 자유화 항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화 정책 심사
 - 자본이동자유화 규약(91개 자유화 항목)
 -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서비스분야의 57개 자유화 항목)
-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한 점진적, 단계적 자유화 원칙을 견지하여 주요 분야에서 폭넓은 유보 확보

- 《양대 자유화 규약 유보현황(1996.10월 현재)》

구 분	한국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91항목)	41	25	32	41	42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57항목)	10	14	10	11	12
양대자유화 규약 합계(148 항목)	51	39	42	52	54

- OECD에 의한 강요보다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한 장기적 자유화 추진 계획('93년의 3단계 금융자유화계획 : Blue Print 등)에 따라 자유화 추진

- OECD 가입교섭과정에서 당초 계획의 일부 분야의 이행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기거나, 구체화하여 제시
- 내외금리차 2% 이내 축소, 인플레이 3% 이내 안정 유지 등 경제여건 허용시에만 자본시장의 완전자유화 예정
- 투기적 핫머니의 유입을 유발할 선물거래 등 파생금융시장, 단기 금융시장 부문의 자유화는 유보

2) 투자분야

- 95년에 마련된 「외국인투자 자유화 계획」에 따른 2000년까지의 단계별 자유화 계획 제시
 - 투자업종기준 자유화율을 1997.1월 97.4%에서 2000.1월까지 98.4%로 점진적으로 증대
- 우호적인 기업인수·합병(M&A)을 허용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1996년 말 20%에서 1999년까지 29%로 단계적으로 확대

-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현행 5%에서 2000년까지 10%로 점진적 확대

3) 조세정책분야

-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정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심사의 초점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96.1.1 발효)을 제정,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인 OECD의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를 수용
- 주요국과의 기업과세 관련 마찰 타결
- 국내기업의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세회피 방지제도를 도입

4) 보험분야

-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 test)를 폐지하고 일부 보험업 개방 가속화
- 국내거주자가 외국 보험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허용

5) 해운분야

- 1998년 말까지 지정화물 유보제도 폐지
 -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해운분야의 체질 개선과 효율성 제고로 물류비용 절감 기대
- ※ 지정화물 유보제도
 - 일부 전략 물자를 자국선만을 이용해 운송토록 제한하는 제도 (미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은 모두 자유화)
 - 우리나라는 현재 비료, 곡물, 화학물질, 석탄, 제철원료, 원유, 액화가스 등 7개 품목에 대해 지정화물 유보 제도 유지

6) 환경분야

- 환경분야 규범 60개 중 48개 수락, 12개 유보
- 기후변화협약상의 개도국 지위(non-Annex I) 유지

라. 분야별 정책검토 결과

1) 거시경제 정책

- 한국의 거시경제운영과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
 - － 검토결과를 OECD/한국경제보고서(Korea Economic Survey)로 발간
-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과제를 고려하여 경제 정책을 입안·운용할 필요성 지적

2) 무역정책/개도국 지위

- 기존 UR 협정 이행상의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
 - － 특히 농업 및 기후변화협약상의 개도국 지위 계속 확보
- 수입선 다변화정책을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3) 농업정책

-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한 상황과 농업정책방향을 설명함으로써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확보
- OECD 가입교섭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요구는 없었음.
- 농업분야의 규범은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유보(11개)
 - － 「농업용 트랙터의 공인 검사를 위한 OECD 표준코드」 가입시 우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국제적인 공인을 얻게 되어, 국산

트랙터 수출 증대(연간 2천만불 이상)에 기여하므로 동 코드에 OECD 가입 이전 기 가입('95)

4) 노동정책

- 다수 회원국이 노동조합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어 가입 교섭 막바지에 우리나라의 노동권 문제가 주요 정치문제로 등장
 -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이 복수노조 및 3자 개입 인정
- 「노개위」건의에 기초하여 노동법 개정안을 '96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여 회원국의 이해 확보

《 금융·투자부문 주요 자유화조치 및 여타국과의 대비표 》

◎ : 완전자유화

분야별	자유화조치 내용(유보)	최근가입국	기존회원국
기업합병 (M&A)	- 총 자산 2조원 미만 대기업에 대한 우호적 M&A 허용(97.1) ※ 약 70개 정부허가대상(2조원 이상) 기업 잔류	◎ (우호적, 비우호적 합병을 모두 자유화)	◎ (자 동)
직접투자 성격의 차관	- 외국인 투자기업의 5년 이상 자본재수입용 차관에 대해서만 일정한도 내 허용(97년 중) - 외국인 제조업 투자업체의 현금차관 도입을 일정한도 내 허용(99년 말)	◎ (5년 이상의 차관은 완전자유화)	◎ (자 동)
은행업 및 증권업	-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지분참여 허용 (97.1) (일반은행 4%, 지방은행 15% 투자한도) -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허용(98.12)	- 멕시코 및 체코는 투자 비율 제한 (각 30%, 33%)	◎ (캐나다 등 9개국이 부분적 유보)
해외투자	- 개인의 대외투자한도는 백만 달러 이내 허용(96.7) - 자기자금조달 의무제도를 폐지(98.1)	◎	◎ (일본, 터키, 포르투갈은 부분적 유보)

분야별	자유화조치 내용(유보)	최근가입국	기존회원국
해외증권 발행	- SOC 용도의 일정하고 내 발행허용 (97.12) - 발행자요건을 Negative System으로 변경(국가신인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 (99.12.)) - 발행하고 폐지(99.12.)	◎ - 멕시코 : 자국 통화표시 증권 발행은 제한 - 체코 : 일부 사전허가	◎ (독일 등 4개국 : 자국통화 표시채 발행을 제한)
외국인 주식투자	- 외국인 전체한도를 매년 3%씩 확대 (20→23→26→29%)(97~99) - 1인당한도를 매년 1~2%씩 상향조정 (97~99), 2000년에 10%까지 허용 - 외국인투자개방업종은 1인당 한도 제한 폐지(2000) - 전체한도 폐지(2000)	◎ - 단, 직접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우리와 같은 수량 규제는 없음.)	◎ (좌 동)
외국인의 채권투자	- 채권형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발행 한도 확대(96년 중) - 중소기업 전환사채의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상장금액의 30→50%, 1인당 5→10% : 96년 중)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의 직접투자 허용(특정하고 내 : 97.12.) - 대기업 전환사채(98.12.) 및 무보증 장기채(99.12.)의 직접투자허용(한도내)	◎ - 단, 직접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그러나 우리와 같은 수량규제는 없음.)	◎ (좌 동)
무역신용	- 대기업 수출선수금한도 상향 조정 (15%→20%→폐지) (96~99) - 중소기업(97년) 및 대기업(99년)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180일로 확대 - 180일 초과 연지급 수입 허용 (실수요 : 2001)	◎	◎ (터키, 아이슬랜드만 제한)
현금차관 및 시설재 상업차관	- 중소기업 시설재 상업차관 자유화 (96년 중) - 대형 SOC 사업용도의 제한적 허용 (97년 중) - 첨단기술 영위 대기업 시설재 차관 허용(97년 중) - 시설재 상업차관 자유화(99년 중)	◎	◎

3. OECD 가입 추진 연혁('78~'96.12)

시 기	내 용
78. 10.	○ 철강위원회 설립직후 우리나라 가입초청 (주불대사 앞 사무총장명의 정식초청장 발송) ○ 무역위원회 산하 수출신용그룹에 옵저버 참여요청 (우리나라 옵저버로 참석)
80. 1.	○ OECD 사무국, 우리나라와 경제협의회 개최 제의
82. 10.	○ 조선실무작업반 제1차 비공식 전문가회의 참가(민간대표)
83. 2. 12.	○ OECD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가입에 부정적 전망 피력 ○ 조선실무작업반 사무국장 방한
84. 7.	○ 조선실무작업반 제2차 비공식 전문가회의 참가 (민간대표, 주불대사관 상무관)
86. 11.	○ 조선실무작업반 한국연락단(Liaison Group) 설치
87. 7. 11.	○ 베네치아 G-7 정상회담시 한국 등 신흥 공업국의 책임 분담론 거론 ○ OECD 사무총장, 우리나라가입에 시기상조 견해 표명
88. 1. 4. 5. 11.	○ OECD 사무국 조사단 방한(오야케 사무총장 특보) ○ 동경 개최 미·일·유럽위원회(The Trilateral Commission)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의 OECD 가입촉구 ○ OECD 각료이사회, 아시아 NICs와의 대화 추진 결의 ○ OECD 철강위원회와 비공식대화 개최
89. 1. 3. 5. 6. 7. 10. 12.	○ OECD-ANICs간 대화 개최(파리) ※ ANICs : Asia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 OECD 사무총장, ANICs중 한국을 유력한 가입후보국으로 지칭 ○ OECD에 연락관(Liaison Officer) 파견 및 우리나라 공무원 OECD 연수 최초파견(개발센터) ○ OECD 교육위원회 부위원장(Veld) 방한 ○ OECD 각료이사회, OECD-ANICs 대화 지속 촉구 ○ G-7 정상회담시 NICs의 책임분담론 거론 ○ 「페이예」사무총장, OECD 회원국 후보로 우리나라 거론 (일본가입 25주년 기념 회의시) ○ Cornell OECD 사무차장 방한 ○ OECD/NEA(원자력 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 파견 ○ OECD 조선실무작업반, 우리나라의 정식가입 타진

시 기	내 용
90. 2. 3. 4. 7. 11.12	○ 우리나라, 조선실무작업반 정식가입 추진결정(관계장관 회의) ○ OECD-DAEs Workshop 서울개최(비회원국으로서 최초) ※ DAEs : Dynamic Asian Economies ○ OECD 사무차장 2인(Cornell, Vinde) 방한 ○ OECD 이사회, 우리나라의 조선실무작업반 가입 초청 결의 ○ 「다니구찌」사무차장 방한, OECD와 개도국간 협력방향 협의 ○ OECD 조선작업반 가입
91. 4.23~30 9.3~6 5.26~30 9.12 10. 11.27~29	○ 제1차 OECD 조사단 파견(단장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제2차 OECD 조사단 파견(단장 : 주불공사) ○ 「다니구찌」사무차장 방한(서울개최 워크샵 주재차) ○ OECD 개발센터(DC) 가입 ○ 「페이에」OECD 사무총장, 외무장관 초청으로 방한 (대통령, 외무장관 예방) - 노태우 대통령, “90년대 중반 OECD 가입의사” 표명 ○ 제3차 OECD 조사단 파견(단장 : 주불공사)
92. 1. 4. 4. 6. 6.16~18 7.23 10. 10.8 12.	○ 제7차 5개년계획 심의회에서 “7차 5개년 계획 후반기에 OECD 가입추진” 키로 확정 ○ 이상옥 외무부장관명의 서한 발송 -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OECD 가입의사 공식표명 ○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의 가입문제 협의 - 한-OECD간 공식접촉 확대를 환영 ○ 외무부장관 서한에 대한 「페이에」 사무총장이 답신 접수 - OECD는 한국이 OECD 활동 참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제의를 할 경우 검토 용의 있음을 언명 ○ 「다니구찌」 사무차장 방한(워크샵 주재차) ○ 무역위원회 읍저버 참가 ○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OECD 사무총장 예방 - 「페이에」 사무총장은 한국이 OECD에 조기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 ○ 경제발전검토위원회 읍저버 참가 ○ OECD 이사회, 우리나라가 원자력기구(NEA)에 가입하도록 초청
93. 2. 5.	○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명의 서한 발송 - 공업위, 환경위 읍저버 참가신청 ○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명의 서한 발송 - 철강위, 과학기술정책위 정회원 가입신청 - 공업, 환경, 경제동향검토위, 경쟁법규정책위, 교육위 및 교육연구혁신 센터 읍저버 참가 신청

시 기	내 용
93. 5.24. 5.27. 6.2.~3. 6.14.~16. 7. 7.8. 10.14. 12.17.	○ OECD/NEA(원자력 기구)가입 ○ 공업위원회 읍저버 참가 ○ OECD 각료이사회 성명에 “한국의 OECD 참가활동을 환영”한다는 내용 포함 ○ 「다니구찌」 사무차장 방한(한-OECD관계 증진 협의) ○ 신경제 5개년 계획에 “96년 OECD 가입” 계획 확정 ○ 경쟁법규정책위 및 환경정책위 읍저버 참가 ○ 교육위원회 및 교육연구혁신센타 읍저버 참가 ○ OECD, 우리나라의 CMIT 읍저버 참가 초청 결정
94. 1. 2.15. 2.15. 2.21. 3.9.~12. 4. 4.6. 4.25. 4.27. 5. 6.	○ OECD, 우리나라의 CIME 읍저버 참가 초청 결정 ○ 경제동향검토위(EDRC)/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파리) ○ 「폐이에」 사무총장. “94.3월말까지 가입시기와 일정 통보” 요청(김태연 기획원 차관보 면담시) ○ 금융시장위(CMF)/ 한국검토회의 개최(파리) - OECD측, 회의결과에 만족치 아니하고, 94년 말경 2차 검토 회의를 개최기로 함. ○ 「다니구찌」 사무차장 방한(OECD/DNMEs간 고위협의회 개최문제 협의) ※ DNMEs : Dynamic Non-Member Economies ○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명의 서한 발송 - 경제정책산하 단기경제전망에 관한 작업반, 정보, 컴퓨터 통신정책위, 해운위, 관광위 읍저버 참가 신청 ○ 재정위(CFA)/한국검토회의 개최(서울) ○ CIME/한국검토회의 개최(파리) ○ 한승주 외무장관 명의 서한발송 - 94년 말 가입신청서 제출, 96년 OECD에 가입한다는 일정 제시 ○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 명의 서한발송 - 고용·노동·사회문제위 및 소비자정책위 읍저버 참가신청 ○ OECD 각료이사회, 한국이 준비되는 대로 가입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교섭권한 위임
95. 3.29. 7. 11.1. 11.9. 11.30.	○ 공노명 외무부장관명의 가입신청서 제출 ○ Initial Memorandum 제출 ○ 해운위원회 심사 통과 ○ 농업위원회 정책검토 ○ 보험위원회 1차 심사

시 기	내 용
96. 2.26.	○ 금융시장위원회 1차 심사
3.18.	○ 경제동향검토위원회 정책검토
4.11~12.	○ CIME/CMIT 1차 심사
4.16.	○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정책검토
5.3.	○ 무역위원회 정책검토
5.10.	○ 환경위원회 심사
6.9.	○ 보험위원회 2차 심사
6.19.	○ 금융시장위원회 2차심사
6.26.	○ 재정위원회 심사
7.4~5.	○ CIME/CMIT 2차 심사
9.6.	○ CIME/CMIT 심사 통과 확정(이사회 제출 보고서 채택)
9.26.	○ OECD 이사회(최종심사)
10.11.	○ OECD 이사회, 한국가입 초청 결정
10.25.	○ OECD 가입문서 서명(외무부장관)
12.12.	○ OECD 가입서 기탁 및 발효

- ※ 2010.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 09.1월 DAC 가입 신청서 제출
 - 09.6월 OECD DAC 가입 심사단 방한 실사
 - 09.11월 한국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 개최(가입 결정)

II. 우리나라의 OECD내 활동현황

1. 회의참가

- OECD는 연평균 3,000회의 회의(일평균 10~15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600여명의 각국 상주대표와 연 4만 명의 각국 대표단이 OECD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
- 우리나라는 주OECD대표부 직원과 국내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논의동향 파악과 함께 우리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해당부처에 연간 4,000여건에 이르는 보고를 통해 국내 정책결정 등에 활용
- 또한 경제검토회의, 뇌물방지작업반회의 등 동료간 점검을 실시하는 분야에서는 주심사국으로 적극 참여하여 OECD 활동에 기여
 - 이외에도 OECD와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의 제시 등을 통해 우리 정책입안에도 기여

2. 의장단 진출

- 2009년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이후 최초로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한승수 총리)을 수임하여 OECD 녹색성장 선언(Green Growth Declaration)을 이끌어 내었는바, 이는 우리의 OECD내 위상을 새롭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2차례 부의장직(1998년, 2006년) 수행
- OECD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 의장으로 선출되어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를 직접 이끄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10.12월말 허경욱 대사가 2.9억 유로에 달하는 OECD 연금기금의 의사결정 및 감독을 담당하는 OECD 연금기금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 선출

《 의장단 진출 현황 (2011.4월 현재) 》

OECD 기구명		성명 (직책)	
의장	연금기금관리위원회	허경욱(OECD 대사)	
	정부간 재정관계 네트워크회의 회의	김정훈(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NEA 규제기관 대중 커뮤니케이션 작업반	하연희(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기술원)	
	NEA MDEP Vender Inspection Cooperation 작업반	양성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평가실장)	
	NEA Task Force on Benchmarking of Thermal-Hydraulic Loop Models for Lead-Alloy Cooled Advanced Nuclear Energy Systems	황일순(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부의장	경쟁위원회	손인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개발센터	엄성준(OECD 차석대사)	
	규제정책위원회	박장호(총리실 경제규제심의관)	
	정보통신위원회	정인억(국가정보화전략위 위원)	
	수산위원회	이상고(부경대 교수)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태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NEA 원자력법 위원회	박기갑(고려대 교수)	
	작업반	원조효과작업반	설경훈(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
		농업환경정책위 합동작업반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조선작업반	김기준(주OECD대표부 참사관)
		정보경제작업반	남상열(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기구협력센터장)
		정보보호작업반	정태명(성균관대학교 교수)
		정보사회지표작업반	류제명(주OECD대표부 참사관)
		통신인프라및서비스정책작업반	이내찬(한성대 교수)
		나노기술작업반	이정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생명공학작업반	최용경(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소비자안전작업반	문태현(한국소비자원 국제협력팀장)
		화학사고작업반	함병호(고용노동부 서기관) 권혁면(한국산업안전공단 국장)
		고용작업반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육측정평가사업단	김광호(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영유아교육네트워크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3. 사무국 진출

- 2011년 4월 현재 OECD 사무국내 한국인 정규직원은 9명이며, 계약직인 유급 컨설턴트가 6명 근무
 - 전체 정규직원 약 2,600여명 중 한국인 직원은 약 0.36% 수준
 - 우리나라 정규분담률(2.693%)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
- OECD 사무국내 한국인 진출이 저조한 이유는 언어 장벽 및 단기고용(5년 이내)을 선호하는 OECD 인사 정책, 응시 인원 소수 등 다양
 - OECD는 유엔과 달리 국별 쿼타제는 없으며, 모든 직위에 대해 공개 경쟁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채용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아울러, 역량있는 한국인은 OECD에 채용된 후 OECD에 장기 근무하기보다는 단기 근무 후 국내 선호직위로 진출하는 경향
 - 지원자(applicants) 수도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실정
 - ※ 한국은 2010년의 경우 OECD에 271명이 지원하여 총 응시인원 17,021명의 1.6%에 불과(지원자 수가 많은 국가 : 프랑스, 이태리, 미국, 멕시코 등으로 각각 연간 약 3,000여명이 응시)
- 그러나, 2010년말 시행된 OECD Young Professional Program(YPP)에서 교육국에 응모한 한국인 1명 선발
 - 4,587명이 응모하여 최종 12명을 선발한 바, 한국인은 102명(전체 응모자의 4%)이 응모하여 응모자 순으로 보면 34개국중 7위
 - ※ YPP란 OECD가 매2년마다 실시하는 대표적인 신규직원 채용 통로로서, 30세 이하 젊은 인재를 공개경쟁을 통해 2년간 채용하고 실적에 따라 잔류를 결정하는 제도
- 과거 OECD 사무국에 한국인 응모 비율은 1% 수준이었던 바, 금번 YPP에 한국인 응모자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OECD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
 - 응모자가 증가할수록 한국의 젊은 인재가 채용될 가능성도 증가

- 우리 정부는 OECD 사무국 직원 구성에 있어 국별, 인종별, 성별 다양성 (diversity)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이사회, 집행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OECD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
 - 우리 국민들의 OECD 사무국 지원 확대를 위하여, OECD 채용 정보의 국내 전파, 지원 절차 안내 등 채용 홍보 강화
 - OECD 사무국 한국인 인턴 및 계약직 컨설턴트 등 잠재적 진출 후보자 명단 작성 및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
 - OECD 등 국제기구 채용 설명회 개최 등
- ※ 참고 : 한국 공무원 OECD 파견 제도
 - OECD와의 상호협력 강화 및 국제적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07.2.2 "공무원 파견에 관한 한-OECD" 협정 체결
 - 사무국내 정규직원에게 상응하는 신분과 책임을 가지고 OECD 사무국 업무 담당

4. 통계로 본 OECD내에서의 한국

가. 주요 거시경제 지표

지표 나라	GDP*(PPP) (10억\$) (2009)	1인당 GDP* (\$)(2009)	재정적자* (2009)	실업률 (2009년)	세수율** (2008)	무역의 GDP 기여도**
1위	미국 (14,043.9)	룩셈부르크 (83,802)	아이슬란드 (13.6%)	노르웨이 (3.2%)	덴마크 (48.3%)	룩셈부르크 (156.5%)
2위	일본 (4,139.6)	노르웨이 (55,187)	그리스 (7.8%)	한국 (3.8%)	스웨덴 (47.1%)	벨기에 (85.3%)
OECD 평균	1,193.9	33,238	5.5%	8.1%	-	28.9%
한국	1,324.4 (9위/34)	27,169 (25위/34)	1.8% (29위/31)	3.8% (2위/34)	26.6% (25위/27)	53.5% (12위/34)

* GDP, 1인당 GDP, 재정적자는 2011 OECD Yearbook 참조

** 세수율, 무역기여도는 2010 OECD Factbook 참조

○ GDP / 1인당 GDP

- 한국은 1조3,244억 달러로 OECD 국가 중에서 9위로서 2008년도와 순위 변동 없음.
- 한국의 1인당 GDP는 27,169달러로서 OECD 평균인 33,238보다 낮으며, 순위도 25위로서 GDP 총액이 OECD 9위인데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재정적자 / 조세수입율

- 2008년까지의 흑자기조가 2009년 들어 GDP의 1.8% 적자로 바뀌었으나, 이는 OECD 평균인 5.5%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재정상황은 여전히 건전한 수준으로 판단
- 한국의 GDP 대비 총 조세수입 비율은 26.6%로서 OECD 평균(2007년 35.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 무역의 GDP 기여도

- 우리나라는 무역의 기여도가 GDP의 50%이상(53.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28.9%)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

- 2009년 OECD 평균 실업률은 8.1%이며, 노르웨이, 한국, 네덜란드 등은 4% 이하인 반면, 스페인은 18.1%
- 경제위기는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국가마다 달라 에스토니아, 스페인, 아일랜드는 7%p 이상 증가한 반면, 독일, 이스라엘, 폴란드는 오히려 감소

나. 사회 형평성(equity)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참조)

지표 나라	지니계수 (2000년대말)	빈곤율* (2000년대말)	아동빈곤율 (2000년대 후반)	생계곤란 비중** (2010년)	공공 사회지출 (2007년)(GDP 대비)
1위	슬로베니아 (0.24)	체코 (5.4%)	덴마크 (3.7%)	노르웨이 (6%)	프랑스 (28%)
2위	슬로바키아(0.25)	덴마크(6.1%)	핀란드(4.2%)	덴마크(6%)	스웨덴(27%)
OECD 평균	0.31	11.1%	12.7%	24%	19%
한국	0.32 (21위/33)	15.0% (29위/34)	10.3% (22위/31)	19% (19위/34)	7.5% (33위/34)

* 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수로 측정

** 현재의 소득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로 측정한 주관적 지표

○ 소득불평등

- 칠레, 멕시코, 터키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고, 영어권국가나 남유럽 국가도 높은 편이나, 노르딕국가와 유럽대륙국가는 낮은 편(한국은 0.32로 평균 수준)
- 대체로 부유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
- 1980년대 이후 OECD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다소 심화

○ 빈곤

- 빈곤수준에서 생활하는 인구 비중은 OECD 평균 11.1%로 1980 년과 비교하면 완만한 증가 추세(한국은 15.0%)
- 전반적인 빈곤율이 높은 미국, 칠레, 멕시코 등은 노인 및 아동 빈곤율이 높은 반면, 노르딕국가는 양자가 모두 낮음(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고 아동빈곤율은 낮음)

○ 생계곤란(income difficulties) 비중

- 2010년 OECD 평균 24%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 (한국은 19%)
- 경제위기 영향으로 생계곤란자 비율이 2007년에 비해 3%p 상승 (한국은 5%p 감소)

○ 공공 사회지출

※ 공공 사회지출 : 연금, 사회부조, 보건 등의 영역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자원의 양

-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공공 사회지출은 GDP의 19%로
1982년에 비해 약 2.5%p 증가(한국은 약 7.5%로 4.7%p 증가)
- 소득분배(지니계수)가 평등한 국가일수록 사회지출이 큰 경향
 - 공공사회지출이 많은 노르딕국가와 서유럽국가는 소득불평등
도가 낮은 반면, 멕시코, 터키는 지출이 적고 불평등도는 높음
(한국은 지출은 적은 편이나 불평등도는 평균 수준)

다. 교육 / 연금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참조)

나라	지표	교육성과(2009년) (읽기능력점수)	연금수급가능기간*(2010년)		교육비 지출**(2007년) (구매력기준)
			여성	남성	
1위		한국(539)	이탈리아(27.3년)	그리스(23.6년)	룩셈부르크(16,632달러)
2위		핀란드(536)	슬로베니아(27.2년)	이탈리아(22.7년)	스위스 (11,688달러)
OECD 평균		496	23.4년	18.3년	8,070달러
한국		539(1위/33)	25.2년(6위/34)	20.2년(6위/34)	6,493달러(23위/33)

* 연금수급가능기간은 연금수급연령에서의 기대여명이며, OECD 국가에서 남녀
모두 공식 연금수급연령은 65세가 일반적이나, 60세인 경우도 있고, 남녀 차이가
있는 경우 여성이 더 낮음

** 초등 및 중등교육에 대한 연간 총 지출 규모

○ 교육성과

- 2009년 15세 학생의 읽기 능력은 한국과 핀란드가 가장 높고,
칠레와 멕시코가 가장 낮음(PISA 읽기능력 OECD 평균 점수는
496점, 한국 539점, 멕시코 425점)
- 2009년 점수가 2000년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얻은 국가는
주로 2000년 점수가 낮았던 국가인데 반해, 원래 높은 수준
이었던 한국이 15점 이상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함

- OECD 평균 연금수급가능기간은 여성은 23.4년, 남성은 18.3년 (한국은 각각 25.2년, 20.2년)으로, 남녀간 차이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성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기대수명도 길기 때문
-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은퇴하는 경향(OECD 평균 약 63세 정도이나 한국은 70세)

○ 교육비 지출

- 2007년 OECD 평균 자녀 1명당 전체 의무교육비 지출은 8,070달러(구매력평가 기준, 한국은 6,493달러)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0년과 2007년간 일인당 교육비 지출이 증가
- 2000-2009년간 15세 학생의 읽기능력 향상도와 동 기간 교육비 지출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과과정, 교사 훈련과 유인책, 학교 외적 요인이 지출 증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

지표 나라	기대수명 (2008년)	영아사망률(2008년)* (1세 미만 1,000명당)	수질/공기질(2010년)**		보건지출(2008년) (GDP 대비)
			수질	공기질	
1위	일본(82.7년)	룩셈부르크(1.8명)	덴마크 (97.4%)	아일랜드 (94.8%)	16.0%(미국)
2위	스위스(82.2년)	슬로베니아(2.1명)	오스트리아 (97.1%)	호주 (93.1%)	11.2%(프랑스)
OECD 평균	79.3년	4.6명	86.,1%	80.9%	9.0%
한국	79.9년 (20위/34)	4.1명 (23위/34)	82.7% (26위/34)	78.3% (21위/34)	6.5%(32위/33)

** 지역의 수질과 공기질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 여부를 조사하는 주관적 지표

○ 기대수명

- 2008년 출생시 기대수명은 OECD 평균 79.3세로 25년 전에 비해 6세 증가(한국은 79.9세로 12.5세 증가)
 - 기대수명 증가는 국가간 영아사망률의 수렴현상과 의학혁명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수명연장에 기인
 - 모든 국가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높지만, 성별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

○ 영아사망률

- 2008년 OECD 평균 영아사망률은 4.6명으로 25년 전에 비해 11.1명 감소(한국은 4.1명으로 11.9명 감소)
 - 가구소득 증가나 소득 불평등 변화는 영아사망률 변화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

○ 수질 / 공기질(Water and air quality)

- OECD 국가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질과 공기질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있음.
-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아사망률이 낮는데, 이는 설사병(diarrheal diseases)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보건지출

- 2008년 보건지출은 OECD 평균 GDP의 9%이며 국가간 차이가 커서 미국(16%)이 가장 높고 멕시코(5.9%), 한국(6.5%)은 최저 수준
 - 지난 10년간 보건지출은 꾸준히 늘어 OECD의 연평균 일인당 보건지출 증가율은 4.0%(한국은 9.4%로 가장 빠른 증가율)
- 일인당 보건지출이 많은 국가일수록 기대수명이 높으며, 보건지출 증가가 많은 국가일수록 기대수명 증가도 큰 것으로 나타남

마. 사회결속(Social Cohesion)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참조)

지표 나라	타인에 대한 신뢰 (2008년)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2009년)		투표율 (최근)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성 (2010년)
		부패지수 (낮은 순)	국가제도 신뢰지수		
1위	덴마크(89%)	덴마크(15)	핀란드(82)	호주(95%)	캐나다(84%)
2위	노르웨이(88%)	핀란드(17)	덴마크(75)	룩셈부르크(92%)	호주(84%)
OECD 평균	59%	56	56	70%	61%
한국	46%(25위/30)	65(21위/34)	41(32위/34)	46%(34위/34)	43%(28위/34)

※ 사회결속 지표는 투표율 이외는 모두 주관적 지표

○ 타인에 대한 신뢰(Trust)

- 칠레(13%), 터키(24%), 멕시코(26%) 순으로 낮으며, 노르딕 국가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46%)로 OECD 평균(59%)보다 낮음

○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 ※ 부패지수는 기업과 정부에 부패가 퍼져있는지, 그리고 국가제도 신뢰 지수는 군대, 사법부,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조사
- 대체로 노르딕국가가 부패인식이 낮고,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는 높으며, 한국의 부패인식은 65로 평균보다 높고,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는 41로 낮음

○ 투표율

- ※ 낮은 투표율은 국가경영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한편, 정치시스템이 제한된 수의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30년 전에 비해 OECD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11%p 낮아졌는데, 특히 슬로박(42%p), 한국(32%p), 체코(32%p)는 급격한 감소를 경험
 - 한국, 아일랜드, 칠레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 고령자가 청년에 비해 투표율이 높는데, 그 격차는 특히 한국(23%p), 일본(25%p), 영국(38%p)에서 크게 나타남

○ 관용성

- ※ 공동체가 소수집단(소수민족, 이민자, 동성애자)을 받아들이는 정도
- 캐나다와 호주가 84%로 높으며, 남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는 낮음
 - 한국은 43%로 낮은 편이나, 2007년에 비하면 7% 증가하였으며, 경제위기로 인해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성이 떨어진 증거는 없음

바. 가족(family)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참조)

나라	지표	합계출산율 (2009년)	여성고용률 (2009년)	성별 임금격차 (2008년)	가족구조(2010년) 결혼/동거/ 독신·미혼	보육등록율 (2008년)	공공가족급부지출 (2007년) (GDP 대비 비중)
1위		2.96 이스라엘	77.2 아이슬란드	1 이탈리아		78.6 덴마크	3.7 덴마크
2위		2.22 아이슬란드	74.4 노르웨이	2 헝가리		74.9 아이슬란드	3.7 프랑스
OECD 평균		1.74	59.6	16	54/7/26%	54.7	2.2
한국		1.15 (34위/34)	52.2 (28위/34)	39 (26위/26)	57/0/39%	59.3 (16위/29)	0.6 (33위/33)

출처 :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2011

○ 출산율

- 200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5로 OECD 국가중 가장 낮고, 여성의 고용률도 52.2%(OECD 평균 59.6%)로 매우 낮은 편
- ※ 한국의 여성고용은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현상을 보여주는 M curve가 특징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필요

○ 가족구조

- 혼인이 가족 구성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세 이상 성인의 54%가 혼인 상태이며, 독신과 미혼은 26%

- 한국은 혼인이 57%로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독신과 미혼 상태도 39%로 OECD 국가중 칠레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
- 동거비율이 높은 국가(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는 혼인율이 낮으며,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터키에는 동거율이 거의 0%

○ 공공가족급부지출

- 한국의 가족에 대한 급부 비중이 GDP의 1%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바, 일하는 부모에게 어린 자녀의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체계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
- 한국의 직장문화(장시간근로, 회식문화, 적은 휴가)는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함
 -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을 능가하고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가정 조화를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파트타임 근로, 성과연계 보상제도 등 확대 필요

III. OECD 활용을 위한 국내저변 확충

1. 한-OECD 공동세미나 개최(서울)

가. 2000년도 :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 일시 및 장소 : 2000.12.1~2, 서울
- 참석자
 - 양수길 주OECD 대사
 - Herwig Schlogl OECD 사무차장
 - Dirk Pilat, Principal Administrator, STI/EAS, OECD
 -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Yukata Imai, Head of Division, Economics Department, OECD
 - Randall Jones, Senior Economist, Economics Department, OECD
- 주요주제
 - 제 1세션 : 신경제의 전개 전망과 한국의 대응
 - 제 2세션 : 한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과제
 - 제 3세션 :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 2001년도 : 한국의 OECD 가입 5주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 Finding a New Path)

- 일시 및 장소 : 2001.12.13~14,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

○ 참석자

- OECD 경제 총국 한국/슬로바키아 공화국 담당관 렌달 존스
-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박병원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허 선
- 전 미국 재무성 고문 캐롤라인 앳킨슨
- 재정경제부장관 자문관 이장영
- 중앙고용정보원장 어수봉
- William Witherell OECD 금융재정국장

○ 주요주제

- 제 1세션 :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OECD의 기여
- 제 2세션 : 구조조정과 시스템리스크
- 제 3세션 : 지속 가능 발전과 인적 자본의 역할

다. 2002년도 : 한국 경제의 건전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 일시 및 장소 : 2002.10.15~16, 롯데호텔 에메랄드룸 (2층)

○ 참석자

- 이경태 주OECD 대사
-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William Witherell OECD 금융재정국장
-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Graham Vickery OECD 담당관
- 홍동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Peter Sherer OECD 고용사회정책국 참사관
- 변재관 보건연구원 연구위원
-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 김세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박순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주제

- 제 1세션 :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시장감시 메카니즘의 활성화
- 세계기업지배구조 논의동향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 제 2세션 : 지식정보사회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IT 지원 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
 - 정보통신기술과 경제
 - 지식 기반 경제 실현을 위한 한국의 IT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
- 제 3세션 : 고령화 사회 대비와 정책적 과제
 - 한국과 고령화사회 : OECD의 관점
 -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고찰

라. 2003년도 : 국제사회의 빈곤퇴치노력과 한국 ODA의 역할

- 일시 및 장소: 2003.11.5, 롯데호텔
- 참석자
 - Hunter McGill OECD 개발협력국(DCD) 원조평가과장
 - Richard Manning DAC 의장
 - Jan Vandemoortele UNDP 사회경제개발그룹 수석고문
- 주제
 -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 Emerging Donor로서 한국의 역할
 - 한국의 ODA 확대 필요성 공감

마. 2003년도 :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잠재역량과 전략(Korea as a Business Hub of Northeast Asia: Potential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일시 및 장소 : 2003.10.14~15, 조선포텔 오키드 룸
- 참석자
 - 배순훈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 양수길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외국인 투자분과 위원장
 - 정태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Dirk Pilat OECD 과학기술산업국 선임연구원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
 - Odile Sallard OECD 공공 행정 및 지역개발국장
 - William Witherell OECD 금융재정국장
 - Jean Marie Metzger OECD 무역국장
 - 하헌구 교통개발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 연구센터 소장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이정태 주 OECD 대사
- 주제
 - 제 1세션 :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정부의 비전
 - 제 2세션 :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잠재역량
 - 동북아 3국의 비교우위산업 현황과 향후 분업체제 형성 전망
 - 동북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전망
 - 동북아 경제통합의 특수성
 - 제 3세션 :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전략
 - 무역, 투자 자유화를 위한 과제
 - 동북아 금융중심 건설을 위한 과제
 -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과제

바. 2004년도 : 에너지 안보위기와 한국의 에너지 외교(Energy Security Crisis and Korea's Energy Diplomacy)

- 일시 및 장소 : 2004.11.11, 외교통상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 William C. Ramsay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차장
 - James Haywood IEA 사무차장 특별고문
 -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 정용칠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심의관
 - 이재승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도경환 산자부 가스산업과장
- 주제
 -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
 - 고유가 시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에너지 외교 필요성 절감
 -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을 과제로 지목
 -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제언
 - 종합적인 에너지 안보체제 구축 방안 마련
 -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에너지 이용관련 불확실성 제거 및 석유 공급 안보를 위한 수송로(chokepoint) 안전 확보
 - 정부-기업간 원활한 대화와 협력 체제 구축
 - 에너지 외교를 위한 제언
 - 역내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
 - 대중동 에너지 외교 강화 및 다변화 외교 추진

사. 2006년도 :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Korea and the OECD-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10th Anniversary of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 일시 및 장소 : 2006.9.22,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 참석자

- 권오규 재정부총리
- 이규형 외교통상부 장관대리
- 권태신 주OECD 대사
-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 Randall Jones OECD 선임경제전문가
- John Martin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
- Michael Roeskau OECD 개발협력국장
- 김기환 서울 파이낸셜 포럼 회장
- Anna Fifield 파이낸셜타임즈 한국지국장
-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 주제

- 제 1세션 : 한국의 OECD 가입과 그 영향
 - OECD 가입 10주년: 무엇이 변화했는가?
 - 한국경제개혁의 현황과 과제
- 제 2세션 : 세계화의 도전과 사회결속
 - 세계화와 분배이슈
 - 한국형 경제사회모델의 모색: 유럽모델로의 접근?
- 제 3세션 : 세계화와 개발협력
 - 21세기 국제개발원조와 한국의 역할
 -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대외원조의 효과성 제고

아. 2010년도 :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Korea-OECD Workshop on Delivering Green Growth-Seizing New Opportunities for Industries)

○ 일시 및 장소 : 2010.3.4~5,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 참석자

- OECD 아마노 사무차장
-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 Ken Warwick OECD CIIE 의장
- Rob Visser OECD 환경국 국장대행
- 이귀로 고등과학기술원 박사
- 이기상 현대자동차 상무
- 전홍범 KT 부사장
- Dirk Pilat OECD 구조정책과장
- Ji Xie 중국 NDRC 부국장
- Takao Shiino 노무라연구소 고문
- Ken Mizugami IBM Japan 컨설턴트
- Haroyosh Kumura Nissan자동차 이사
- Martin Koers 독일자동차 협회 상무

○ 주제

- 제 1세션: 녹색성장의 도전과 기회
 - 한국의 녹색성장 추진 전략
 - OECD의 녹색성장 비전과 산업관련 도전과 기회
- 제 2세션: 혁신과 녹색성장
 - OECD 혁신전략이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
 -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전략 가속화를 위한 금융조달방안
- 제 3세션: 산업분야별 녹색성장의 도전과 기회
 - 자동차 산업의 녹색성장 관련 도전과 기회
 - 환경적 측면을 감안한 IT 산업의 도전과 기회

- 철강분야 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도전과 기회
- 제 4세션: 녹색성장과 고용창출
 - 녹색경제 이행과정에서의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 녹색성장 가속화를 위한 인력교육 및 훈련방안
- 제 5세션: 녹색성장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 한국의 녹색성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 영국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정책
 -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녹색성장 전략

2. 월간 OECD 정책포커스 발간

- OECD 대표부에서는 매월 OECD에서 생산되는 각종 회의 및 정책자료 중에서 국내 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OECD정책포커스』를 제작, 배포
 - 국내 관련 정부기관과 OECD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공무원,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에게 이메일(정책브리핑 메일리스트)을 통해 제공
 - ※ 정책포커스 파일은 OECD 대표부 홈페이지(oecd.mofat.go.kr)에도 게시
- 『OECD정책포커스』를 통해 선진경제 국가들이 모인 국제기구인 OECD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정책들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선진국의 정책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국내 정책 및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의식이나 관행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
- 『OECD정책포커스』는 경제 구조적 이슈 및 산업, 정보통신, 교육, 노동, 과학기술, 외교통상, 환경, 공정경쟁, 농업, 조세 등 OECD에서 조사, 연구되고 있는 모든 분야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 앞으로도 국내 관심있는 정책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있게 읽을 수 있도록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3. 주간 OECD 정책브리핑 발간

- OECD 대표부는 매주 OECD의 최신 정책 논의동향, 주요 간행물과 연구보고서 발간소식, 그리고 한국-OECD간 주요행사 등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 「OECD정책브리핑」을 제작하여 국내 언론, 연구기관, 공무원 등 약 2,120여명(2011.4월 현재)에게 이메일 송부
 - ※ OECD 대표부 홈페이지(<http://oecd.mofat.go.kr>) >> OECD 정책동향 >> OECD 정책브리핑
- 발간방식 및 절차
 - 주간 단위로 발간하며, 매주 금요일(파리 시각) 오후 발송
 - 창간호 : 2010.9.13일자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낮아")
 - 1~2쪽 분량의 뉴스레터 형태로 OECD 한국대표부 홈페이지로 연계 되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계
- 국내 언론 및 유수 민간 경제연구소에 대표부 활동과 보고서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여 대표부의 인지도(visibility)를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 정책고객들과 대표부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
- 대표부 홈페이지를 새로운 정보의 보고로 전환시켜 정책수립에 상당히 기여
 - ※ 기존에는 홈페이지 게재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창간이후 콘텐츠도 풍부해지고, 접속자 수도 대폭 증가

4.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가. 연혁

- '97년 이후 OECD와 협력 증진을 위해 4개 부처가 OECD와 MOU를 체결, 관련분야별 센터를 설립·운영
 - 조세센터 (재정경제원, 1997. 9월)
 - 경쟁센터 (공정거래위원회, 2004.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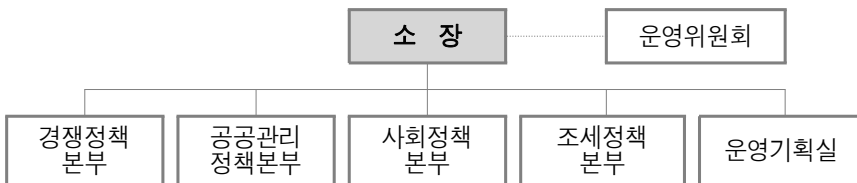
- 정부혁신센터 (행정자치부, 2005. 7월)
- 사회정책센터 (보건복지부, 2005. 9월)
- 정책품질 향상과 운영효율화를 위해 4개 센터를 「OECD 서울센터」로 통합 (2007. 2월)
- 대한민국정부와 OECD간 MOU 체결(2008. 6월)에 따라 OECD 서울 센터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로 개칭
- ※ 홈페이지 : <http://www.oecdkorea.org>

나. 주요 기능

-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분야 교육훈련
-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 및 자문
- OECD 회원국의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분야 정책경험, 동향 파악 및 전파
- 조세·경쟁·공공관리·사회정책 관련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 OECD 관련 자료 발간, 출판물 번역·발간

다. OECD 한국센터 조직

- 조 직 : 총20명 (파견공무원9, KDI파견1, 연구원파견3, 채용7)



5. OECD 포럼 참석

가. 2000년

- 주제 : “Partnership in the New Economy”
- 기간 및 장소 : 2000.6.26~28,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6.26~27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Panelist(4명) :
 -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회장
 - 미디어밸리 (주) 사장
 -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유정석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 NGO (6명) :
 -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변호사)
 - 최정규 건국대 교수(경실련)
 -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실련)
 - 이상곤 인하대 교수(환경연합)
 - 이세용 삼성정신건강연구소 선임연구원(인간교육실현 학부모 연대)

나. 2001년

- 주제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New Economy”
- 기간 및 장소 : 2001.5.14~16,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5.16~17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Panelist(3명) :
 - 윤호일 대외경제통상대사

김성훈 한국 농민연대 고문(중앙대 교수)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 NGO 참가자(3명) :

이상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의장(인하대 교수)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서울지부 사무총장

강임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 2002년

○ 주제 : “Taking care of the Fundamentals: Security, Equity, Education and Growth”

○ 기간 및 장소 : 2002.5.13~15, 프랑스 파리

※ 각료이사회는 5.15~16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Panelist(3명) :

사공일 대외경제통상대사

김준기 연세대 교수

장대환 매일경제 사장

– NGO 참가자(1명) : 이일하 이웃사랑회 회장

– 정부정책연구단(40명) : 23개 정부부처 공무원 40명

라. 2003년

○ 주제 : “Grow, Develop and Prosper”

○ 회의일시 및 장소 : 2003.4.28~29, 프랑스 파리

※ 각료이사회는 4.29~30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Panelist(1명)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정부정책연구단(20명) : 15개 부처 파견 공무원 및 OECD 대학생
논문경연대회 수상 학생

마. 2004년

- 주제 : “Health of Nations”
- 기간 및 장소 : 2004.5.12~13,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5.13~14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기조연설자(1명) : 김대중 전 대통령(21세기와 아시아)
 - Panelist(2명) :
 -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보건장관 패널)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금융교육 세션)
 - 정부정책연구단(20명) : 11개 부처 파견 공무원 및 OECD 대학생 논문경연대회 수상 학생 2명

바. 2005년

- 주제 : Fueling the Future : Security, Stability, Development
- 기간 및 장소 : 2005.5.2~3,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5.3~4간 개최

사. 2006년

- 주제 : Delivering Prosperity
- 기간 및 장소 : 2006.5.22~23,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5.23~24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기조연설자(1명) :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 정부정책연구단 : 외교부 실무자 2명

아. 2007년

- 주제 : Innovation, Growth and Equity
- 기간 및 장소 : 2007.5.14~15,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5.15~16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Panelist : 권계현 삼성전자 (주) 부사장

자. 2009년

- 주제 : The Crisis and Beyond: For a Stronger, Cleaner, Fairer Economy
- 기간 및 장소 : 2009.6.23~24,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6.24~25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개막연설 : 한승수 총리 (각료이사회 의장 자격)
 - Panelist :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차. 2010년

- 주제 : Road to Recovery: Innovation, Jobs and Clean Growth
- 기간 및 장소 : 2010.5.26~27, 프랑스 파리
 - ※ 각료이사회는 5.27~28간 개최
- 우리나라 참석자
 - Panelist : 신정식 교수, 녹색성장위원회

부 록

- I.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영문)
- II.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가입초청 협정(영문)
- III. 녹색성장 선언문(영문)
- IV. 약어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영문)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14th December 1960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Austria, the Kingdom of Belgium, Canada, the Kingdom of Denmark, the French Republic,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Kingdom of Greece, the Republic of Iceland, Ireland, the Italian Republic, the Grand Duchy of Luxembourg,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the Kingdom of Norway, the Portuguese Republic, Spain, the Kingdom of Sweden, the Swiss Confederation, the Turkish Republic,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SIDERING that economic strength and prosperity are essential for the attainment of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the preservation of individual liberty and the increase of general well-being;

BELIEVING that they can further these aims most effectively by strengthening the tradition of co-operation which has evolved among them;

RECOGNISING that the economic recovery and progress of Europe to which their participation in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has made a major contribution, have opened new perspectives for strengthening that tradition and applying it to new tasks and broader objectives;

CONVINCED that broader co-operation will make a vital contribution to peaceful and harmonious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RECOGNISING the increasing interdependence of their economies;

DETERMINED by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to use more effectively their

capacities and potentialities so as to promote the highest sustainable growth of their economies and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their peoples;

BELIEVING that the economically more advanced nations should co-operate in assisting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the countries in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RECOGNISING that the further expansion of world trad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avo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DETERMINED to pursue these purpos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or under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a party;

HAVE THEREFOR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for the reconstitu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as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rticle 1

The aim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sation") shall be to promote policies designed:

- (a) to achieve the highest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and a rising standard of living in Member countries, while maintaining financial stability, and thu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 (b) to contribute to sound economic expansion in Member as well as non-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 (c)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world trade on a multilateral, non-discriminatory basi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Article 2

In the pursuit of these aims, the Members agree that they will, both individually and jointly:

- (a)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their economic resources;
- (b)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ir resources, encourage research and promote vocational training;

- (c) pursue policies design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internal and external financial stability and to avoid developments which might endanger their economies or those of other countries;
- (d) pursue their efforts to reduce or abolish obstacles to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nd current payments and maintain and extend the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 (e)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Member and non- memb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flow of capital to those countries,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to their economies of receiving technical assistance and of securing expanding export markets.

Article 3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aims set out in Article 1 and to fulfilling the undertakings contained in Article 2, the Members agree that they will:

- (a) keep each other informed and furnish the Organisation with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tasks;
- (b) consult together on a continuing basis, carry out studies and participate in agreed projects; and
- (c) co-operate closely and where appropriate take co-ordinated action.

Article 4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is Convention shall b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5

In order to achieve its aims, the Organisation may:

- (a) take decisions whic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shall be binding on all the Members;
- (b) make recommendations to Members; and
- (c) enter into agreements with Members, non-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6

1. Unless the Organisation otherwise agrees unanimously for special cases, decisions shall be taken and recommendations shall be made by mutual

agreement of all the Members.

2.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If a Member abstains from voting on a decision or recommendation, such abstention shall not invalidate the decision or recommendation, which shall be applicable to the other Members but not to the abstaining Member.
3. No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any Member until it ha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its own constitutional procedures. The other Members may agree that such a decision shall apply provisionally to them.

Article 7

A Council composed of all the Members shall be the body from which all acts of the Organisation derive. The Council may meet in sessions of Ministers or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rticle 8

The Council shall designate each year a Chairman, who shall preside at its ministerial sessions, and two Vice-Chairmen. The Chairman may be designated to serve one additional consecutive term.

Article 9

The Council may establish an Executive Committee and such subsidiary bodies as may be requir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im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0

1. A Secretary-General responsible to the Council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ncil for a term of five years. He shall be assisted by one or more Deputy Secretaries-General or Assistant Secretaries-General appointed by the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retary-General.
2. The Secretary-General shall serve as Chairman of the Council meeting at sessions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He shall assist the Council in all appropriate ways and may submit proposals to the Council or to any other body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1

1. The Secretary-General shall appoint such staff as the Organisation may require

in accordance with plans of organisation approved by the Council. Staff regulations shall be subject to approval by the Council.

2. Having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Organisation, the Secretary-General, the Deputy or Assistant Secretaries-General and the staff shall neither seek n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of the Members or from any Government or authority external to the Organisation.

Article 12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uncil may determine, the Organisation may:

- (a) address communications to non-member States or organisations;
- (b) establish and maintain relations with non-member States or organisations; and
- (c) invite non-member Governments or organisation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Article 13

Representation in the Organis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stablished by the Treaties of Paris and Rome of 18th April, 1951, and 25th March, 1957, shall be as defined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is Convention.

Article 14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or accepted by the Signatories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hereby designated as depositary Government.
3.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 (a) before 30th September, 1961, upon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by all the Signatories; or
 - (b) on 30th September, 1961, if by that date fifteen Signatories or more have deposited such instruments as regards those Signatories; and thereafter as regards any other Signator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 (c) after 30th September, 1961, but not later than two years from the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by fifteen Signatories, as regards those Signatories; and thereafter as regards any other Signator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4. Any Signatory which has not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nce when the Convention comes into force may take part i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upon conditions to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such Signatory.

Article 15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e reconstitution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take effect, and its aims, organs, powers and name shall thereupon be as provided herein. The legal personality possessed by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continue in the Organisation, but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hall require approval of the Council to be effective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rticle 16

The Council may decide to invite any Government prepared to assume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to accede to this Convention. Such decisions shall be unanimous, provided that for any particular case the Council may unanimously decide to permit abstention, in which cas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6, the decision shall be applicable to all the Members. Accession shall take effect upon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Article 17

Any Contracting Party may terminat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itself by giving twelve months'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

Article 18

The Headquarters of the Organisation shall be in Paris, unless the Council agrees otherwise.

Article 19

The legal capacity of the Organisation and the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of the Organisation, it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to it of the Members shall be as provided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2 to this Convention.

Article 20

1.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Financial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sent to the Council for approval an annual budget, accounts, and such subsidiary budgets as the Council shall request.
2. General expenses of the Organisation, as agreed by the Council, shall be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a scale to be decided upon by the Council. Other expenditure shall be financed on such basis as the Council may decide.

Article 21

Upon the receip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ccession, or of any notice of termination, the depositary Government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all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Convention.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epositary Government,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VE AGREED as follows:

1. Representation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stablished by the Treaties of Paris and Rome of 18th April, 1951, and 25th March, 1957,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provisions of those Treaties.

2. The Commission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of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s well as the High Authority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shall take part in the work of that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Protocol.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SUPPLEMENTARY PROTOCOL No. 2

to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SIGNATORIES of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reinafter called the "Organisation");

HAVE AGREED as follows:

The Organisation shall have legal capacity and the Organisation, its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to it of the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as follows:

- (a)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f 16th April, 1948,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Supplementary Protocol No. 1 to that Convention;
- (b) in Canada,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ny agreement or arrangement on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entered into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Organisation;
- (c) in the United States,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under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mmunities Act provided for in Executive Order No. 10133 of 27th June, 1950; and
- (d) elsewhere, the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ny agreement or arrangement on legal capacity, privileges, exemptions, and immunities entered into between the Government concerned and the Organis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duly empowered, have appended their signatures to this Protocol.

DONE in Paris, this fourteenth day of December, Nineteen Hundred and Sixty, in the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by whom certified copies will be communicated to all the Signatories.

II.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가입초청 협정(영문)

**STAT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ACCEPTANCE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9 October 199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regard to the Convention o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14th December 1960 (hereinafter called the "Convention") and to Supplementary Protocols Nos. 1 and 2 to the Convention;

Having regard to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which provides that the Council of the Organisation may decide to invite any Government prepared to assume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to accede to the Convention;

STATES the following:

GENERAL STATEMENT OF ACCEPTANCE

1.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shall, by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ssume the obligations of membership in the Organisation, accept the views and aims resulting from the Report by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of December 1960, and accede to the Acts of the Organisation which shall be in force at the time of such deposit,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esent Statement, including its Annexes.

REMARKS ON CERTAIN OECD ACTS

2. Korea wishes to make the following remarks regarding certain Acts to which it proposes to accede:

Codes of Liberalisation

Korea endorses the objectives of the Code of Liberalis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and the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and is prepared to accept the rights,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rising therefrom. Korea proposes to lodge reservation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of Article 2 of the two Codes. The texts of these reservations are set out in Annexes 1 and 2 to the present Statement.

Korea's objective is to complete the abolition of remaining capital control progressively over the next five years subject to stable macro-economic conditions, which the Government will strive to promote.

International Investment

Korea adheres to the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dopted by the Government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on 21 June 1976, as amended on 13 June 1979, 17 May 1984 and 4-5 June 1991, and the commitments arising therefrom. Korea proposes to lodge certain exceptions to National Treatment as set out in Annex 3 to the present Statement.

Agriculture

Concerning the Decision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for the time being, Korea wishes to participate only in the Decision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OECD Standard Codes for the Official Testing of Agricultural Tractors [C(87)53(Final)].

Environment

- Decis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Mutual Acceptance of Data in the Assessment of Chemicals [C(81)30(Final), as amended]

- Decision-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mpliance with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C(89)87(Final), as amended]

Observation:

The 1990 Toxic Chemicals Control Act will be amended by 1997 to cover the application of OECD test guidelines and GLP principles to industrial chemicals and will thus provide for full compliance with this Decision and Decision-Recommendation.

- Decis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Minimum Pre-Marketing Set of Data in the Assessment of Chemicals [C(82)196(Final)]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Rights to Data Submitted in Notifications of New Chemicals [C(83)96(Final)]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Exchange of Confidential Data on Chemicals [C(83)97(Final)]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OECD List of Non-Confidential Data on Chemicals [C(83)98(Final)]

Observation:

Korea needs to establish an effective information-sharing network that controls the exchange of confidential and non-confidential data. New regulations and procedures concerning the mutual exchange of confidential data will be introduced by the end of 1997 under the 1990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he 1997 amendment to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will also enhance data requirements, examinati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toxicity examinations of new chemicals so as to comply with these instruments. Korea will ensure that by 1998 the procedures for import certification, expanding the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rietary rights and confidentiality of data are harmonised with those generally in use in the context of chemicals management in OECD countries.

- Decision-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Existing Chemicals [C(87)90(Final)]

- Decision-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and Risk Reduction of Existing Chemicals [C(90)163/FINAL]

Observation:

Korea plans to participate in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of 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with OECD Member countries after establishing a HPV Inventory in Korea by the end of 1997. Korea plans to evaluate and prioritize chemicals based 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volume of chemicals in circulation, usage, toxicity, and environmental fate.

- Decision of the Council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Accidents Capable of Causing Transfrontier Damage [C(88)84(Final)]
- Decision-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Substances [C(88)85(Final)]

Observation:

The 1997 amendment to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will ensure the public's right-to-know by making companies legally responsible for providing all relevant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risks of chemicals. The mandatory issuance of information will as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C(88)85(Final)].

- Decision of the Council on Transfrontier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C(88)90(Final), as amended]

Observation:

Korea is already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Decision reflected in the Basel Convention. In order to be in full compliance with this Decision, Korea will revise the 1992 Act Relating to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 and Their Disposal by 1997 and adopt the necessary implementing measure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Waste Identification Code (IWIC) by 1998.

- Decis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Control of Transfrontier Movements of Wastes Destined for Recovery Operations [C(92)39/FINAL, as amended]

Observation:

Red tier controls presently apply to all wastes on the OECD amber list as well as certain wastes on the OECD green list. All OECD red list wastes are already controlled with written consent. The OECD three-tier system will be gradually introduced by amending the 1992 Act Relating to Transboundary Movements of Waste and Their Disposal. Korea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steps: (1) the Government will draft an amendment setting forth partial green and amber lists by March 1997; (2) the concerned Ministries will consult on the draft lists by May 1997; (3) public input on the draft will be sought by August 1997; (4) the amendment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by December 1997; (5) the Government will begin applying the three-tier controls according to the amendment by June 1998 at the latest.

Korea will then continue to gradually apply the same categories of controls to wastes, waste disposal and related issues as provided for in this Decision. Korea will keep the OECD Secretariat informed as these changes occur.

Fiscal Affairs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a Standardized Form for Automatic Exchanges of Information under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C(81)39(Final)]

Observation:

Up to now, Korea has used its own form instead of the standardized form recommended by the OECD. However, it will institute the use of the OECD standardized form as soon as possible.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Estates and Inheritances and on Gifts [C(82)64(Final)]

Observation:

Korea reserves its position on the Model Conven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2 of the Recommendation.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94)11/FINAL]

Korea will conform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with the following reservations and observations:

With respect to Article 2, Paragraph 1, Korea reserves its position on that part of paragraph 1 which states that the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capital.

With respect to Article 4, Paragraph 3, Korea reserves its position on the provisions in this and other articles in the Model Tax Convention which refer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stead of the term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Korea wishes to use in its conventions the term "head or main office".

With respect to Article 5, Korea reserves its position on paragraph 3, and considers that any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which lasts more than six months should be regarded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Korea also reserves its position so as to be able to tax an enterprise which carries on supervisory activities for more than six months in connection with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lasting more than six months.

With respect to Article 12, Paragraph 1, Korea reserves the right to tax royalties at source.

With respect to Article 12,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d the word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to paragraph 2.

With respect to Article 13, Paragraph 4, Korea reserves its right to tax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in a company whose assets consist main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Korea. It also reserves its right to tax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r other rights forming part of a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Tourism

- Decision-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Tourism Policy [C(85)165(Final)]

Korea accepts this Decision-Recommendation with the following reservations to Annex I and observations on Annex II.

Reservations to Annex I

Section b):

The limits for importation free of duty are 1 bottle (volume less than 1 liter) of any alcoholic beverage regardless of the type or alcohol content.

Section c):

Temporary importation free of import duties and taxes for tourist publicity and promotional materials is granted for 1 year.

Section d) i):

An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is required. Short-term (90 days) driving permits may be issued to those who possess a foreign national driving license.

Section d) ii):

Only registration certificates issued by member countries of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are recognised.

Section d) iii):

Korea does not recognise international third-party certificates (green card system). Thus anyone who wishes to drive an automobile in Korea must be insured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Sections d) iv) and v):

The temporary importation procedure is permitted only for automobiles (i.e., passenger cars).

Section e) i):

Ground-handling equipment for use in international air services is not admitted under the temporary importation procedure.

Observations on Annex II

Section a):

For nationals of most OECD Member countries, visas are not required for stays of up to three months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Italy, Portugal: Visa exemption for stays of up to 60 days;

Australia, Japan, United States: Visas are required.

Sub-section a) ii):

Multiple-entry visa issuance agreements have been concluded with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Visa validity starts on the date of visa issuance. The period of validity is three months for a single-entry visa and one year for a multiple-entry visa.

Section b):

A Passenger Service Charge of 9,000 won is imposed on every departing traveller.

3. In the event that Korea should wish to abstain from, or make a remark in respect of any Act of the Organisation which by oversight was not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Korea will bring the matter to the Council of the Organisation for decision or other appropriate action within the period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MINISTERIAL DECLARATIONS

4. Korea shares the policy aims expressed by the Member countries in the Ministerial Declarations adop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ECD, and is willing to associate itself with those mentioned in Annex 4.

PARTICIPATION IN CERTAIN ACTIVITIES AND BODIES

5. Korea intend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and bodies of interest to a limited number of Member countries as listed in Annex 5. Korea will consider subsequent participation in other programmes relating to special activity sectors of common interest to a limited number of Member countries.

TERMINATION OF PRIOR AGREEMENTS

6. From the date of it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Korea will regard th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the Organisation concerning Korea's participation in the Council Working Party on Shipbuilding, the Development Centre, the Nuclear Energy Agency, the Steel Committee, the NEA Data Bank, and 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and its subsidiary bodies, formalized by exchanges of letters of 10 October 1990, 12 September 1991, 24 May 1993, 20 September 1993, 1 May 1994 and 12 September 1994, as terminated. From the date of its accession, Korea will continue participating in these bodies as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7. Following Korea's accession to the OECD, Korea will participate in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or grouping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ims and undertakings of the OECD and with its position as a Member of the Organisation.

Annex 1
Reservations to the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as of 1 January 1997

List A, Direct investment:
I/A and B

-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i) the acquisition of shares:

- a) in a Korean enterpri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enterprise;*
- b) in a Korean enterprise owning gross assets of 2 trillion Korean won or more by a non-resident investor who acquires 15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or whom the acquisition would make the single largest shareholder;*

ii) loans of five years or longer, except loans granted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by non-resident parent enterprises or affiliated enterprises if the proceeds are used for the importation of capital goods, within specified limits¹⁾;

iii) investment in real estate as follows:

- a) the development and leasing of land;*
- b) the operation of golf courses, except in the Choongmun area on Cheju Island;*

1) As from 31 December 1999, the reservation will no longer app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loans of which the proceeds are used for other purposes than the importation of capital goods, within specified limits.

- c) the leasing and selling of buildings in lots, except the leasing of non-residential buildings via a legal person controlled by one or more foreign governments²⁾;*
 - d) mineral deposits, except with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 iv) investment in primary sectors, as follows:*
 - a) the growing of cereal grains;*
 - b) the husking of cereal grains, except in the form of a joint venture with a Korean national³⁾;*
 - c) cattle husbandry and the wholesale selling of meat⁴⁾;*
 - d) the manufacturing of sojoo, and ethyl alcohol, except in the form of a joint venture with a Korean national⁵⁾;*
 - e) fishing in inland waters and within 12 nautical miles of the shoreline;*
- v) investment in enterprises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if foreign investor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and in petrol service stations⁶⁾;*
- vi)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firms, as follows:*
 - a) subsidiaries of banks⁷⁾;*
 - b)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ies;*
 - c)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s well as the acquisition of*

2) As from 31 December 1997, the leasing and selling of buildings in lots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3) As from 3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the husking of cereals.

4) As from 31 December 1999, cattle husbandry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as from 31 December 2000, wholesale selling of meat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5) As from 31 December 1997,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the manufacturing of sojoo; as from 31 December 1998, clause iv) d) will cease to apply.

6) As per 31 December 1998, clause v) will cease to apply.

7) As from 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subsidiaries of banks.

- shares thereof, if foreign investor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 d) subsidiaries of securities brokerage and dealing companies⁸⁾ and participation in such companies if foreign investor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⁹⁾;*
 - e) joint ventures of securities brokerage and dealing companies, except in cases where the aggregate share capital is equivalent to 50 billion won or more and foreign investors hold at least 40 per cent an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 f) companies engaged in financial brokerage in the interbank market;*
 - g) short-term investment and finance companies and merchant banks, except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existing companies;*
 - h) subsidiaries of investment companies not mentioned under vi) g), investment trusts and trust companies and acquisition of shares in such companies, except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existing investment trust companies that does not bring foreign ownership at or above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¹⁰⁾;*
 - i) branches of investment trust companies, unless preceded by a representative office by a year or more¹¹⁾;*
 - j) subsidiaries or joint ventures providing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and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such companies bringing foreign ownership at or above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of such a company¹²⁾;*

8) As from 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subsidiaries of securities brokerage and dealing companies.

9) As from 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in existing securities brokerage and dealing companies.

10) As from 1 December 1997,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foreign participation in existing investment trust companies; as from 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subsidiaries and joint ventures of investment trust companies.

11) As from 1 December 1998, clause vi) i) of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12) As from 1 December 1997,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and joint ventures of companies providing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as

- k) commodity exchanges;*
- l) joint ventures with Korean insurance companies;*
- m) insurance brokerage companies and companies engaged in insurance appraisal and activities auxiliary to insurance and pension funds¹³⁾;*
- n) independent agents of life insurance companies¹⁴⁾;*

vii) investment in the transport sector, as follows:

- a) airline companies if foreign investors hold more than 2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¹⁵⁾;*
- b) Korean flag vessels;*
- c) shipping companies engaged in cabotage if foreign investor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 d) shipping companies engaged in international freight transportation, except LNG and LPG transportation, freight transportation among third countries or container transportation by means of car ferries¹⁶⁾;*
- e) shipping companies engaged in tugboat business;*

viii) investment in the communications sector, as follows:

- a) news agencies and enterprises publishing newspapers or periodicals¹⁷⁾;*
- b) enterprises publishing books, if foreign investors hold 50 per*

from 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other foreign participations in such companies.

13) As per 1 April 1998, clause vi) m) of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14) As per 1 April 1997,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independent agent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15) As from 31 December 1999,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investment in an airline company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16) As per 3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international maritime freight transportation.

17) As per 31 December 1997,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investment in enterprises publishing newspapers or periodicals if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25 per cent of the capital; as per 31 December 1999, it will cease to apply to investment in news agencies if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25 per cent of the capital.

-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 c) broadcasting companies, except in an enterprise supplying programmes, or a system operator, for cable television if foreign investors hold 15 per cent or less of its share capital;*
- 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except in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s long as one-third or less of the voting rights are in foreign hands;*

ix) investment in miscellaneous services, as follows:

- a) a branch in the special construction sector;*
- b) the gambling sector¹⁸⁾.*

–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 i) investment by individual entrepreneurs in excess of 30 per cent of their previous accounting year's total sales or more than US\$ 1 million, whichever is greater;*
- ii) the requirement that at least 10 per cent of the envisaged outward direct investment must be financed from the investor's own capital; the ratio rises to 20 per cent for the part of the investment which exceeds US\$ 100 million. This requirement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7.*

List B,
III/A1
and B1

Operations in real estate:

- Building or purchase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 residents.
- Building or purchase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the acquisition of:

18)As from 31 December 1997, clause ix) will read: "investment in the gambling sector".

- i) residences whose prices do not exceed US\$ 0.5 million implying capital transfers from Korea of no more than US\$ 0.3 million, by resident natural persons who have resided or will reside abroad for at least 2 years for business or official purposes;*
- ii) real estate by resident enterprises for business purposes.*

List A, Operations in securities on capital markets:

IV/A1

and C1

- Issue through placing or public sale of domestic securities on a foreign capital market.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the issue of secur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i) the issuer is:*
 - a) a foreign exchange bank.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b) a company having at least a BBB or equivalent rating from an internationally known credit rating agency.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c) a company belonging to a "high technology" industry.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d) a firm which has no negative effect on the international creditworthiness of the country; or*
 - e) a state-owned enterprise.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ii) the proceeds of the issue are used for:*
 - a) the financing of off-shore banking transactions (as far as domestic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are concerned);*
 - b) the purchase of capital goods and new technologies related to the activity of the issuing enterprise;*
 - c) the purchase of parts for capital goods to be exported on a deferred-payment basis of 3 years or more;*

- d) the carrying out of a permitted investment or business (including market development) abroad;*
- e) early redemption of foreign loans;*
- f) as from 31 December 1997, the financing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which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 g) or any other purposes recognis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ii) the total amount of securities issued abroad does not exceed a ceiling. The ceiling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Purchase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purchases of listed shares issued by resident enterprises up to a total of 20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enterprise. The ceiling will be raised to 23 per cent by 31 December 1997, 26 per cent by 31 December 1998, 29 per cent by 31 December 1999 and eliminated by 31 December 2000;*
- ii) the purchase by a single investor of listed shares issued by resident enterprises up to 5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enterprise. The ceiling will be raised to 10 per cent by 31 December 2000;*
- iii) purchases of listed shares issued by designated resident public-sector utilities up to a total of 15 per cent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by the enterprise;*
- iv) purchases of listed non-guaranteed convertible bonds issued by small- and medium-sized resident enterprises, up to a total of 50 per cent of the issued amount, and as from 31 December 1998, of non-guaranteed convertible bonds issued by other enterprises within a ceiling;*

- v) *the purchase by a single investor of listed non-guaranteed convertible bonds issued by small- and medium-sized resident enterprises, up to 10 per cent of the issued amount, and as from 31 December 1998, of non-guaranteed convertible bonds issued by other enterprises within a ceiling;*
- vi) *purchases of non-guaranteed bonds with maturities of 5 years or more issued by small- and medium-sized resident enterprises within specified ceilings, as of 1 December 1997, and by other resident enterprises within specified ceilings, as of 1 December 1999;*
- vii) *purchases of domestic debt securities and listed shares within certain ceilings, and unlisted shares within 25 per cent of the fund's net assets by authorised country funds;*
- viii) *purchases by financial institutions from the portfolio of authorised resident foreign exchange banks.*

List B, Operations on money markets:

V/A1,

C1,3 and 4, – Issue through placing or public sale of domestic securities and other instruments D3 and D3 and 4 on a foreign money market.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the issue of securitie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i) *the issuer is:*
 - a) *a foreign exchange bank.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b) *a company having at least a BBB or equivalent rating from an internationally known credit rating agency.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c) *a company belonging to a "high technology" industry.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d) *a firm which has no negative effect on the international*

creditworthiness of the country; or
e) a state-owned enterprise.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ii) the proceeds of the issue are used for:

- a) the financing of off-shore banking transactions (as far as domestic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are concerned);*
- b) the purchase of capital goods and new technologies related to the activity of the issuing enterprise;*
- c) the purchase of parts for capital goods to be exported on a deferred-payment basis of 3 years or more;*
- d) the carrying out of a permitted investment or business (including market development) abroad;*
- e) early redemption of foreign loans;*
- f) as from 31 December 1997, the financing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which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 g) or any other purposes recognis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iii) the total amount of securities issued abroad does not exceed a ceiling. The ceiling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9.

- Purchase of money market securities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purchases by authorised country funds within specified limits and by financial institutions from the portfolio of authorised resident foreign exchange banks.

- Lending through other money market instruments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operations between non-resident banks and authorised resident foreign exchange banks.

- Borrowing through other money market instruments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operations in foreign currency between non-resident banks and authorised resident foreign exchange banks.

- Lending through other money market instruments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lending in foreign currency by authorised resident foreign exchange banks.

- Borrowing through other money market instruments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operations between non-resident banks and authorised resident foreign exchange banks.

List B, Other operations in negotiable instruments and non-securitised claims:
VI/A1 and 2,
B1 and 2, – Issue through placing or public sale of domestic instruments
C1 and 3, and claims on a foreign financial market.
D1 to 3

- Introduction of domestic instruments and claims on a recognised foreign financial market.
- Issue through placing or public sale of foreign instruments and claims on a domestic financial market.
- Introduction of foreign instruments and claims on a recognised domestic financial market.
- Purchase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the purchase of stock index futures up to 3 per cent per single investment, and 15 per cent for the total of investments, of immediately preceding three months' daily

average open interest.

- Exchange for other assets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 Purchase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foreign exchange banks and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hedging in connection with a permitted underlying transaction.

- Sale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foreign exchange banks and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hedging in connection with a permitted underlying transaction.

- Exchange for other assets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foreign exchange banks and operations for the purpose of hedging in connection with a permitted underlying transaction.

List A, Operations i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VII/A1,

B1 and C1 – Issue through placing or public sale of domestic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 a foreign securities market.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International and Matching Beneficiary Certificates issued by authorised investment trust companies within specified ceilings. This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to equity-base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 31 December 1998.

- Issue through placing or public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on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the issue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by foreign investment trust companies which

invest their funds only in foreign securities.

- Purchase in the country concerned by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purchases up to a ceiling of 20 per cent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newly issued by domestic investment trust companies investing 80 per cent or more of their funds in equities. The ceiling will be eliminated by 31 December 2000.

List A, Credits directly linked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VIII(i)/A or the rendering of international services, in cases where a resident participates in the underlying commercial or service transaction:

- Credits granted by non-residents to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deferred payments for the import of goods which are subject to tariff rates below 10 per cent, for periods ranging from 60 to 180 days for large enterprises and from 90 to 180 day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ermitted period will be set at 180 days for any deferred payments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of 31 December 1997 and by other enterprises as of 31 December 1999;*
- ii) instalment payments, for periods of 180 days to 3 years and for the import of certain specific goods;*
- iii) export advances, except those extended for large enterprises which are allowed up to 15 per cent of the value of their exports over the previous year. This ceiling will be raised to 20 per cent by 31 December 1997 and eliminated by 31 December 1999;*
- iv) export downpayment for ship and plant building and other specific goods, which are allowed for the time necessary to the manufacturing of the goods concerned and up to 80 per cent of*

the export value. This ratio will be raised to 100 per cent on 31 December 1999;

- v) within a ceiling, for amounts of more than US\$ 1 million and maturities of more than 3 years, credits to finance the import of capital goods which are grant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irms engaged in "social overhead projects", foreign-invested firms with high technology, firms with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of 50 per cent or more, and, as from 31 December 1997, large enterprises with high technology. The ceiling will be removed on 31 December 1996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on 31 December 1999 for other enterprises;*
- vi) credits linked with international service transactions, unless they are granted in the form of deferred payments or export advances for periods of more than one year.*

List A, Credits directly linked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VIII(i)/B or the rendering of international services, in cases where a resident participates in the underlying commercial or service transaction:

- Credits granted by residents to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credits in the form of deferred receipts or advanced payments;*
- ii) other credits:*
 - a) in domestic currency granted by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up to 100 million won per borrower;*
 - b) in foreign currency granted by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institutional investors, general trading companies up to US\$ 10 million, and other enterprises up to US\$ 300 000.*

List B, Credits directly linked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VIII(ii)/B or the rendering of international services, in cases where no resident participates in the underlying commercial or service transaction:

- Credits granted by residents to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credit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 ii) credits denominated in domestic currency granted by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and by institutional investors, up to 100 million won per borrower.*

List B, Financial credits and loans:
IX/A

- and B – Credits and loans granted by non-residents to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resident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 ii) within a ceiling, credits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with high technology to repay domestic loans, denominated in domestic currency with a remaining maturity of more than one year;*
- iii) within a ceiling, as from 31 December 1997, the financing of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which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 Credits and loans granted by residents to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credits and loan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 ii) credits and loans denominated in domestic currency granted by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and by institutional investors, up to 100 million won per borrower.*

List A,
X(ii)/A2 Sureties, guarantees and financial back-up facilities in cases not directly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or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operations, or where no resident participates in the underlying international operation concerned:

- Sureties and guarantees given by residents in favour of non-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 i) sureties and guarantees denominated in domestic currency;*
- ii) payment guarantees by a Korean parent company in favour of non-residents lending to its foreign subsidiary to finance an investment, which are subject to the self-financing requirement applicable to outward direct investment for the part of the guarantee in excess of 50 per cent of the investment made by the subsidiary. This condi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7.*

List A,
XI/A1 Operation of deposit accounts:

- By non-residents in domestic currency with resident institution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 i) the conversion into foreign currency and transfer abroad of deposits from accounts other than "free-won" accounts;*
- ii) deposits on "free-won" accounts for purposes other than the settlement of current transactions and reinsurance contracts;*
- iii) the use of funds deposited on "free-won" accounts for purposes other than the settlement of current transactions and reinsurance contract and investment in domestic shares.*

- List B,
XI/B1
and 2
- Operation of deposit accounts:
- By residents of accounts in domestic currency with non-resident institution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deposits with non-resident banks up to the amount of domestic currency which can be carried out of the country by resident travellers.

- By residents of accounts in foreign currency with non-resident institution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the operation of deposit accounts by:

- i) foreign exchange banks;*
- ii) institutional investors;*
- iii) corporate investors, up to US\$ 3 million (per company). No ceiling will apply as from 31 December 1998;*
- iv) individual persons, with branches and subsidiaries abroad of Korean foreign exchange banks, up to US\$ 50 000 (per person and per year). The ceiling and limitations on eligible non-residen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cease to apply as from 31 December 1998;*
- v) residents working abroad.*

- List B,
XII/B1
to 3
- Operations in foreign exchange:
- Purchase of foreign currency with domestic currency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the purchase of foreign currency with domestic currency abroad, in excess of the amount of domestic currency that resident travellers are allowed to take out of

the country.

- Sale of foreign currency for domestic currency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 i) the sale of foreign currency for domestic currency abroad in excess of the amount of domestic currency that resident travellers are allowed to take out of the country;*
- ii) foreign currency acquired abroad which must be repatriated to the country by residents except:*
 - a) enterprises engag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and services business, for amounts up to 30 per cent of the balance of their overseas contracts or US\$ 3 million, whichever is greater;*
 - b) general trading companies and other enterprises whose trade value for the previous year exceeds US\$ 5 million, for amounts up to 50 per cent of this value within US\$ 500 million;*
 - c) for amounts less than US\$ 50 000 per transaction.*

- Exchange of foreign currencies abroad by residents.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 i) resident authorised foreign exchange banks;*
- ii) operations by other residents which are linked with a permitted underlying current or capital transaction;*
- iii) foreign currencies allowed to be held abroad.*

List A, Physical movements of capital assets:

XV/B1

and 2

- Import of means of payment.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the import of domestic means of payment in excess of 8 million won.

- Export of means of payment.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the export of domestic means of payment in excess of 8 million won.

Annex 2

Reservations to the Code of Liberalis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as of 1 January 1997

- A/4. Contract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roads, bridges, ports, etc., carried out by specialised firms, and, generally, at fixed prices after open tender).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a commercial presence in Korea is required prior to the final conclusion of a contract except in the field of site investigation work.

- C/1. Maritime freight (including chartering, harbour expenses, disbursements for fishing vessels, etc.)¹⁾.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the transport of coal, iron ore and liquefied gas, which is reserved to Korean flag vessels or chartered vessels with a hire purchase option by Korean nationals. The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on 31 December 1998.

- D/4. All other insurance.

Annex I to Annex A, Part I, paragraph 5.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insurance contracts entered into in Korea by residents for risks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aviation, long-term accidents, travel and hull.

1) This item does not cover transport between two ports of the same State. Where such transport is open to foreign flags, transfers shall be free.

D/5.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Annex I to Annex A, Part II.

Remark: The reservation does not apply to reinsurance and retrocession in connection with aviation, property, hull, long-term non-life, accidents, workers' compensation, automobile, cargo, and surety and fidelity insurances. This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on 1 April 1997.

E/2. Banking and investment service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underwriting and broker/dealer services provided in Korea by non-residents.

E/4. Asset management.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asset management services provided in Korea by non-residents.

E/5. Advisory and agency service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advisory and agency services provided in Korea by non-residents. This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on 1 December 1998.

E/7.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es, agencies, etc., of non-resident investors in the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sector.

Annex II to Annex A, paragraphs 1, 4 a) and 8 b).

The reservation on paragraph 1 concerns only the following facts:

- Establishment of branches by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ies, short-term investment and finance companies, brokers/dealers, and merchant banks is not permitted.
- Prior to establishment of a branch by an investment trust company, establishment of a representative office for a period of one year is

required. This reservation will cease to apply on 1 December 1998.

The reservation on paragraph 4 a) concerns only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epresentative office by a non-resident bank is subject to prior approval.

The reservation on paragraph 8 b) concerns only the fact that financi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ranch by a non-resident institution must be met in foreign exchange brought from abroad.

- H/1. Exportation, importation, distribution and use of printed films and other recordings — whatever the means of reproduction — for private or cinema exhibition, or for television broadcasts.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 i) screen quotas for foreign printed films and other recordings for cinema exhibition and television broadcasts;*
- ii) the import of foreign printed films and other recordings for cinema exhibition and television broadcasts, which is subject to prior approval or recommendation.*

- L/6.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services of accountants, artists, consultants, doctors, engineers, experts, lawyers, etc.).

Remark: The reservation applies only to the provision in Korea of services by foreign lawyers.

Annex 3

Exceptions to National Treatment as of 1 January 1997

A. Exceptions at national

I. Investment by established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General observ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are applied:*

- *"Enterprise with foreign participation": an enterprise in which 1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s are held by foreign investors, unless otherwise implied.*
- *"Foreign-controlled enterprise": an enterprise established in Korea in which foreign national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or which is de facto under foreign control unless the enterprise has registered for national treatment.*
- *"Foreign investors": foreign national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and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 *"To be engaged in (activity)": to carry out the activity concerned, or to acquire more than 10 per cent of the shares of an enterprise engaged in this activity.*

The authority governing these exceptions is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ion pursuant to the Act Relating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Real estate: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development or leasing of land, or the operation of golf courses.

Real estate: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leasing of buildings, or in the selling of buildings in lots; as from 31 December 1997, these activities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Mining: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can not own mineral deposits without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Authority: Mining Act.

Agriculture: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growing of cereals.

Agriculture: Until 31 December 1998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husking of cereal grains, except in a joint venture with a Korean national.

Agriculture: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cattle husbandry and wholesale selling of meat; however,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will be permitted to be engaged in cattle husbandry as from 31 December 1999 and in the wholesale selling of meat as from 31 December 2000.

Agro-industrial product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of:

- ethyl alcohol, until 31 December 1998;
 - sojoo, until 31 December 1997;
- except in a joint venture with a Korean national.

Fisherie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commercial fishing inshore and within 12 nautical miles of the Korean shoreline.

Petroleum and petroleum derivatives: Until 31 December 1998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Authority: Oil Industry Act.

Petrol service stations: Until 31 December 1998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operation of petrol service stations. Authority: Oil Industry Act.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require authorisation to establish or acquire the shares in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establish or acquire the shares in a mutual savings and finance compan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 investors require authorisation to establish an investment company, such as a short-term investment and finance company or a merchant bank.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establish an investment trust or trust company, or to acquire the shares of such a company, except the shares in an existing investment trust company as long as foreign investor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 capital. As from 1 December 1997, foreign investors will be permitted to hold up to 100 per cent of the shares in existing investment trust companies; establishment of new investment trust companies will be permitted to foreign investors as from 1 December 1998.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 investors require authorisation either to establish an enterprise providing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or to acquire the shares in such an enterprise as long as foreign owners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se shares. As from 1 December 1997,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ies and joint ventures by foreign investors will be permitted; as from 1 December 1998, their participation up to 10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in existing investment advisory companies will be permitted.

Securities brokers/dealers: Foreign investors require authorisation to acquire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s of an existing securities brokerage and/or dealing company; they require authorisation to establish a new securities brokerage and/or dealing company unless its share capital equals at least 50 billion won and aggregate participation by foreign

investors is between 40 and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As from 1 December 1998 they will be permitted to acquire the shares of existing securities brokerage and/or dealing companies.

Financial brokerage: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act as financial brokers in the interbank market.

Commodity exchange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establish or participate in a commodity exchange.

Insurance: Until 1 April 1998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insurance brokerage, in insurance appraisal or other activities auxiliary to insurance or pension fund management, including claims settlement and actuarial business.

Air transport: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more than 2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require authorisation to provide air transport services; as from 31 December 1999, the provision of air transport services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50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Shipping: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own a Korean flag vessel, or to be engaged in the tugboat business, or, until 31 December 1998, in international maritime freight transportation, except LNG or LPG transportation, freight transportation among third countries or container transportation by means of car ferries.

Shipping: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cabotage in Korean waters.

News agencie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news agency services; as from 31 December 1999, this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25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Publishing: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publish newspapers or periodicals; as from 31 December 1999, this will be

permitted to enterprises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less than 25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Publishing: Foreign investors require authorisation to hold 50 per cent or more of the shares in an enterprise publishing books or brochures.

Broadcasting: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broadcasting, with the exception of the supplying of programmes or a system operator for cable television by an enterprise in which foreign investors hold no more than 15 per cent of the share capital.

Telecommunications: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elecommunications, except, if foreign investors hold no more than one-third of the voting rights, in wireless telecommunications.

Gambling: Enterprises with foreign participation require authorisation to be engaged in the provision of gambling services.

II. Official aids and subsidies

Foreign-controlled enterprises are not eligible to receive contributions from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Promotion Fund.

Annex 4

Declarations with which Korea associates itself

Education

Declaration on Future Educational Policies in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text - 20 October 1978.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Declaration on Policies for the Employment of Women - 16 and 17 April 1980.

Declaration on the Social Aspects of Technological Change - 19 November 1986.

Environment

Declaration on Environmental Policy - 14 November 1974.

Declaration on Anticipatory Environmental Policies - 8 May 1979.

Declaration on "Environment: Resource for the Future" - 20 June 1985.

Declaration on Risk Reduction for Lead - 19 and 20 February 1996.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Declaration on Transborder Data Flows - 11 April 1985.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Declaration on Future Polic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 19 and 20 March 1981.

Trade

Declaration on Trade Policy - 4 June 1980.

Annex 5

OECD activities and bodies of interest to a limited number of Member countries in which Korea wishes to participate

Agricultur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 Biological Resource Management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s

Consumer Policy

Working Party on Consumer Safety
Working Party on Consumer Markets

Education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MHE)
Programme for Educational Building (PEB)

Environment

Special Programme on the Control of Chemicals
Steering Group on Existing Chemicals
Panel on Good Laboratory Practice
Hazard Assessment Advisory Body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d Hoc Working Party on Pulp and Paper

Territorial Development

Co-operative Action Programme on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Trade

Group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III. 녹색성장 선언문(영문)

DECLARATION ON GREEN GROWTH

(Adopted at the OECD Ministerial Council meeting on 25 June 2009 in Paris)

WE, THE MINISTERS REPRESENTING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th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

CONSIDERING that:

Economic recovery and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re key challenges that all countries are facing today. A number of well targeted policy instruments can be used to encourage green investment in order to simultaneously contribute to economic recovery in the short-term, and help to build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infrastructure required for a green economy in the long-term, noting that public invest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a long-term framework for generating sustainable growth. Green growth will be relevant going beyond the current crisis, addressing urgent challenges including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enhancement of energy security, and the creation of new engines for economic growth. The crisis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to postpone crucial decisions for the future of our planet.

In order for countries to advance the move towards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crucial in area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clean technologies, for example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of green ICT for raising energy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market for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Co-operation will also be essential among OECD countries as well as with emerging economies and developing countries to reach an ambitious, effective, efficient, comprehensive and fair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 at the 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15) in Copenhagen in December 2009.

The OECD can, through policy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best practices, assist countries in their efforts to respond to the growing policy demands to foster green growth and work with countries to develop further measures to build sustainable economies.

DECLARE that we:

STRENGTHEN our efforts to pursue green growth strategies as part of our response to the current crisis and beyond, acknowledging that "green" and "growth" can go hand-in-hand.

ENCOURAGE green investm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In this respect, we are resolv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use efficient and effective climate policy mixes, including through market-based instruments, regulations and other policies, to change behaviour and foster appropriate private sector responses. We will consider expanding incentives for green investment, in particular in areas where pricing carbon is unlikely to be enough to foster such private sector responses. Such areas may include smart, safe and sustainable low-carbon infrastructure and R&D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building a sustainable low-carbon society. Approaches to recognise the value of biodiversity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appropriate instruments and consistent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bligations. We are resolved to share information on green investment flows and policies, and best practices.

ENCOURAGE domestic policy reform, with the aim of avoiding or removing environmentally harmful policies that might thwart green growth, such as subsidies to fossil fuel consumption or production that in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that promote the unsustainable use of other scarce natural resources or which contribute to negative environmental outcomes. We also work towards

establishing appropriate regulations and policies to ensure clear and long-term price signals encouraging efficient environmental outcomes. We call on other major economies to follow the OECD countries' lead.

ENSURE close co-ordination of green growth measures with labour market and human capital formation policies. We note that these can support the development of green jobs and the skills needed for them, and ask that work on implementing the Reassessed OECD Jobs Strategy pays due attention to this objective.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spect:

- 8.1. We recognise that special efforts need to be mad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co-operation on developing clean technology, including by reinforcing green ICT activities, fostering market mechanisms, and augmenting, streamlining and accelerating financing and other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support in their water management. We also recognise the need to ensure that each country pursues green growth policies, including to tackle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 trade and investment.
- 8.2. We are resolved to make every effort to reach an ambitious, effective, efficient, comprehensive and fair international post-2012 climate agreement at COP15 in Copenhagen in December 2009, by which all countries will take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commitments or actions as well as adaptation actions, reflecting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 8.3. W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liberalisation of trade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in fostering green growth. We are resolved to ensure that measures taken to combat climate change are consistent with our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s.
- 8.4. We underline the special need to co-ordin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in order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promote green growth, recognising the role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in this regard.

INVITE the OECD to:

DEVELOP, as a horizontal project, a Green Growth Strategy in order to achieve economic recovery and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We call upon the OECD and its Committees to prioritise their work within their areas of expertise so as to support green growth policies. The Strategy will analyse green growth measures in OECD as well as in major non-member countries, and will 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OECD Innovation Strategy, the 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the OECD work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results of the Copenhagen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December 2009 and inputs from the IEA. An interim report on the progress should be delivered to the 2010 MCM.

INVITE Non-OECD Members, Private Sector, Civil Society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sations to:

CLOSELY COOPERATE with the OECD in line with the Declaration.

IV. 약 어

APM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BC	Budget Committee 예산위원회
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기업산업자문위원회
CA	Committee for Agriculture 농업위원회
CCNM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Non-Members 비회원국 협력위원회
CCP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CE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회
CERI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Governing Board 교육연구혁신센터
CSTAT	Committee on Statistics 통계위원회
CTP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조세정책센터
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재정위원회
CIBE	Committee on Industry and Business Environment 산업 및 기업환경위원회
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CFM	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위원회
CG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COMP	Competition Committee 경쟁위원회
CSTP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과학기술정책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F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금융기업국
DC	Development Centre 개발센터
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개발협력국

DELSA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고용노동사회국
DSTI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과학기술산업국
EC	Education Committee 교육위원회
ECMT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유럽교통장관회의
ECO	Economics Department 경제국
ECSS	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 특별집행위원회
EDRC	Economic Development Review Committee 경제검토위원회
EDU	Directorate for Education 교육국
ELSAC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ENV	Environment Directorate 환경국
EPC	Economic Policy Committee 경제정책위원회
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환경정책위원회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FI	Fisheries Committee 수산위원회
GOV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공공관리지역개발국
HOD	Heads of Delegation 상주대표
HRM	Human Resources Management Working Party 인적자원관리부
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정보통신위원회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ND	Industry Committee 산업위원회
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국제교통포럼
JRTC	Joint Transport Research Center OECD/ITF 통합 교통연구센터
LEE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지역경제고용협력
MTC	Maritime Transport Committee 해운위원회
NEA	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
PAC	Committee on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홍보위원회

PEB	Programme on Educational Building Governing Board 교육시설프로그램
PGC	Public Governance Committee 공공행정위원회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Governing Board 국제학생 학업성취도평가
PRF	Pension Reserve Fund Committee 연기금위원회
SC	Steel Committee 철강위원회
STD	Statistics Directorate 통계국
TC	Trade Committee 무역위원회
TAD	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 무역농업국
TDPC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지역개발정책위원회
TOU	Tourism Committee 관광위원회
TUAC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노동조합자문위원회
WPIE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정보경제작업반
WPTISP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

OECD >#황

발 행 : 2011년 6월
발행처 : 외교통상부/주OECD 대표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참 여 자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김지준 김선영 류학석 이수철
장성화 부상돈 김유정 최은경

주OECD 대표부

강성주 한판상 홍재문 우병렬 구연희
김기준 김효은 류재명 송홍석 이형중
정진규 한동민 강상욱 이용수 조희송
최재봉 정현정 박정오 박재락 서원석
최정훈 김형규

기획/편집 :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TEL. 02-2100-0808